

발간등록번호

11-1430097-000072-01

ISBN 978-89-6199-970-0 13500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Patent Trial and Appeal)

한국행정학회

2016. 9. 26.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국행정학회

- 연구책임자: 오 재 록
- 공동연구원: 박 치 성
- 공동연구원: 조 문 석
- 공동연구원: 윤 향 미
- 연구보조원: 유 한 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2016년 4월 20일 ~ 2016년 9월 26일 (5개월)	
연구과제명	(한글)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영문)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Patent Trial and Appeal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오재록 (한국행정학회)	참여 연구원수	총 5명	연구 용역비	47,038,570원
요약					
<p>■ 연구의 목표</p> <p>○ 이 연구의 목적은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특허심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문 및 문제제기 사항들에 대하여 근본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p> <p>○ 이 연구의 결과보고서는 특허심판원의 조직·제도 현황 및 정책적 여건 분석, 국내 특별행정기관 사례 분석,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및 제안 순으로 구성함.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다채롭게 살펴본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제도 현황, 대내외 환경 등 정책적 여건, 특허심판원의 존재의의와 그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의의, 조세심판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비교, 그리고 미국, EU, 일본, 중국의 특허심판제도와 특허심판기관 운영 사례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p> <p>■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사례 비교 및 함의</p> <p>○ 국내사례 검토 결과, 특허심판원이 유의 깊게 비교해볼만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이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이었음. 조세심판원은 다부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기관으로 설치된 특수한 사례임을 알 수 있었음. 조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고려할 경우 다양한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임</p> <p>○ 일선 행정기관 산하에 조세심판원을 배치함으로써 부처 간 조정 등 예상 가능한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관할 행정청과 구조적으로 분리했으나, 이러한 조직 및 제도 차원의 노력만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심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국세청 부과처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조세심판관과 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없고, 이렇게 배속된 조세심판관들이 일정 기간 심판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다시 국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현실이 존재함</p> <p>○ 관할 특별행정심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행정청의 전문 인력으로 행정심판 담당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심판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것임. 그러므로 조세심판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처리절차 개선, 심판관 자격기준 강화, 제척 규정 구체화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					

■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및 함의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심판원들을 살펴보았을 때, 심판원이 조직으로서 분리되어 있는(독립적인) 경우는 사실상 없음. 모두 각국의 특허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형태임. 다만, 업무기능으로 보았을 때 IP5 중 유럽연합(EU)만이 특허심판원만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단일국가체제에서는 보기 힘든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는 EU와 달리 단일 국가 체제 하에서 대동소이한 제도적 맥락을 보이고 있음. 공통적인 경향은 특허심판원의 지위를 모두 특허청 내에 두고 있다는 점임. 이는 법원으로부터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당사자들의 전략적 측면으로 인한 소송남발의 방지,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경제비용 축소 노력의 효과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심판관 선출방법은 공통적으로 내·외부 공개채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주로 일본, 한국, 중국, EU), 검찰, 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미국)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특허변호사 등 특허업무 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유럽연합은 기술심판관의 경우 내부, 법률심판관의 경우 회원국의 판사/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높음. 이렇게 내·외부 전문가들이 골고루 임명될 수 있는 미국과 EU에서는 이들 심판관을 통해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 즉, 특허심판기관의 조직 및 제도 차원이 아니라 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강화 방안 검토 및 제안

- 사회 일각에서 이론적·일반적 논의 차원에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수한 특별행정기관을 주무부처(행정청)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분리 독립의 실익이 크지 않고, 국민에게 각 부처에 따라 분리된 심판위원회를 찾아가야 하는 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며, 행정청의 실무행정과 전문지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안목을 갖춘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워진 현실임을 고려할 때, 특허심판원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청(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특허심판 심리대상의 특성을 보다 더 잘 다룰 수 있고 다종다양한 장점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요컨대, 특허심판은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타 특별행정심판에 비해 이해관계에 얽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전문적 판단과 조직·제도상의 외형적 표상에 따른 오해 등으로 인해 사려 깊은 검토가 결여된 채 조세심판원 사례를 떠올려 분리 독립 방안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쉽게 간주할 경우 국민권익의 손상과 함께 세계적인 특허전쟁 상황에서 국익의 심각한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심판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운영의 핵심 주체인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관건이며, 이는 세계 보편적 현상임. 주요국 특허심판원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율성(전문성)과 공정성(독립성)의 동시적 추구에 있음. 심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고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에만 한정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 중심의 독립적 판결로 인해 사실에 근거한 공정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음. 결국 한국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차원의 방안은 기관의 독립성 문제라기보다는,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임

색인어	한글	특허심판,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영어	Patent Trial & Appeal, Fairness, Independency, Professionalism

목 차

제 1 장 개 요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4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6
제 2 장 특허심판원의 조직·제도 현황 및 정책적 여건 분석	7
제 1 절 특허심판원 일반 현황	7
제 2 절 대내외 환경 분석	17
제 3 장 헌법과 법률상의 행정심판으로서의 특허심판	35
제 1 절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심판전치주의	35
제 2 절 특별행정심판제도와 특허심판제도	40
제 3 절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45
제 4 절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특수성	49
제 4 장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사례 분석	51
제 1 절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사례비교의 목적 및 내용	51
제 2 절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제도 분석	53
1. 조세심판원	53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62
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68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1
제 3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78
제 5 장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81
제 1 절 주요국 특허심판기관 사례비교의 목적 및 내용	81
제 2 절 주요국 특허청 조직 및 운영 현황: 특허청—특허심판원 관계	82
1. 미국	82
2. 유럽연합(EU)	89
3. 일본	99
4. 중국	106
제 3 절 주요국 심판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분석	114
제 4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주요국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특징	123

제 6 장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및 제안	129
제 1 절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129
1.	국내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129
2.	해외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134
제 2 절	분리 독립 방안 및 현행 유지 방안 검토	138
1.	분리 독립 방안	138
2.	현행 유지 방안	140
3.	소결	146
제 3 절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의 관계	147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특허심판	147
2.	임의적 심판전치주의의 현실적 한계	151
3.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의 현실적 필요성	153
4.	법원 관련 최근 이슈 검토	155
5.	소결: 장기간의 제도 연구 필요	158
제 4 절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안	159
1.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159
2.	특허심판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162
3.	기타 제도개선방안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70
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71
2.	심판사무취급규정	174
3.	특허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안)	193
4.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	200

표 목 차

[표 2-1]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9
[표 2-2] 심판부별 담당분야	10
[표 2-3] 직급별 정원 현황	11
[표 2-4] 최근 10년간 정원변동 현황	12
[표 2-5]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장·심판관 현원 변동 추이	13
[표 2-6]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8
[표 2-7]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9
[표 2-8]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19
[표 2-9]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25
[표 2-10]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26
[표 2-11] 심판계류기간	26
[표 2-12]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추이	29
[표 2-13] 연도별 등록특허건수 대비 특허무효건수의 비율	30
[표 2-14] 취소판결에 따른 재심결 건 제외 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추이	30
[표 2-15] 심판관 정원 변동 추이	31
[표 2-16] 최근 10년간 심판부 정원 변동 추이	31
[표 2-17]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장·심판관 현원 변동 추이	31
[표 2-18]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32
[표 3-1] 조세심판원 정원 변동 연혁(1975-2015)	57
[표 3-2] 조세심판원 정·현원 변동 현황(2009-2015)	58
[표 3-3] 직위별 조세경력 및 자격보유 현황	59
[표 3-4] 1인당 처리 건수	60
[표 3-5] 조세심판 청구처리 추세	61
[표 3-6]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	61
[표 3-7]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 현황	62
[표 3-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연혁	63
[표 3-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2006-2010)	66
[표 3-10]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직 및 제도	70
[표 3-11]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현황	75
[표 3-12] 해양안전심판 건수	76
[표 4-1] 일본 특허청 심판부 인원	101
[표 4-2] 일본 특허청 심판부의 직위 및 한국 심판원의 대응직위	102
[표 4-3] 전리복심위원회 조직별 인원	107
[표 4-4] 중국의 불복복심 심리기간 추이	110
[표 4-5] 중국의 무효복심 심리기간 추이	111

[표 4-6] 주요국의 특허심판원 위상 및 특징123
[표 4-7] 주요국 특허심판원 심판관 지위 및 특징125
[표 5-1] 주요국의 특허무효제도150
[표 5-2] 미국 무효심판제도의 효과150

그림 목차

[그림 1-1] IP5 국가의 특허출원 건수(2004-2014)	2
[그림 1-2] IP5 국가의 특허등록 건수(2004-2014)	3
[그림 1-3] 주요 연구내용별 세부 연구내용 요약	6
[그림 2-1] 특허청 조직도	8
[그림 2-2] 특허심판원 조직도	9
[그림 2-3] 결정계 및 당사자계 심판 절차	13
[그림 2-4] 특허소송 흐름도	14
[그림 2-5] 신속심판 표준 절차	15
[그림 2-6] 영상구술심리 장면	16
[그림 2-7]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2014) 및 PCT 국제특허출원 현황(2015)	19
[그림 2-8] 심판청구건수 추이	25
[그림 2-9] 심판사건 인용률	27
[그림 2-10] 특허법원 소제기율	28
[그림 2-11]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28
[그림 2-12] 주요국 특허무효심판(소송) 인용률	29
[그림 2-13] 특허취소신청제도 개념도	33
[그림 2-14]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33
[그림 3-1] 조세심판원 조직도	56
[그림 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직도	66
[그림 3-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 절차	69
[그림 3-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절차	72
[그림 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도	73
[그림 4-1]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83
[그림 4-2] PTAB 조직도	84
[그림 4-3] 미국 특허분쟁제도 개요	88
[그림 4-4] 유럽특허청(EPO) 조직도	90
[그림 4-5] 유럽특허의 지역적 범위	96
[그림 4-6] 유럽상표청(EUIPO) 상표심판원 조직도(2016년 기준)	98
[그림 4-7] 일본 특허청 조직도(국문)	100
[그림 4-8] 일본 특허청 조직도(영문)	100
[그림 4-9] 일본 특허청 심판부 조직	101
[그림 4-10]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직급체계 비교	102
[그림 4-11] 일본의 특허관련 소송/항소 절차	103
[그림 4-12] 일본의 청구 및 심리기간	105
[그림 4-13] 일본의 공판심리 결과 추이	105

[그림 4-14] 국가지식산업국의 조직 구성	106
[그림 4-15] 전리복심위원회 조직 구성	107
[그림 4-1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조직내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	108
[그림 4-17] 중국 거절결정 불복복심 절차 흐름도	109
[그림 4-18] 중국의 불복복심 청구/결정 건수(2005~2015)	109
[그림 4-19] 무효복심 청구/결정 건수(2005~2015)	111
[그림 4-20] 중국 특허소송 시스템	112
[그림 4-21] 중국의 특허소송 1심 청구/결정 건수(2007~2015)	112
[그림 4-22] 중국의 특허소송 2심 청구/결정 건수(2007~2015)	113
[그림 4-23] PTAB 고용 절차	117
[그림 5-1] 특허심판원과 법원	147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21세기를 전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경제 부문에서도 점차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특허와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보호함과 동시에 아이디어의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큼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호·활용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식경제 선순환의 핵심 요소임.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 특허출원 → 정확한 심사 → 법적 안정성 높은 강한 특허 → 창업·사업화 촉진 → 시장·일자리 창출 → 창의적 아이디어”의 선순환 구조의 창출이 관건임. 특히 법적 안정성이 낮은 특허는 발명자·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라이센싱을 어렵게 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이에 따라 주요 선진 산업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천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해 왔음.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음(특허청, 2015).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더 높아졌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음(Corrado et al., 2006; 이우성, 2011)
 - 근래 들어 더욱 세계경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중요시하는 지식경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기업 간 글로벌 지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적권으로 축적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경쟁업체와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특허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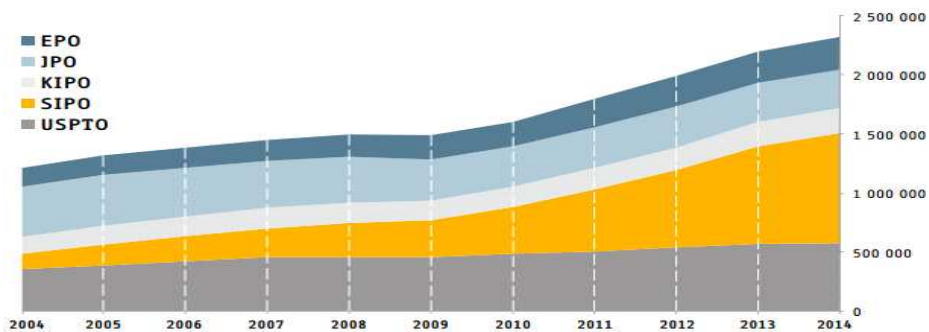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지식재산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원천특허의 부족으로 지적권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특허전쟁의 주요 공격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지적권 분야의 질적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임. R&D 투자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14년 기준으로 52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크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2015년 1위 스위스, 5위 미국, 23위 일본)(특허청, 2015)

- 최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당사자계 심판청구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 전 세계 특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IP5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심판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특허청, 2015)
 -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2011.4), LG-삼성과 오스람 간 LED 조명 특허분쟁(2011.6), 포스코-신일본제철(* 13.4), SK-셀가드 간 2차 전지 특허분쟁(2013.7) 등 국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특허분쟁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한-EU 및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강화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2015.3)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민사법원에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건수 역시 2013년(침해 1심 1,681건, 침해 2심 100건, 대법원 17건) 대비 2014년(침해 1심 966건, 침해 2심 91건, 대법원 17건)에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0년(침해 1심 184건, 침해 2심 54건, 대법원 14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특허청, 2015)
- 한국을 비롯한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는 자국이익 보호 및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세계출원 중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5대 국가(지역)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함. IP5 협력은 심사공조를 통한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개선으로 그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발전에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특허청, 2015)

[그림 1-1] IP5 국가의 특허출원 건수(20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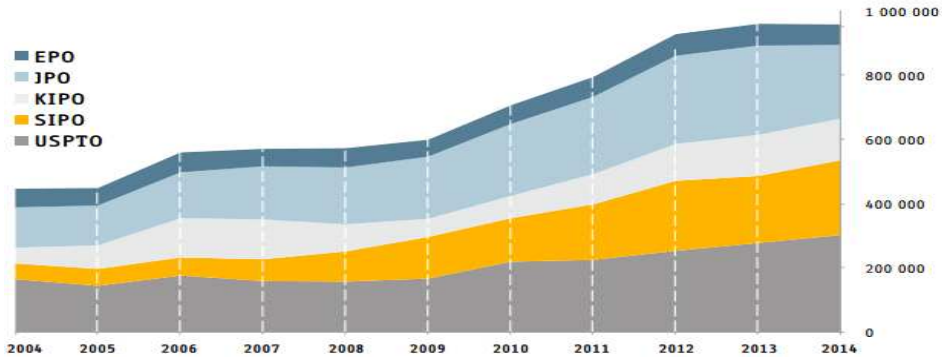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IP5 Offices(2015)

[그림 1-2] IP5 국가의 특허등록 건수(2004-2014)

(단위: 건)



*출처: IP5 Offices(2015)

-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국 특허심판기관은 심판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 일본은 모든 증거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모든 기술적 사항을 일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출범 예정인 유럽 통합특허법원도 모든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판결함으로써 분쟁비용을 낮추고 빠르게 해결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특허청, 2015)
- 한편, 특허심판원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특허심사 품질제고 및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 대책을 요망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임(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분명한 입장 정리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심사품질 개선 및 무효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 2013년, 2014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정수성·우윤근 위원 등 6명이 이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였음. 언론보도 등에서도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다가 오히려 특허가 무효되는 사례가 많으면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매일경제, 2012.12.09.; 문화일보, 2014.07.09.; 중앙일보, 2015.03.12. 등)
- 이와 같은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등록특허 무효율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레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정성 시비로 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무효율만으로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과거 높은 특허 무효율로 인해 특허무효론마저 제기되었던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높은 특허 무효율은 특허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허권을 지닌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지표임

-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등록특허 무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 행정처분을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의 원천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특허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 및 조직적 차원의 검토를 충분히 하고자 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관점을 전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더욱 가열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특허쟁송제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심판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특허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특허 소송 및 특허 심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특허심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문 및 문제제기 사항들에 대하여 근본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적 토대와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① IP5 국가를 비롯한 주요국 특허심판제도 및 특허심판기관에 대한 비교분석, ② 조세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국내 타 특별행정기관의 조직·인력 비교분석, ③ 주요국의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현황 분석, ④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방안 검토 및 제안 등을 세부적 목표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현행 특허심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 취소, 정정, 권리범위 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으로 헌법(107조 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며, 직무상 독립된 3~5인의 특허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 결정, 심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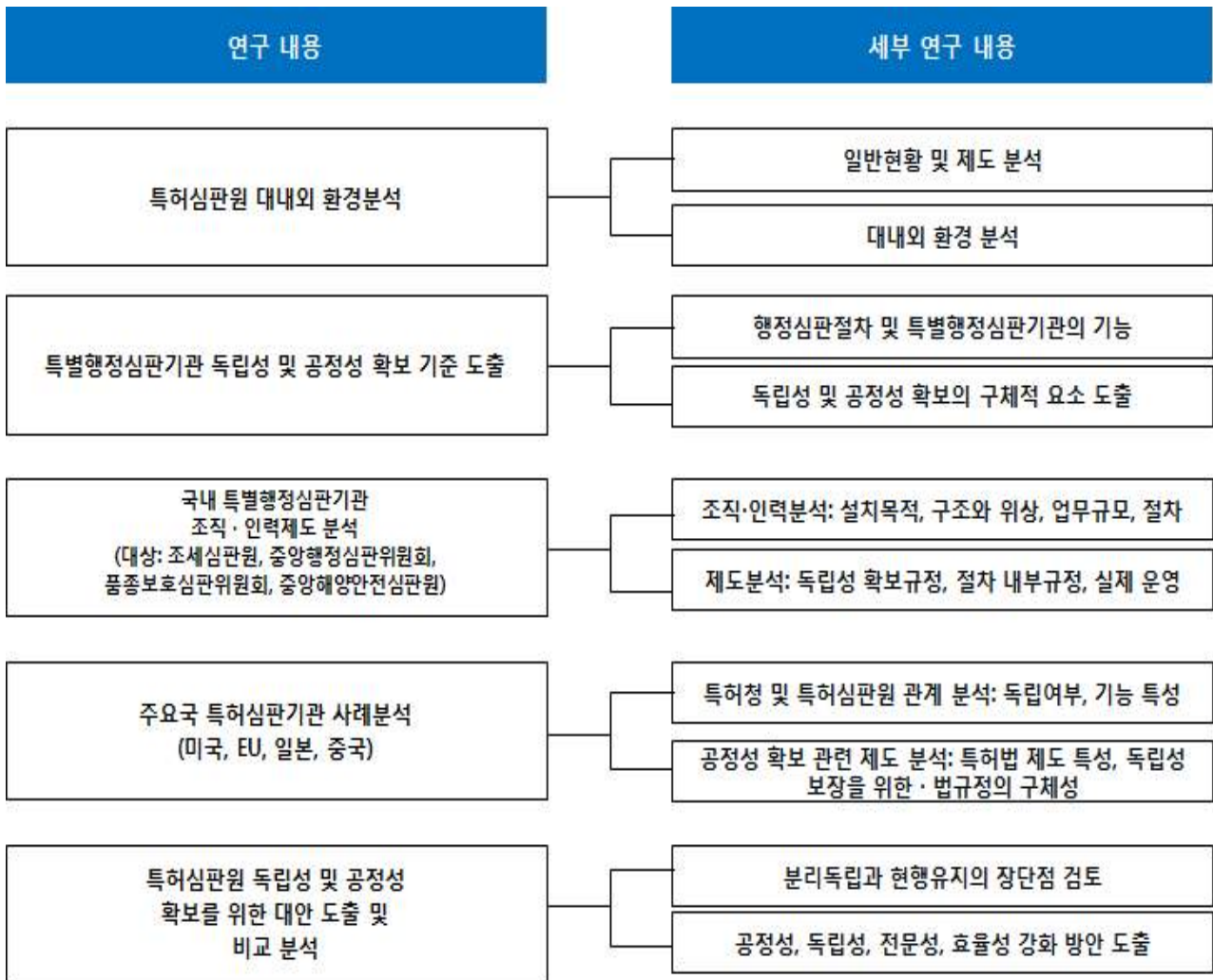
- 2002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제도에서 ‘공정성’, ‘객관성’ 등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가 배제될 경우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7조 3항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심판절차의 보장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음.

- 무엇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심리·심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기관임. 따라서 권리구제, 자율적 행정통제, 법원의 부담경감 등 일반적인 행정심판제도가 지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실질적 재판의 1심으로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고유의 위상과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자리하고 있어야 함
 - 이는 특허심판원이 지닌 권한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임. 특허심판은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심리하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허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편의적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박송규, 1996),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특징을 퇴색하지 않으면서 조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확립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허심판의 경우 여타 특별행정심판과는 달리 양 당사자(권리자 vs 무효심판청구인 등) 간의 분쟁사건이 전체 심판청구의 약 40%를 차지하여 특허청장이 직접적인 심판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며,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 등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
 -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현행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제3자적 기관에 심판을 맡겨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연구하고자 하며, 행정심판기관의 권한행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전문가나 외부 중립적 인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처분기관의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심판관의 임기를 보장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특허심판원의 전문성, 특수성을 담보하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출원인의 권익보호 강화 및 당사자 간 특허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조직 및 제도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이 연구는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여건 분석, 국내 특별행정기관 사례 분석,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특허심판원의 분리 독립 또는 현행 유지 시 장단점 등을 밀도 있게 분석·검토하면서,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림 1-3]은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제 2 장 특허심판원의 조직·제도 현황 및 정책적 여건 분석

제 1 절 특허심판원 일반 현황

1. 주요 연혁

- 특허심판원은 1949년 상공부 외국으로 특허국이 신설되고 심판과에서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사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함
 - 이후 1977년 특허청으로 개칭되고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가 신설되었으며, 1998년 3월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이 설치되어 13개 심판부(국장급), 26명의 심판관(과장급), 심판행정실 및 심판행정실 내 송무반을 운영한 이래 오늘에 이름
 - 다만, 2006년 11개 심판부(국장급)로 축소되었고, 이후 심판관 증원을 통해 2016년 현재 95명의 심판관(과장급, 서기관급)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1977. 03. 12. 특허청 개칭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신설
- 1998. 02. 28.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설치 원장(1급), 13개 심판부(국장급), 심판관 26명(과장급), 심판행정실 심판행정실내 송무반* 운영 * 특허법원 전속 관할로 하는 결정·재판 사건 소송수행. 시행일자: 1998. 03. 01.
※ 1994. 07. 27.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65호) 공포
- 2003. 12. 03. 심판관 2인(4급) 증원
- 2005. 02. 07. 심판관 8인(4급) 증원
- 2005. 11. 22. 과제제를 팀체제로 개편(심판행정팀, 송무팀), 송무팀 정규 직제화
- 2006. 02. 16. 심판관 17인(4급 4, 5급 13) 증원
- 2006. 05. 04. 심판부 구성을 13부에서 11부로 축소, 복합기술분야 심판부(10부)를 상설로 운영
- 2007. 04. 30. 심판관(4.5급) 20인 증원
- 2014. 11. 11. 심판관(4.5급) 2인 증원
- 2015. 12. 21. 심판관(4.5급) 5인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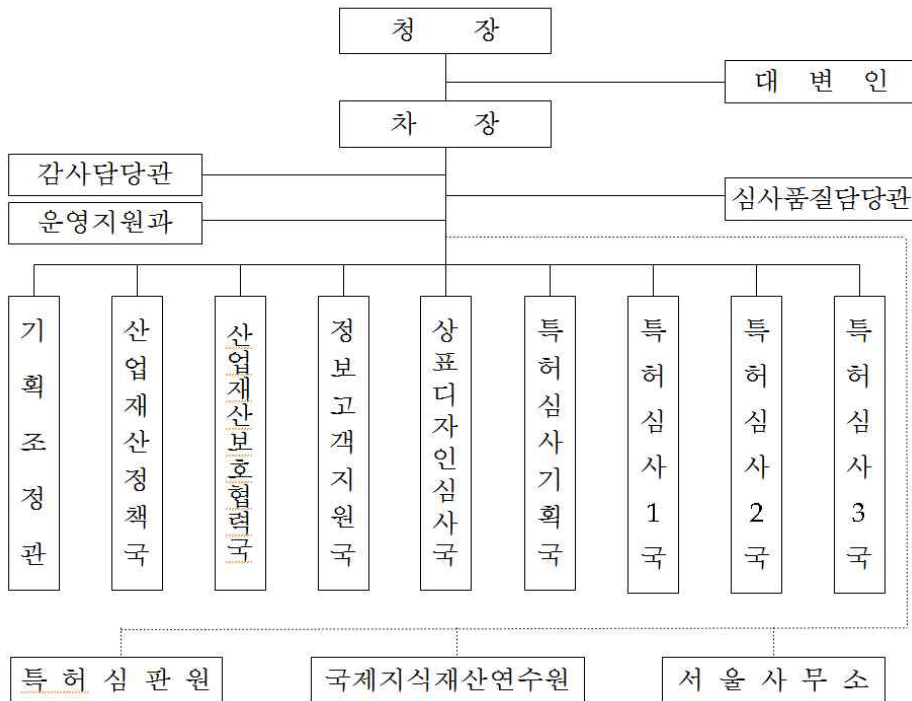
- 역대 특허심판원장은 1998년 제1대부터 2016년 7월 현재 제19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역대 특허심판원장은 국장급 이상, 심판장 등의 주요 경력을 지녔으며, 재임기간은 대부분 1년 또는 2년 이내였음

2. 조직 및 인력 현황

1) 조직

-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의 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 즉, 특허심판원은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1)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참고로 특허청의 조직은 [그림 2-1]과 같이 1관 8국 52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특허청 조직도



*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 특허청 업무현황보고(<http://industry.n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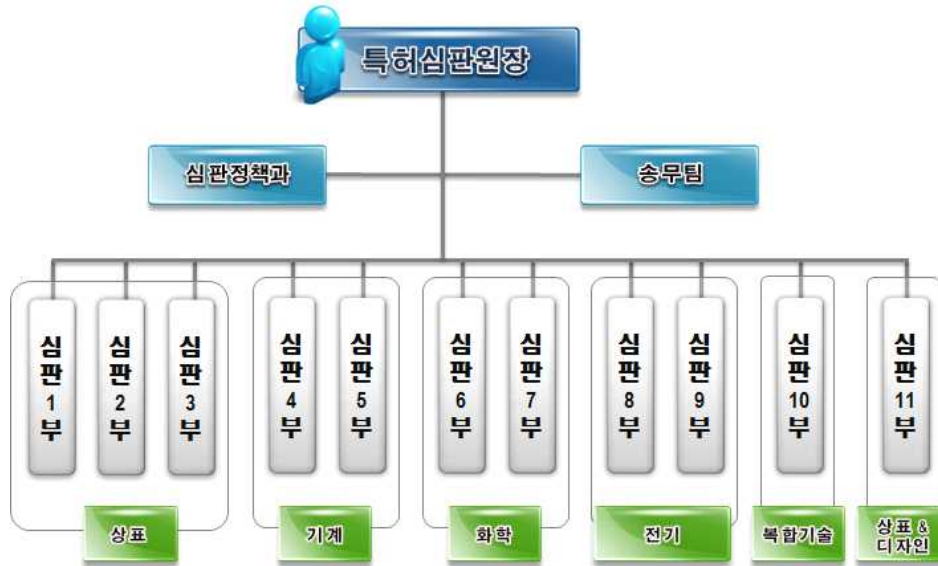
- 특허심판원은 준사법기관이며, 특허심판원장 아래에 11개 심판부, 1과(심판정책과), 1팀(송무팀)을 두고 있음. 직접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상표, 기계, 화학, 전기, 복합기술, 상표·디자인 부문)의 경우 [그림 2-2]와 같이 제1~3부는 상표분야를, 제11부는 상표·디자인분야를, 그리고 제4~10부는 특허·실용신안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11개

1)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심판부 이외의 경우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와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을 두고 있음

[그림 2-2] 특허심판원 조직도



- 특허심판원의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 2-1>과 같음. 심판부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에 관한 실제 심판을 담당하고, 심판정책과는 심판기획, 법·제도 개선 및 운영, 심판품질 평가, 심판 관련 국제협력, 심판관 교육, 법원과의 협력, 심판 방식심사, 구술심리 지원, 심판 관련 민원처리 등 심판행정을 담당하며, 송무팀은 심판부(결정계)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함

<표 2-1>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기능	주요 업무
심판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에 관한 실제 심판
심판정책과	·심판기획, 법·제도 개선 및 운영, 심판품질 평가, 심판 관련 국제협력, 심판관 교육, 법원과의 협력 등 ·심판방식심사, 구술심리 지원, 심판 관련 민원처리 등
송무팀	·심판부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 시 소송수행

*출처: 특허심판원(2016) 내부자료

- 심판부는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업무를 담당하며,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 결정, 답변서·의견서 기간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부가기간 지정승인, 심판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시 그 결정, 심리 또는 심결의 분리, 병합 결정,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등을 담당함

- 특허·실용신안분야 심판부는 기계, 화학, 전기통신 전담 심판부가 각 2개씩 있으며, 제 10부는 복합기술 심판부임
 - * 2006. 5. 복합기술 심판부(10부) 상설 운영
 - * 2013. 9. 복합기술 심판부 체제로 전환(복합기술 심판부 1개 → 4개로 증가)
 - * 2016. 2. 전문기술 심판부 체제로 복귀(복합기술 심판부 4개 → 1개로 감축)
 - 심판정책과는 심판방식심사,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등 일반 행정 업무와 심판관련 통계 작성, 심판전치의회 및 통보,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심리종결 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등의 심판지원 업무를 담당함. 송무팀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 관련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함
 -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사건의 심판장이 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훈령 제83호(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2016.9.1.개정), <부록 1> 참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심판부의 설치(제3조), 심판부의 구성(제4조), 심판부의 기능(제5조), 근무명령 및 근무요건(제6조, 제7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심판부별 담당분야는 [표 2-2]와 같음

[표 2-2] 심판부별 담당분야

구분		담당분야	
상표	제1부	상표	화장품, 세제, 악기, 보험·부동산업, 요식업, 가구류, 담배, 흡연용품 등
	제2부	상표	피혁 및 그 제품, 의류, 신발, 모자, 음료, 차류, 법률서비스업, 통신·방송업, 알콜음료 등
	제3부	상표	귀금속·보석류·시계용구, 육류·어류·가금류, 계란, 우유, 침대커버 등
특허 실용신안	제4부	기계	기계, 건설, 금속 등
	제5부	기계	기계 등
	제6부	화학	농수산식품환경, 화공일반, 화공물질 등
	제7부	화학	바이오, 약품, 섬유, 의료기술, 고분자 등
	제8부	전기	전기전자, 통신네트워크, 컴퓨터시스템,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등
	제9부	전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상거래, 전기전자 등
	제10부	복합기술	공통기술, 복합기술 등
상표 디자인	제11부	상표 디자인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운수·운반기계, 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 의복, 생활용품, 운동경기용품 등

*출처: 특허심판원(www.kipo.go.kr/ipt)

- 각 심판사건 처리 시의 심판 합의부는 일반적으로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총 3명)으로 구성되고, 판례 변경이 쟁점인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장 1명, 심판관

4명(총 5명)으로 구성됨

2) 인력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154호, 2016.5.10. 개정)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원장 1명, 심판장 11명, 심판관 95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를 포함한 특허심판원의 정원은 [표 2-3]과 같이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145명임. 다만, 사무보조원 총 18명은 별도임(속기사 4명 포함)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5명을 둔다. <개정 2014.11.11., 2015.11.26.> ②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관 중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55명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1., 2015.11.26.>	

[표 2-3] 직급별 정원 현황

구 분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합계
계	12	3	38	65	10	15	2	145
심판부	11	3	37	55	0	0	0	106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1	0	1	2	5	14	2	25
송무팀	0	0	0	8	5	1	0	14

*출처: 특허심판원(2016) 내부자료

- 특허심판원의 현원은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특허청 차장급에 해당하는 심판원장 1명, 심판장 11명(특허·실용신안분야 7명, 상표·디자인분야 4명), 심판관 총 93명(특허·실용신안분야 71명, 상표·디자인분야 22명), 심판정책과 31명(방식심사 8명 포함), 송무팀 15명 등 총원 151명임
 - 이 외에도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차원에서 특허법원에 15명(기술심리관), 대법원에 6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명, 대전지방법검찰청에 4명 등 총 27명의 인력(조사관)을 파견하고 있음. 특허법원,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심리/조사 등을 목적으로 총 23명의 인력을 법원에 파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대전지방법검찰청에도 총 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음
 -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심판관 중 40

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55명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 특허청 직급 체계상, 심판장은 특허청 심사국의 국장급인 셈이며, 심판관은 3~4급 과장급 및 무보직 서기관(4.5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임

○ 최근 10년간 정원변동 현황은 [표 2-4]와 같음. 계급별 변동 추이를 보면, 고위공무원 정원은 12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08년부터 3·4급 정원이 1명 줄어든 대신 4급 정원이 1명 늘었음. 또 4·5급 정원은 최근 10년간 15명 늘어난 대신 5급 정원은 30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었음. 아울러 6급 이하 정원도 21명에서 점차 줄어 17명으로 감소하였음

- 심판부의 경우 고위공무원 정원은 최근 10년간 11명으로 변동 없이 고정되어 왔음. 3·4급 정원은 2008년부터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4급 정원이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늘었음. 4·5급 정원은 2013년까지 48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50명으로 증원되었고 2015년부터 55명으로 증원되었음. 5급 정원은 없었고 6급 이하 정원은 2008년까지 2명으로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폐지되었음

[표 2-4] 최근 10년간 정원변동 현황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구분											
계	고위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3·4급	4	4	3	3	3	3	3	3	3	3
	4급	37	37	38	38	38	38	38	38	38	38
	4·5급	50	50	59	59	59	58	58	60	65	65
	5급	30	28	17	17	17	11	11	11	10	10
	6급이하	21	21	18	19	19	19	17	17	17	17
	합계	154	152	147	148	148	141	139	141	145	145
심판 정책과	고위	1	1	1	1	1	1	1	1	1	1
	3·4급										
	4급	1	1	1	1	1	1	1	1	1	1
	4·5급	1	1	2	2	2	2	2	2	2	2
	5급	13	11	8	8	8	5	5	5	5	5
	6급이하	18	18	17	18	18	18	16	16	16	16
	소계	34	32	29	30	30	27	25	25	25	25
송무팀	고위										
	3·4급										
	4급										
	4·5급	1	1	9	9	9	8	8	8	8	8
	5급	17	17	9	9	9	6	6	6	5	5
	6급이하	1	1	1	1	1	1	1	1	1	1
	소계	19	19	19	19	19	15	15	15	14	14
심판부	고위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3·4급	4	4	3	3	3	3	3	3	3	3
	4급	36	36	37	37	37	37	37	37	37	37
	4·5급	48	48	48	48	48	48	48	50	55	55
	5급										
	6급이하	2	2								
	소계	101	101	99	99	99	99	99	101	106	106

- 심판품질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장(3인 합의체의 장) 정원은 1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이며, 심판부의 심판 품질을 담보하는 심판관 정원은 95명(4급 또는 4·5급)임.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판장 7명(고위공무원단 나급), 심판관 71명(4급 또는 4·5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2-5]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비율은 1998년 출범 당시 ‘1:2’ 였다가 2016년 현재 ‘1:10.1’ 로 낮아졌음. 2007년 심판장 정원 증원이 1명 이루어진 이후 2016년까지 증원이 전혀 없었음. 반면 심판관은 출범 당시 12명에서 2016년 현재 71명으로 6배가량 대폭 증원되었음. 심판관 증원에 맞추어 심판장 정원이 연동되지 않았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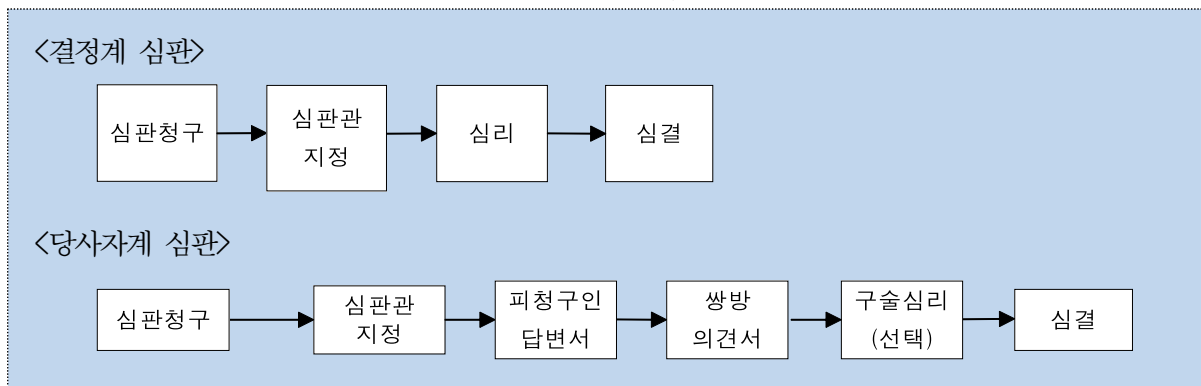
[표 2-5]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장·심판관 현원 변동 추이

구 분	‘98(출범)	‘07~ ‘13	‘14	‘15	‘16
심판장	6	7	7	7	7
심판관	12	65	66	71	71
심판장 : 심판관	1 : 2	1 : 9.3	1 : 9.4	1 : 10.1	

3.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

- 특허심판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이며, [그림 2-3]과 같이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됨.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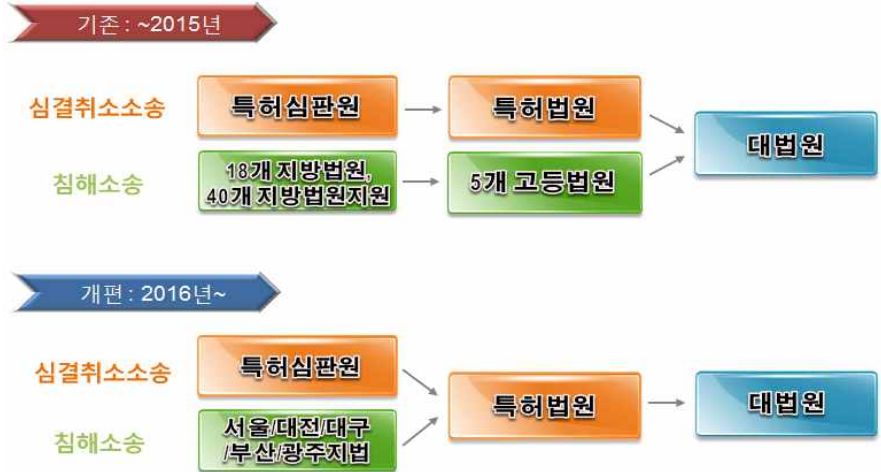
[그림 2-3] 결정계 및 당사자계 심판 절차



-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 등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자기의 특허발명을 정정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을 말함.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상표/디자인) 등으로 구성됨
-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심판을 말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상표등록취소심판, 정정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 등으로 구성됨

○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심결취소소송을 다루는 특허법원과 침해소송을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관할집중을 시행하여, 침해소송도 특허법원에서 판단토록 변경되었음. 개편된 새로운 특허소송은 [그림 2-4]와 같음

[그림 2-4] 특허소송 흐름도



* 참고: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 인정

- 즉, 특허침해소송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1심은 각 고법소재지 5개 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²⁾을 인정하였음(민소법 제24조(지재권 소송 관할) 개정). 아울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속관할 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토록 하였음(민소법 제36조(지재권소송 이송) 개정). 또한, 특허침해소송 등의 항소심(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였음(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개정)
- 이와 같은 특허소송 제도 변경에 따라 가치분항고는 현재처럼 고등법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본안 심리보다 가치분사건 비중이 커지는 경향

2) 선택적 중복관할 : 적용대상 사건에 대해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함

이 있어, 관할집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특허침해 시, 본안 소송 없이 가처분사건만 진행하면 현재처럼 지법과 고법에서 특허침해를 다룰 수 있음) 등 종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롭게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일반심판 이외에도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을 두어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심판이 평균 9개월 소요되는 데 비해, 우선심판은 평균 6개월, 신속심판은 평균 3개월로 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하고 있음

- 우선심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 활용을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심판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2015년의 경우, 전체 심결건수(9,544건) 중 15%인 1,409건이 우선심판을 통해 처리되었음

- 신속심판은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사건,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양 당사자 모두 빠른 처리에 동의한 사건, △요건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사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신속심판의 절차는 표준적으로 [그림 2-5]와 같이 진행되며, 2015년의 경우 전체 심결건수(9,544건) 중 1.7% 수준인 164건이 신속심판을 통해 처리되었음

[그림 2-5] 신속심판 표준 절차



○ 특허심판원은 2006년 특허심판절차에 구술심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당사자가 구술심리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과 심판관 등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에 따라, 고객의 신뢰 제고 및 특허심판의 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 2006년 이전에는 서면으로만 심판하고 심판정을 개설하지 않았으나, 2006년 구술심리가 도입되면서 대전에 1개의 심판정이 개설되어 구술심리를 개시하게 되자 사건의 이해도가 증가하고 심판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창출되었음. 2010년에는 대전 3개, 서울 1개의 심판정이 추가 개설되어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구술심리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음. 2016년 말에는 다용도 대심판정이 개설되어 중요사건에 대한

5인 합의체 심리, 당사자가 많은 대형사건 심리까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진전되었음

- 구술심리의 확대로 심판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음. 이로 인해 특허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2008년 65.5%에서 2015년 78.2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판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또한 2008년 71.79%에서 2015년 77.58%로 증가하는 등 구술심리가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심판서비스 향상에 상당히 기여함
 -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실시되는 구술심리가 기술쟁점에 대해 논의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심판당사자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물제품 및 동영상을 이용한 기술내용 파악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음(특허청, 2015)
- 특히 2014년 4월 24일부터는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영상구술심리제도가 도입되어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음. 2015년의 경우 646건의 구술심리 중 189건이 영상구술심리로 개최되었음. 전체 개최사건의 29.3%에 달하며, 특허/실용신안 26건, 상표/디자인 163건이었음

[그림 2-6] 영상구술심리 장면



제 2 절 대내외 환경 분석

1. 외부 환경 분석

- 한국 경제는 2015년 3/4분기까지 2.5%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근래 들어 지속적인 저성장시대가 이어져오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5). 2016년에도 브렉시트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저물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6). 저성과와 교역둔화가 세계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로 굳어가는 ‘뉴노멀시대’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추격과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특허청, 2015)
 -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대 수출시장(2014년 수출비중 25.4%)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도 미흡함. 향후 G2리스크 전개 방향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한계가구기업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5)
- 당면한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 등 지식재산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국가 부가가치 창출·재생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지식재산은 국가경제 성공의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업에게는 창이자 방패임(특허청, 2015)
 - 국제적으로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과 함께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일원이 되어 국가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미 공동심사프로그램 실시 등 주요국과의 심사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특허청, 2015)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보면, 2015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475,802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성장잠재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 국내 특허 및 상표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특허청, 2015)

[표 2-6]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합계	
2009	163,523	(△4.2)	17,144	(△4.2)	103,433	(3.4)	57,903	(2.0)	342,003	(△0.8)
2010	170,101	(4.0)	13,661	(△20.3)	108,324	(4.7)	57,187	(△1.2)	349,273	(2.1)
2011	178,924	(5.2)	11,854	(△13.2)	134,234	(3.9)	56,524	(△1.2)	381,536	(3.1)
2012	188,915	(5.6)	12,424	(4.8)	142,176	(5.9)	63,135	(11.7)	406,650	(6.6)
2013	204,589	(8.3)	10,968	(△11.7)	159,217	(12.0)	66,940	(6.0)	441,714	(8.6)
2014	210,292	(2.8)	9,184	(△16.3)	160,663	(0.9)	64,413	(△3.8)	444,552	(0.6)
2015	213,694	(1.6)	8,711	(△5.2)	185,443	(15.4)	67,954	(5.5)	475,802	(7.0)

*2012년까지는 수리기준, 2013년부터 접수 기준임

**PCT, 마드리드, 헤이그 등 국제출원(지정관청·지정국 기준)을 포함

***출처: 특허청(2015)

- [표 2-6]에 따르면, 특허는 2013년 204,589건, 2014년 210,292건, 2015년 213,6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상표는 2013년 159,217건, 2014년 160,663건, 2015년 185,4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디자인은 2013년 66,940건에서 2014년 64,413건을 감소했다가 2015년 67,954건으로 다시 증가했음. 다만, 실용신안은 2013년 10,968건, 2014년 9,184건, 2015년 8,71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어두운 경제전망에도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해 신기술과 브랜드를 앞서 선점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풀이됨(특허청, 2015)³⁾

○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2014) 동향을 보면([표 2-7] 참조), 한국의 경우 2012년 397천 건, 2013년 430천 건, 2014년 445천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수준에 육박하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음(특허청, 2015)

- 2014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를 보면, [표 2-7] 및 [그림 2-7](왼쪽)과 같이 중국이 4,438천 건으로 1위, 미국이 951천 건으로 2위, 일본이 487천 건으로 3위, 한국이 445천 건으로 4위, 독일이 159천 건으로 5위를 기록했음.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독일이 6.0%로 1위, 중국이 5.2%로 2위, 한국이 3.5%로 3위, 일본이 0.6%로 4위, 미국이 0.1%로 5위를 기록했음

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으로 인해 특허출원 건수 증가 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특허의 경우 2014년 기준 약 268만 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2012년 9.2%, 2013년 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른 여파로 인한 R&D 투자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풀이됨(특허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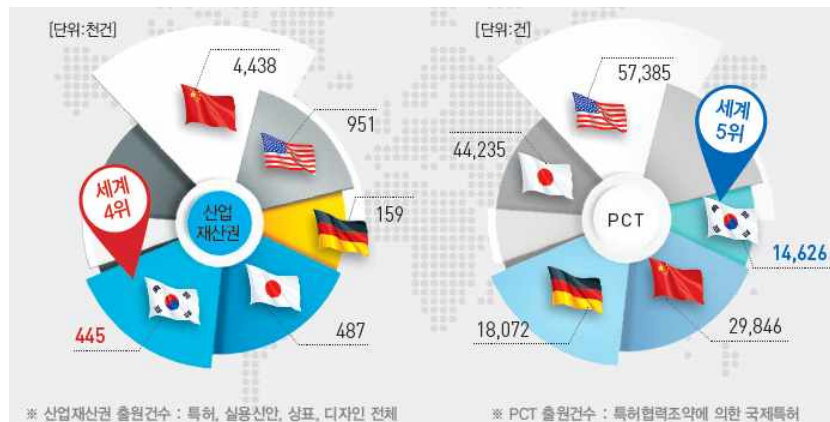
[표 2-7]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천건, 전년대비 증가율%)

순위	구 분	연도별 출원추이			
		2012	2013	2014	증가율
1	중국	3,671	4,226	4,438	5.21%
2	미국	889	950	951	0.1%
3	일본	507	484	487	0.6%
4	한국	397	430	445	3.5%
5	독일	148	150	159	6.0%

*출처: WIPO World IP Indicators, '15.12

[그림 2-7]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2014) 및 PCT 국제특허출원 현황(2015)



*출처: 특허청(2015)

-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PCT⁴⁾ 국제출원도 [표 2-8] 및 [그림 2-7](오른쪽)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626건으로 2014년 13,117건에 비해 11.5% 증가하여,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은 출원을 접수하였음(특허청, 2015)

[표 2-8]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전년대비 증가율%)

순위	구 분	연도별 출원추이			
		2013	2014	2015	증가율
1	미국	57,457	61,479	57,385	△6.7%
2	일본	43,771	42,381	44,235	4.4%
3	중국	21,515	25,548	29,846	16.8%
4	독일	17,920	17,983	18,072	0.5%
5	한국	12,381	13,117	14,626	11.5%

*출처: WIPO PCT Yearly Review, 2016.3

4)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

- 2015년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규모를 보면([표 2-8] 참조), 미국이 57,385건으로 1위, 일본이 44,235건으로 2위, 중국이 29,846건으로 3위, 독일이 18,072건으로 4위, 한국이 14,626건으로 5위를 기록했음.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16.8%로 1위, 한국이 11.5%로 2위, 일본이 4.4%로 3위, 독일이 0.5%로 4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6.7% 감소세를 보였음
- 이처럼 한국의 지식재산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한국의 산업재산권 경쟁력(2014) 동향을 보면,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출원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이지만, PCT 국제조사 점유율 및 특허심사처리기간 측면에서는 세계 3위 수준에 그치고 있음(특허청, 2015)
- GDP 1천억불 당 출원건수(2014년 기준)는 한국이 9,676건으로 1위, 일본이 5,871건으로 2위, 중국이 4,657건으로 3위, 독일이 2,101건으로 4위, 스위스가 1,825건으로 5위를 기록했음. 인구 100만명 당 출원건수(2014년 기준)는 한국이 3,254건으로 1위, 일본이 2,092건으로 2위, 스위스가 1,018건으로 3위, 독일이 913건으로 4위, 미국이 894건으로 5위를 기록했음
 - PCT 국제조사 점유율(2014년 기준)은 EPO(유럽 통합)가 79,716건으로 1위, 일본이 41,033건으로 2위, 한국이 30,622건으로 3위, 중국이 27,711건으로 4위, 미국이 21,812건으로 5위를 기록했음. 특허심사처리기간(2014년 기준)은 EPO(유럽 통합)가 9.1개월로 1위, 일본이 9.6개월로 2위, 한국이 11.0개월로 3위, 미국이 18.4개월로 4위를 기록했음
- 한국의 경우 R&D 투자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14년 기준으로 52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특허청, 2015)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2014년 기준) 동향을 보면, 미국이 907억불 흑자, 일본이 159억불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52억불 적자를 기록했음.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비율은 19.8%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6.9%로 나타난 조사결과(특허청·무역위원회, 2015)에도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대학·공공연 역시 논문 중심의 연구 관행과 기술이전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저조한 실정임.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대학·공공연 활용 연구생산성(기술료/연구비)이 4.31인데 비해 한국은 1.36에 그치고 있고,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미국이 평균 12.1명인데 비해 한국은 7.0명에 그치고 있음

- 한편, 해외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 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크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2015년 1위 스위스, 5위 미국, 23위 일본)(특허청, 2015)
 - 국내 위조 상품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위조 상품의 시장 규모는 2014년 5.0조원(국내생산 2.8조원, 해외유입 2.2조원)에서 2015년 5.3조원(국내생산 3.0조원, 해외유입 2.3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현대경제연구원, 2014)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2010-2015 지식재산 전략계획>에 이어 <2014-2016 지식재산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음(특허청, 2015)
 - 미국의 <2014-2016 지식재산 전략계획>은 기존 <2010-2015 지식재산 전략계획>이 만료되기 전에 수립된 것으로, 2011년에 개정된 미국 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S) 제정 이후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 그간 한결같이 추진해온 미국의 특허개혁 노력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음(특허청, 2015)
 - 2015년 2월에는 미국 특허청이 특허품질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심사관 및 대중 교육, 조직 간 소통, 지역사무소의 운영시간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음
- 일본은 <2013 지적재산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일본 기업이 신흥 시장과 신흥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강화 지원,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강화 등 4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음(특허청, 2015)
 - 또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5>를 발표하여 <2013 지적재산 정책 비전>에 대응하는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특히 2015년은 비전 시행의 3년차를 맞이하여 추진이 어려운 3대 중점 과제(지방의 지식재산 활용 추진, 지식재산분쟁처리 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 및 주변 사업의 종합적인 해외 진출 추진)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 검증·평가·기획위원회 등에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까지 지식재산권의 수(數)의 증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였음. 더불어 중국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특허청, 2015)
 - 출원 건수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과 2015년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로 평가될 수 있음. 2014년 연말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SIPO)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법치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를 꾀하였음. 또한 오랜 기간 추진해온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12월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전문적이며 일괄적인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실을 맺고 있음. 이밖에도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슈가 되었음
- 2015년 유럽 지식재산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임.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정보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시장의 확대는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유럽연합(EU)은 지식재산권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만, 디지털 시장 확대의 이명으로 디지털화의 문제점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특허청, 2015)
 - 2014년도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 즉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이들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세부적인 절차가 수립되는 등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통상환경은 과거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WTO 및 TRIPS 체제 출범 직후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TRIPS 협정의 온전한 이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해 왔음. 즉,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통상압력의 초점은 개도국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었던 것임. 그러나 신흥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던 핵심 시장에 새로운 경쟁의 기운이 조성되었음. 과거 단순 모방자 또는 추격자에 머물렀던 신흥국들이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것임(특허청, 2015)
 -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봉쇄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 국제적인 특허분쟁,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국경조치 등이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임. 또한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라이선싱과 소송을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한 비실시특허기업(또는

특허괴물)의 출현은 이러한 국제적인 특허분쟁의 양산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음. 아울러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기존의 TRIPS 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넘는 새로운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TRIPS 플러스 어프로치’ 라고 부름

-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자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국가 간의 경쟁과 노력은 WIPO와 WTO 등 다자무대에서도 전개되고 있음. 자국의 이익이 투영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각 지역 그룹별 이해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는 것임(특허청, 2015)
 -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재산권의 지평을 넓히면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개발 어젠다를 통해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개도국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 세계 전체 출원 중 약 40%가 복수의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중복출원인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주요국은 심사적체 문제를 국가 간 협력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음. 이러한 국가 간 심사협력의 필요성은 IP5라는 지식재산 G5 체제의 출범도 불러왔음. 세계출원 중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5대 국가(지역)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함. 즉, 5개국 지식재산권 협력 성과는 실질적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규범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임. 2007년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의 특허청장이 사상 최초로 회합을 가진 이후 2015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제8차 IP5 특허청장회의에 이르기까지 5개국은 합의된 기반과제를 중심으로 심사공조와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주요 성과로는 IP5 심사관 사이에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심사이력정보 확인 시스템을 2013년에 개통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를 대민에 공개하였음(특허청, 2015)
 - IP5 국가 간 심사협력(WORK-SHARING)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IP5-PPH를 시행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IP5 협력은 심사공조를 통한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개선으로 그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발전에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 세계 주요국가가 심판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된 특허심판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한편, 특허법원은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법원 소속으로 『IP Hub Court 추진위원회』(2015.06)를 발족해 전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설립, 국제적 교류 강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IP소송절차 구현, 법관의 전문성 강화, ADR 활성화 등을 논의함. 특히, 특허법원은 전문가 증인, 기술자문제도 등을 통해 사실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법원은 특허침해 민·형사 사건에서 특허 전문성 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각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시키고, 항소심(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관할집중제도를 시행하였음(2016.01). 이에 따라 법원은 2015년 특허조사관 4명(특허법원 2명, 서울중앙지법 2명)을 자체 충원하였고, 2016년에도 조사관 16명(특허법원 8명, 기타지법 8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음
- 검찰청에서도 특허침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임. 대전지방검찰청을 중점 지방검찰청으로 지정(2015.11)하고 특허청 과장 4명을 파견 받았음(2015.12)
- 법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특허심판원의 특허유효 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건 중 특허 무효 취지로 심결취소된 건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급 간 심리범위 및 판단기준 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정부는 심·판결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심급 간 판단기준 조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음. 특허권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심판관·판사 간 진보성 판단기준 조화 도모를 위해 공동 연구 및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허심판원-법원 공동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바람직한 판단기준을 연구한다는 계획임. 심급제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판단기준은 상급심(특허법원·대법원)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허법원(지재고재)이 진보성 기준을 낮춰 무효율이 대폭 감소한 선례가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동일 특허권이지만 한국의 심·판결 결과와 주요국의 심·판결 결과가 다른 사례도 있어 공동연구를 통한 판단기준 조화 추진도 계획되어 있음.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유효라는 심판·소송결과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임. 또한 특허심판원-법원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합리적인 심리범위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 특허법원(지재고재)은 한국과 특허심판제도가 유사하지만 한국특허법원의 무제한설과 달리 제한설 입장을 취하고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2. 내부 환경 분석

- 2016년 현재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 서비스 구현’ 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을 적시에 정확히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심판 서비스제도 운영을 목표로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 고객 지향적 심판제도 구축, 심판 분야 대외협력 강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는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심판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도 2015년 심판처리기간을 7개월로 단축하였으나, 여건 상(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심판품질 향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져 심판환경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 심판청구건수는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3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경우 20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표 2-9], [그림 2-8] 참조)(특허청, 2015). 특허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임(특허청, 2015)

[표 2-9]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단위: 건수)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심판청구건수	특허·실용	10,137	10,441	8,447	7,586	9,364
	상표·디자인	4,293	4,306	4,567	4,395	4,622
	합계	14,430	14,747	13,014	11,981	13,986

[그림 2-8] 심판청구건수 추이



- 국내 민사법원에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건수는 2013년(침해 1심 1,681건, 침해 2심 100건, 대법원 17건) 대비 2014년(침해 1심 966건, 침해 2심 91건, 대법원 17건)에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0년(침해 1심 184건, 침해 2심 54건, 대법원 14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특허청, 2015)
-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심판처리 지연은 특허권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사업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의욕도 저하시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심판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결과를 분쟁 수요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것은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특허청, 2015)

○ 특허심판원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 심판, 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처리기간을 2015년말 6개월 이내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음. 특히 2015년도에는 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처리기간을 7.0개월로 설정하고 심판처리실적 초과 달성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심판처리기간 목표를 달성하였음([표 2-10], [표2-11] 참조)

[표 2-10]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심판관 (명)	특허·실용	65	65	65	66	71
	상표·디자인	23	23	23	24	24
	합계	88	88	88	90	95
심판처리기간(개월)		9.5	9.0	8.5	7.9	6.9

*주: 2015년: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관 5명 증원

[표 2-11] 심판계류기간

구 분	한 국							일 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
특허/실용신안 (결정계당사자계)	8.0	10.6	10.2	10.2	9.7	9.4	7.2	12.4/5.3
	8.2/7.6	11.0/9.0	10.8/8.4	11.0/7.3	10.7/6.1	10.2/6.4	7.6/6.0	
상표/디자인 (결정계당사자계)	8.0	9.1	8.2	7.4	6.8	7.3	6.4	상표(7.9/5.8) 디자인(8.5/14.2)
	9.1/6.9	10.5/7.8	9.2/7.2	8.4/6.5	7.6/6.2	7.8/6.8	8.0/5.9	
합계 (결정계당사자계)	8.0	9.9	9.5	9.0	8.5	7.9	6.9	-
	8.5/7.2	10.9/8.3	10.3/7.7	10.2/6.8	9.8/6.2	9.5/6.5	7.7/5.9	

*주: 일본의 경우 당사자계에 정정심판 포함

○ 특허심판원은 고객에게 조속한 심판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신속심판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일반 민사법원의 가처분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3~5개월 이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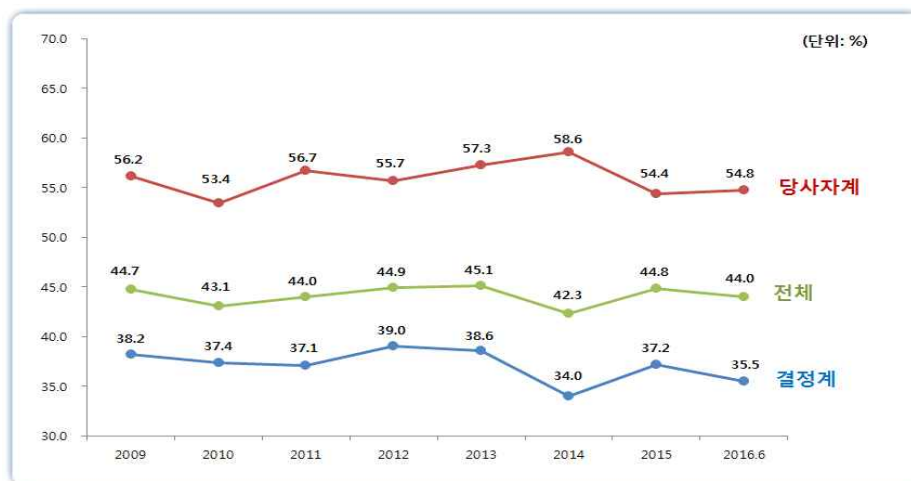
점을 감안하여 민사법원의 가처분 사건 또는 본안 사건 등에 관계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심판결과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심판을 종결하는 신속 심판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여 시행하였음

- 신속심판은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사건,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양 당사자 모두 빠른 처리에 동의한 사건, △요건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사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2015년의 경우 전체 심결건수(10,672건) 중 1.6% 수준인 169건이 신속심판을 통해 처리되었음. 이와 함께 우선심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 활용을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심판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2015년의 경우 전체 심결건수(10,672건) 중 13.6%인 1,455건이 우선심판을 통해 처리되었음

○ 심판사건 인용률은 [그림 2-9]와 같이 2016년 상반기 현재 44.0%로 나타남. 2009년 44.7%에서 2010년 43.1%로 약간 떨어졌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름세를 유지했음. 2014년 42.3%로 비교적 낙폭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2015년 44.8%로 반등하였음.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이래로 4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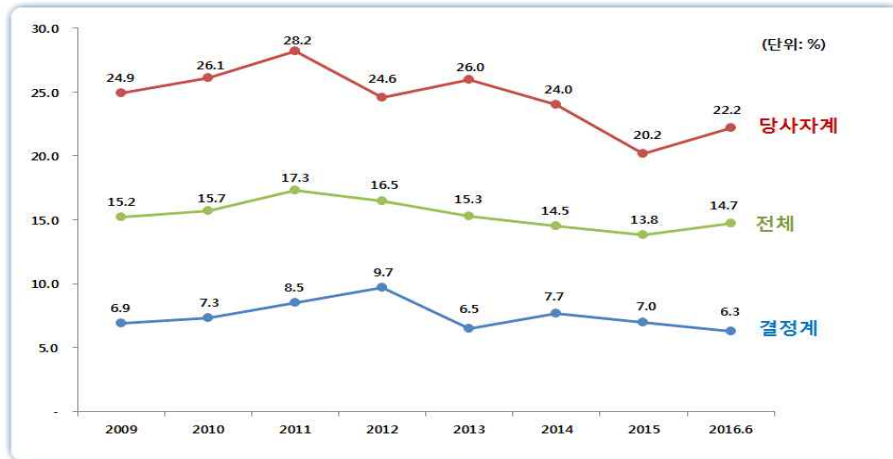
- 당사자계의 인용률은 전반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반면, 결정계의 인용률은 40%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당사자계의 경우 2014년 58.6%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54.4%, 2016년 54.8% 수준으로 내려간 채 유지되고 있음. 결정계의 경우 2012년 39.0%로 정점을 찍었고, 2014년 34.0%로 급락하였음. 2014년의 경우 전체 심판사건 인용률의 낙폭을 키운 것은 결정계의 급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당시 당사자계는 오히려 인용률이 정점을 찍었음

[그림 2-9] 심판사건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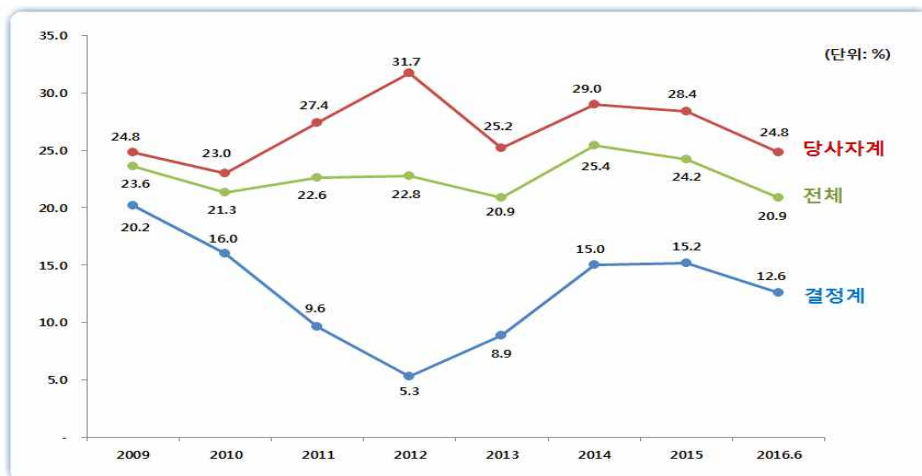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비율은 [그림 2-10]과 같이 2014년 14.5%에서 2015년 13.8%로 0.7%p 감소하였고 2016년 상반기 현재 14.7%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10] 특허법원 소제기율



-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그림 2-11]과 같이 2014년 25.4%에서 2015년 24.2%로 1.2%p 감소하였음. 2016년 상반기 현재는 20.9%로 더욱 떨어져 2013년과 같은 최저선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 이는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형별, 쟁점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심판 시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심리에 활용하는 등 특허심판원이 심판품질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15년 37.2%로 2014년 대비 1.4%p 감소하였음.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15년 6.6%로, 이는 최근 5년 파기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임(특허청, 2015)

[그림 2-11]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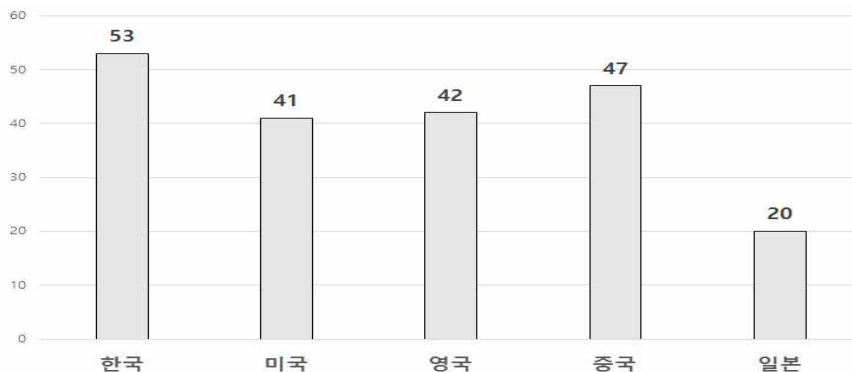
- 한국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표 2-12]과 같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림 2-12]과 같이 IP5 국가 중에서는 다소 높은 것이 현실임. 무효심판(소송) 제도 및 통계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비교적 높은 수준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표 2-12]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용률	60.1%	53.1%	53.4%	52.1%	49.2%	53.2%
	318/529	336/633	374/700	405/777	317/644	314/590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그림 2-12] 주요국 특허무효심판(소송) 인용률 (단위: %)



*주: 한국(2014), 미국(2012~2015.1), 영국(2000~2008), 중국(2011), 일본(2013)⁵⁾

*출처: 특허청(2015)

- 물론 특허권의 품질 평가지표로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무효심판은 침해소송 등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특허권 중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주로 청구하므로 무효율의 높고 낮음을 단순히 특허 심사·심판의 문제로 논하기는 곤란함. 심사 시 모든 나라의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당사자간·심급간 진보성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기인하여 등록 특허의 무효 주장 가능성이 상존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은 일부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만을 특허 품질의 객관적 지표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2-13]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특허건수 대비 무효특허건수의 비율은 연평균 0.36%에 불과함([표 2-13]에서 무효특허건수는 2005-2014년 간 특허무효 심판된 6,313건을 등록연도 기준으로 무효건수를 분석한 것임)

5) 한·미·일 3국은 특허청 공식통계로 볼 수 있으나, 영국·중국은 연구논문에 실린 조사결과를 인용

[표 2-13] 연도별 등록특허건수 대비 특허무효건수의 비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등록 특허건수	60.1%	53.1%	53.4%	52.1%	49.2%	53.2%	527,105
무효 특허건수	314	442	434	334	188	216	1,928
비율(%) (무효건/등록건)	0.43	0.37	0.35	0.40	0.33	0.31	0.36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 그러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의 ‘지표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높고, 일반인들은 무효율을 특허품질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수준보다 낮출 필요성이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그런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심판원 내부 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허 출원량 대비 심사인력 부족 등 열악한 심사환경과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의 무효 판단기준의 견해 차이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⁶⁾ 제도적으로 특허권자의 보호 제도가 미흡한 측면도 있음. 특허권자의 무효 방어기회(정정청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효심판 결과에 대응한 무효사유 해소(정정)가 곤란한 측면도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환송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재심결 건을 제외할 경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표 2-14]와 같이 매년 2~5%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4] 취소판결에 따른 재심결 건 제외 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용률	55.8%	51.5%	51.8%	48.9%	46.3%	47.8%
	249/446	296/575	334/645	334/703	269/581	244/510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 특허심판원의 최근 10년간 정원변동 현황도 특허품질 관리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 심판품질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장(3인 합의체의 장) 정원은 1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이며, 심판부의 심결 품질을 담보하는 심판관 정원은 95명(4급 또는 45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판장 7명(고위공무원단 나급), 심판관 71명(4급 또는 45급)임. 심판장 1인당 심리건수 과다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 기술의 복잡화 및 선행기술 문헌 자료의 다양화에

6) 다만, 무효심판은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된 특허권을 대상으로 청구하므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개선방안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음. 최근 5년간 무효가 된 특허권 중 약 65%는 2008년 이전 등록된 특허임

따른 부담 등으로 심판품질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임

-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가 주요국에 비해 1.2~6배 높은 상황에서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리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1인당 심판처리건수(2013년 기준)는 한국 79건, 일본 43건, 미국 66건, 중국 45건, EPO 13건임(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근본적으로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지 않고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단기간에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표 2-15] 심판관 정원 변동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심판관 (명)	특허·실용	65	65	65	66	71
	상표·디자인	23	23	23	24	24
	합계	88	88	88	90	95

[표 2-16] 최근 10년간 심판부 정원 변동 추이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심판부	고위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3·4급	4	4	3	3	3	3	3	3	3	3
	4급	36	36	37	37	37	37	37	37	37	37
	4·5급	48	48	48	48	48	48	48	50	55	55
	5급										
	6급이하	2	2								
	합계	101	101	99	99	99	99	99	101	106	106

- 심판장 문제는 더욱 심각함.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비율은 1998년 출범 당시 ‘1:2’였음. 이는 2014년 현재 일본 특허심판원의 약 1:2(114:220) 수준과 유사한 정도였음. 그런데 현재는 ‘1:10’ 이상으로 줄었음. [표 2-17]에 따르면, 2007년 심판장 정원 증원이 1명 이루어진 이후 2016년까지 심판장 증원은 전혀 없었음. 그 대신 심판관은 출범 당시 12명에서 2016년 현재 71명으로 6배가량 대폭 증원되었음. 심판관 증원에 맞추어 심판장 정원이 전혀 연동되지 않았던 까닭에 현재 심판장은 가혹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심판관과 심판장이 모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심판품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임

[표 2-17]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장 정원 변동 추이

구 분	1998(출범)	2007~2013	2014	2015	2016
심판장	6	7	7	7	7
심판관	12	65	66	71	71
심판장 : 심판관	1 : 2	1 : 9.3	1 : 9.4	1 : 10.1	

-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판품질 제고, 구술심리 확대 실시 및 내실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음. 심판품질 관리 및 향상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심판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개선과제들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위상이 제고되고 특허분쟁에서 특허심판의 선도적인 역할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특허청, 2015)
 - 심판품질 제고 노력: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영: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우수심결문 선정, 우수 판례평석 공모,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등, △심판품질 향상 활동 및 심판 인프라 확충: 심판관 등급제 시행, 심결문 독회 실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 분석집 발간 등, △심판관 양성 및 교육과정 내실화: 심판관과정 OJT 교육 실시, 심판부 자체학습 조직 운영 및 심판원 교육과정 내실화 등
 - 구술심리 확대 실시 및 내실화 노력: △구술심리 기반 조성 및 구술심리 내실화 시행,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개통, △구술심리 투명성 및 고객 편의성 제고, △ 구술심리 진행 절차의 표준화 등
- 이밖에도 특허심판원은 2016년에 심판청구료 반환제도(특허법 제84조, 상표법 제38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를 도입하는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심판청구료 반환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은 [표 2-18]과 같음. 특허, 실용신안은 2016년 6월 30일, 상표, 디자인은 2016년 4월 28일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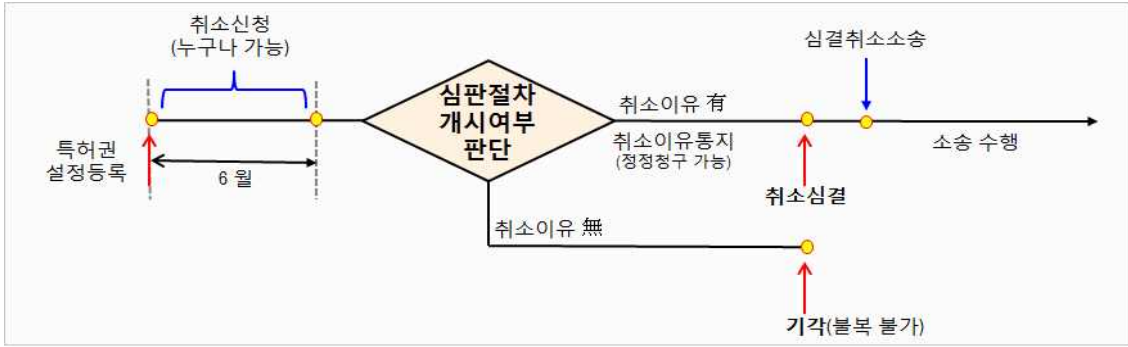
[표 2-18] 심판청구료 반환제도

구분	원 결정 취소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각하
대상	보정없이 심사관의 결정이 취소	심리종결통지에 앞서 심판청구취하 (참가신청 포함)	결정각하, 참가신청의 거부
반환금액	전액	50%	50%
적용	심결시	취하시	각하 또는 기각시
통지	특허심판원장		
재심의 경우	동일법령 적용		

- 또한 특허심판원은 2017년부터 다양한 심판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시행하게 됨. 첫째, 2017년 3월 1일부터 [그림 2-14]와 같은 형태로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특허법 제132조의2)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청구인) 누구나,
- (심판청구기간)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6월 내에,
- (심판청구이유)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 선출원 위반 등,
- (심판절차) 취소신청기간 만료 후 모든 증거들을 종합 검토(심리병합)

[그림 2-13] 특허취소신청제도 개념도



- 2017년 주요 개선사항 둘째로는, 심리지연 방지를 위한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하기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특허법 제133조의2제5항). 기존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이 되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는 “정정청구 가능기간+1개월” 까지 취하 가능하도록 변경됨(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도 정정 취하 가능함)
- 셋째, 소송당사자의 절차 중지 신청권이 도입됨(특허법 제164조). 기존에는 법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가 가능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는 소송절차 당사자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시까지 중지신청이 가능함(주요 입법례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9조,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임)
- 넷째, 정당한 권리자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그림 2-15]와 같이 도입됨(특허법 제99조의2 등). 기존에는 무권리자의 무효 심결 확정 후,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출원이 필요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는 무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여 반환이 가능해짐

[그림 2-14]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 다섯째,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직권심사제도가 도입됨(특허법 제66조의3). 기존에는 특허결정에서 설정등록까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는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특허결정 취소, 직권 재심사가 가능해짐(다만, 권리 안정성을 위해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만 가능함)
- 요약하면, 한국의 특허심판제도 및 특허심판원은 외형상 선진국 제도에 못지않게 정비되어 왔지만, 이상론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하겠음(김원오, 2010).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심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4. 종합정리 및 시사점

- 최근 특허관련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추세임.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법률시장 개방 압력과 미국, EU와의 FTA체결,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 등으로 불리는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의 공세, 섭외적 지적재산 분쟁의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특허쟁송체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좌절과 신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이란 변수도 작용하고 있음(김원오, 2010)
- 특허심판원 일반 현황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상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여 왔음. 특허관련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위상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3 장 헌법과 법률상의 행정심판으로서의 특허심판

제 1 절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심판전치주의

1.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1) 행정의 자기 통제

- 행정의 자기 통제는 행정기관이 판단주체가 되는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국민들은 불복 대상인 행정결정에 대하여 사실적·법적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임.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의 핵심 역할은 「행정심판법」 외에도 「행정절차법」이 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자기통제의 역할은 「행정절차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도 있음. 역설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잘 정비된다면 「행정심판법」의 자기통제 기능은 그 만큼 희석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함 (한국행정법학회, 2013)

2) 개인의 권리 구제

- 개인의 권익 구제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소송의 기능과 겹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행정쟁송의 기능일 것임. 그러나 행정심판의 이러한 기능을 행정심판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것은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아무리 사법절차를 준용하더라도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는 같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행정심판의 권익구제기능은 「간이」와 「신속」의 특성과 결부될 때 그 존재의의가 더욱 살아남.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와 닿는」(bürgernah) 제도로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임. 간이·신속한 점만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참조). 요컨대, 「권리이익구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존재의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간이·신속성」과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가 행정심판의 중요한 존재의의로 강조되어야 함(한국행정법학회, 2013)

3) 법원의 부담 경감

- 행정심판은 법원의 부담 경감의 의미를 가짐. (광의의) 행정절차 내에서, 행정 스스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행정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이는 행정심판에서 해결되어 행정소송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⁷⁾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능은 큰 의미가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함. 이렇게 볼 때

전통적인 「행정심판법」의 존재의의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음(한국행정법학회, 2013)

2.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

- 헌법 제107조 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 정리되어야 함.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고, 대법원은 준사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분됨을 분명히 했음(한국행정법학회, 2013)
 - 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바8 결정: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중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 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짓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된다.”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7) 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으로 오는 것도 행정소송의 입장에서 부담이 경감되는 면도 있겠지만, 주로 역할대행의 의미일 것이다.

-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성은 행정심판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 헌법규정 및 「행정심판법」 개정에서 나타난 (준)사법절차의 강화는 행정심판의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특정 수단의 강화를 통하여 행정심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의의에 있어서 중점의 차이를 가져올 순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정도의 목적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판단주체가 행정부에 소속되는 한 그 본질은 (광의의) 행정절차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판단주체가 법원인 사법절차와 사이어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3심제를 갖춘 행정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절차성의 지나친 강조야말로 준사법절차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사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행정절차는 어차피 사법절차에는 못 미치면서도 행정절차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임(한국행정법학회, 2013)
-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종합하면, ①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②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절차의 준용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맞지 아니한다는 것, ③ 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위 헌법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3.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

- 헌법 제107조 제3항 제2문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하여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청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 규정은 ‘결정절차의 타당성이 결정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법절차이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행정심판절차는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는 것을 밝히면서, 행정심판절차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전심절차가 되지 않도록 이를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 형성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임

1) 판단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임의로 구분해보면, 독립성은 판단기관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정치적,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간섭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며, 고려대상으로는 판단기관 구성원의 임명의 방법, 임기 그리고 소속기관 또는 임명권자의 감독권한 및 이들에 대한 판단기관의 보고의무 등이 있음. 판단기관의

공정성은 판단기관 자체의 존재양식에 관한 문제로, 고려대상으로는 판단기관의 구성원의 구성, 판단기관의 장(長)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 장(長)의 판단기관의 운영 및 구성원에 대한 권한의 정도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대해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초로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기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⁸⁾에서 “재결기관이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심리·의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심사위원회를 재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 자격, 임명절차,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법 제91조)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특히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91조 제4항) 심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 중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3항), 6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때에도 판사·검사·변호사 위원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도 이들 위원이 각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4항).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건대,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하다 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⁹⁾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구성하며(제7조 제2항),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8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제8조 제2항),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보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1조(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를 준용하도록(제8조 제4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고 있다(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1항). 위와 같이 재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심사·결정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합의제 기관이고, 재심위원의 수, 자격, 임명

8) 헌재 2000. 6. 1. 98헌바8, 판례집 12-1, 590, 601-602.

9) 헌재 2007. 1. 17. 2005헌바86, 판례집 19-1, 54, 63.

절차,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비록 일정비율 이상의 확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¹⁰⁾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성의 요소인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는 권리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 지위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경우 재결청은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나아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을 재결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전문가가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면,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토대로써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고, 이는 판단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로 판단함

-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판단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정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은 위원의 수, 자격, 임명절차, 임기, 신분보장, 외부전문가의 참여정도 등임

2)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대심적 심리구조는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소송구조를 의미하고 이는 당사자가 심리·재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절차에 변론주의를 가미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답변서를 청구하여 재결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는 보충서면·증거서류·증거물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당사자에게는 심리기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구술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재판절차 정도의 엄격한 절차는 아니

10) 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판례집 13-1, 1326, 1336-1338.

더라도 그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당사자가 공방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함. 고려대상으로는 기피신청권, 구술심리신청권 및 구술심리, 보충서면제출권, 물적증거제출권, 증거조사신청권, 자료제공요구권 및 자료열람권 등이 있음

제 2 절 특별행정심판제도와 특허심판제도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제도를 총칭함
 -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우선 특별행정심판은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전문·기술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도로서 심판기관과 심판절차 등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그것과 다르며, 보다 사법절차에 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 등이 있다고 봄. 즉 행정청의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인 점에서는 행정심판과 성질을 같이 하나, 특별법에 의한 심판이 행해지는 점에서 일반 행정심판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임. 한편으로는 관련 사안의 전문성·기술성과 행정통제의 능률성 보장이 필요성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는 특별행정심판절차, 약식절차, 일부특례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봄. 또한 특별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두어진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보아, 심판청구사건의 전문성·기술성에 비추어 특별행정심판기관 등 특별심판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의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특별심판절차, 불복기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에 대한 단순한 특례규정을 둔 경우도 있다고 함
-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적 보장은 특별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적 보장을 포함하는 의미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별행정심판은 헌법적 요청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에 있어 일반 행정심판과 다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임
 -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 규정은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사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불복기간 등에 관하여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두고 있음. 특별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성·특수성이나 특례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것 역시 ‘행정심판’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이는 곧 행정심판에 있어 요구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와 법률로 정하는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의 준용”의 요청이 특별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적 보장은 특별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적 보장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이해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별행정심판은 헌법적 요청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에 있어 일반 행정심판과 다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신봉기, 2010)

-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보다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심판제도 및 절차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함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등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행정심판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는 각양각색이나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버금가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심판제도·특허심판제도·소청제도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비하여 약식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대개 이의신청이나 재심제도, 그 밖에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
-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심판절차에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제4조 제1항에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례를 두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행정심판이 일반 행정심판을 대체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이 됨
-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개별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준사법절차가 보장되고 있다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해 불복절차가 객관성·공정성 등의 준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거칠 수 있는 간이적 불복절차로 보아야 할 것임

3) 특허심판제도와 심판전치주의

- 특허심판제도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만 가능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법 제186조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현행법상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대상은 조세심판(조세심판원), 특허심판(특허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해양안전심판원), 부당해고 불복(노동위원회),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소청심사위원회) 등임
- 구(舊)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외한 항고소송 전반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를 규정하였으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8.3.1.부터 항고소송의 제기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각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음. 특히, 개별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당 법률에 의한 처분이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처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서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 등을 들고 있음(헌재결 2002. 10. 31, 2001헌바40,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합헌]). 헌법재판소는 “소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필요적 전치조항’ 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결정했음(헌재결[전] 2015. 3. 26, 2013헌바186)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② **국세, 관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조세(국세, 관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함(국세기본법 제55조·제62조·제69조, 관세법 제38조·제43조의7).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는 납세자의 재량에 해당함. 한편,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전심 절차가 임의적으로 전환되었음(헌재2001.6.28. 2000헌바30).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두 종류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거나, 이의신청 절차만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짐
- ③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및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처분:**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건수가 매우 많아 현행 행정심판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제기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 실무상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재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등 흠의 치유를 기다려 본안판단을 하고 있음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여기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심판법의 심리절차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절차는 전체적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가깝도록 배려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증거조사신청권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으며, 재결의 절차와 방식, 재결의 효력 등의 면에서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재결기관의 독립성·공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사청구의 재결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하고,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고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본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위의 법에서 규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헌재결[전] 2000. 6. 1, 98헌바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구(舊) 토지수용법 제75조(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하)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1월내에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경우를 공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로 해석하고 있음.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게 하여,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의신청을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한 것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헌재결 2002. 11. 28, 2002헌바38)
- ⑥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원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그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며, 재결의 하자가 원처분에 있는 경우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것인가 여부는 불문함.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원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판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감

사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판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경우(감사원법 제36조 및 제40조).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경우(특허법 제186조 및 제189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등)

- 특허심판은 기술전문성 문제, 이와 연계된 우수 전문 인력 확보 문제, 비용 문제, 신속·신뢰성 문제 등에서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긍정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차원에서 특허사건은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및 기술전문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구를 통해 특허성을 판단하고 있음.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제도 및 기술 전문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함. 특허청 심사관(843명) 중 심사경력 10년 이상의 우수인력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인력을 다른 곳에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비용 측면에서 특허심판은 특허소송보다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허심판은 약 30만원의 청구료와 대리인비용 500만원가량이 소요되나, 소송은 약 47만원의 인지대(송달료 포함), 대리인비용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됨. 특히 이 경우 중소기업에 불리한데, 대기업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심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신속·신뢰성 차원에서 특허심판에 의해 대부분의 분쟁이 사실상 해결된다는 장점이 큼. 특허심판원 심결(2015년, 6,347건) 중 약 13.8%만 소 제기가 되었고 나머지 약 86.2%는 법원에 제소되지 않아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 3 절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 헌법이 행정심판을 준사법화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그 구성과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로 판단하고, 판단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음

- 판단기관의 독립성에 대해, 현재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사항은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소속기관)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판관 수에 대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조(심판장과 심판관)에 규정되어 있음
- 심판관 임명권자/임명방식, 임기,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전보로 임명하고 있음
- 심판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심판관, 심판장의 자격요건)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심판기관의 독립성 뿐 아니라 전문성과도 관련되어 있음

특허법 시행령

제8조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2015.8.1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 판단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현재 심판관에 외부 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심판

원장의 임명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승진발령하고 있음

-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심판관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심판에 대해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특허법 제143조에 의거, 직무상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심판관은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됨

제143조(심판관)

-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 모든 심판사건을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하고, 심사에 관여한 심판관은 제척되어 심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7조 제2항에 의거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아울러 심판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되는 ‘심판관 제척’ (「특허법」 제148조) 제도가 있으며,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는 심판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에서 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심판관 기피’ (「특허법」 제150조) 제도가 있음. 더불어 심판관 스스로 직접 해당 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심판관 회피’ (「특허법」 제153조의2) 제도가 있음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전문개정 2014.6.11.][시행일 : 2017.3.1.]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6.11.]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 답변서·의견서 제출, 구술심리, 참가,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등이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음
- 특허법 제154조(심리 등)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55조(참가),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규정을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결과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 특허청 결정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34~39%(결정계)로, 심사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공정하게 판단하여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허심판원 조직과 운영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구성원의 임명방법, 임기, 신분보장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인력의 참여가 없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과 합의체에 의한 심리 등이 특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15년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 중 취소되는 비율이 1% 수준으로 결과의 공정성, 신뢰성이 인정받고 있다 할 수 있음

제 4 절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특수성

-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라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인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사안이어야 함. 사안의 전문성이라고 함은 어떤 특정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하고, 이는 변호사·의사·교수 등 인적 측면의 전문성과 함께 조세·노동·교육 등 업무 측면의 전문성을 포함하고(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사안의 특수성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의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 요건으로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으며, 다만 일반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는 권익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특수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봄(채우석, 2012)
- 행정심판기관의 전문성은 특별행정심판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날로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이후 해당 분야별 사건의 인용률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심리부담이 경감되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문위원으로 섭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제한되어 있어 심리의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외부감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 심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인용률 증가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부 감정제도의 경우 운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남음(신봉기, 2010)
 - 특별행정심판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제각기 그 전문성·특수성이 긍정되고 있지만 그것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될 정도로 “특히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 많고, 또한 전문적인 국세 및 지방세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서 동일한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굳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반해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전문성 뿐 아니라 특허법원의 존치에 따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긍정됨.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라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인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특허심판은 이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겠음(신봉기, 2010)
- 행정심판에 있어 전문성이 긍정되더라도 특수성이 더욱 요구되는 영역의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의 설치를 위한 특수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됨.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법학교수 등 주로 법 전문가이나 오늘날 현대행정의 복잡

성·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분야의 행정은 법전문성보다는 당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의 분쟁 해결은 법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보다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한 행정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이것이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행정능률의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에도 보다 부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전문성·특수성이 긍정된다고 하여 이를 모두 개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두는 경우는 전문성·특수성이 특별히 높게 인정되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이 옳을 것임(신봉기, 2010)

○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으로,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긍정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그 전문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특허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특허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함. 특허청 특허심사관(843명), 특허심판관(71명)은 모두 이공계 전공자이며, 특허심사관의 약 48%가 박사 혹은 기술사 소지자임. 박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한 후 수년간의 심사경험과 훈련을 거친 우수인력만 심판관으로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관은 전문성을 토대로 법률쟁점을 정리·판단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존재들임. 관련 분야 박사, 변리사라도 바로 심판관이 되기 어렵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함

- 특허심판은 고도의 기술전문성과 심사심판 경험을 통한 청구항 해석능력, 특허법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과 다른 측면이 큼.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허성(特許性)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 그래서 특허법 제29조에서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약칭: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일본특허법, 미국특허법, 유럽특허협약 등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되어 있음. 기술분야별로 각국의 산업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특허성 판단에는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의 산업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 현대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특허심판과 같이 기술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할 분야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해 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심판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임

제 3 장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사례 분석

제 1 절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사례비교의 목적 및 내용

-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조세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등을 대상으로 설치 목적, 기능, 운영인력, 업무규모 등에 대해 특허심판원 조직·기능·인력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특허심판원 조직구조, 위상, 기능, 인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조직·인력 현황 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논의하고자 함
 - 첫째,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 둘째,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조직차원의 구조와 위상은 무엇인가?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독립된 조직인가 아니면 주관 행정기관에 속한 위원회 조직인가?
 - 셋째,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인력 구성은 업무규모에 비해 적절한가? 인력 선발 및 운영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에 속해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주관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와 해양안전심판원은 각각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소속되어 있음
-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인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리 독립 및 현행 유지 방안 검토 시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대안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한 준거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님
- 국내특별행정심판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조직·제도 현황 분석 차원에서 조세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행정심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직·인력 현황, 내국세·관세·지방세 전문인력 수급, 공정성 확

보를 위한 비상임심판관 위촉현황을 조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을 통한 조세심판원의 연혁과 소관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 임의적 전치주의인 행정심판 현황을 조사하고, 처분청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함
- 각 행정심판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법·제도 현황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함
 - 첫째,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설치 근거 법령에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둘째,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설치 근거 법령에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임면, 신분보장, 결격사유, 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셋째,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 및 절차에 대해 주무부처 및 심판기관의 내규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넷째,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심판절차가 행정심판법, 설치 근거법령, 내규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이 연구는 국내사례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법·제도 운영 현황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법·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특허심판원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사항을 도출함

제 2 절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 제도 분석

1. 조세심판원

1) 조세심판원 설치 근거 및 목적

- 조세심판원 설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의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②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 29일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되면서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면서 출범하였음
 - 1975년 개소한 국세심판소를 기원으로 하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 재정경제부(지금의 기획재정부)가 국세 심판청구 업무를, 지방세 심사청구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조세심판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 조세심판원 설치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심의를 일원화함으로써 납세자가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었음
- 기존 국세심판 청구 및 지방세심판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심판원 설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세와 지방세로 권리 구제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세심판원을 신설
 - 둘째, 과세 당사자인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청에서 심판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한 조세심판 운영의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셋째, 이원화되어 있는 조세심판 제도를 일원화하여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 구제 상의 행정효율성 향상

2) 조세심판원 주요 기능

- 조세행정심판은 사후적 조세구제 절차 중 하나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과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혹은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나 이해관계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 혹은 필요한 처분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는 절차임
 -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세무서장이나 상급청인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 혹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 심사청구는 상기 사유에 의해 이익이나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나 이해관계자가 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심의 절차상 원칙적으로 1심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2심에 해당
- 조세행정심판은 심리 결정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진행 절차와 달리 준사법적 절차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행정심급의 최종적인 절차에 해당함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 국세의 경우 현행 조세소송은 전심절차 단계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3항, 제56조 2항), 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국세 불복절차는 단심급(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이며, 선택적 2심급제(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임
 - 납세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지방세에 대한 조세소송 절차는 국세와는 달리 선택적 2심급제로 이루어짐(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118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지방세법 제119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전심 절차가 임의적으로 전환(헌재2001.6.28. 2000헌바30)

-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두 종류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절차만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짐

○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판청구 접수(청구서제출>답변서 작성>청구번호 부여>지정통지>항변서 제출>심판조사관 배정>사건의 병합 및 분리)
- 사건조사(조사 및 사실인정>보정요구>회의자료 작성 및 열람>현장확인조사)
- 조세심판관회의 운영(의견진술,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 심판참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조정검토 등),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결정통지 등의 업무

○ 우리나라 조세심판 심리과정은 비공개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특징으로 함(김범준, 2009)

- 국세기본법 제72조 5항에 의거, 조세심판관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비공개주의), 동법 제76조 1항은 조세심판관이 직권으로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직권주의)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 과세를 담당하는 관청이 조세심판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부(국세기본법 제69조 5항)하면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거나(국세기본법 제71조 1항), 자신의 의견을 진술(제58조)할 수 있음(당사자주의)
- 또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나 심판청구를 한 청구보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2항)하고 있음(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 조세심판원 조직·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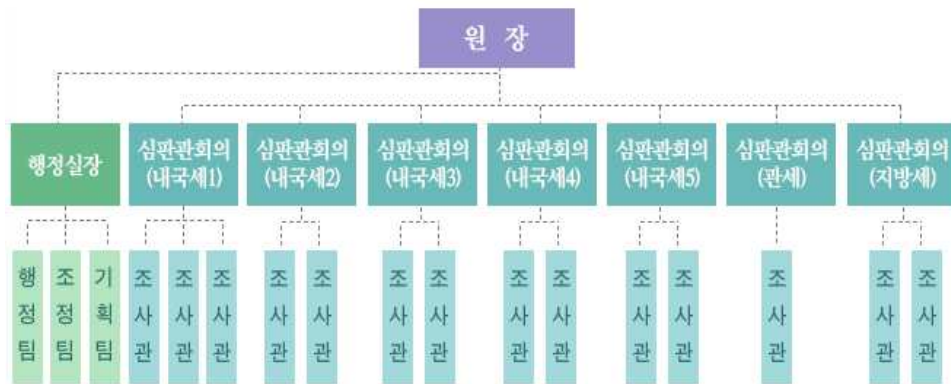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6인의 상임심판관과 24인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심판관 회의에

서 자유심증에 의한 합의제로 결정함

- 조세심판원 변경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까지 관장하면서 기존 5개 심판부에서 6개 심판부로 조직 확대

○ 조세심판원은 [그림 3-1]과 같이 원장 1인, 6심판부(내국세 1/2/3/4 심판부, 내국세5(소액)+관세 심판부 1개, 지방세 심판부 1개) 1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을 보면, 외형상 심판부가 7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심판관회의(내국세5)와 심판관회의(관세)를 묶어 하나의 심판부로 운영하고 있어 총 6심판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임

[그림 3-1] 조세심판원 조직도



*출처: 조세심판원(<https://www.tt.go.kr>)

- 원장: 조세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조정,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주재
- 상임조세심판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주심 또는 배석심판으로 참여함
- 비상임심판관: 교수, 변호사 등 조세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 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심리·결정하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및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심판 결정
- 조사관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및 법률관계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심판관회의에 상정. 심판관회의에 임회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를 거친 사

건에 대한 결정문안 정리

- 행정실: 심판업무, 행정업무, 심판청구서류 보존관리 및 청구기록 열람, 대출지원(행정팀),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비교 검토 연구 실시

○ 조세심판원 직제규정상 조직은 원장 1인, 심판관 6인, 행정실장 1인, 조사관 13인, 서기관 7인, 사무관 52인, 기타 행정지원인력 32인 등 총 112명 정원으로 구성됨

- 1975년 국세심판소 개소 당시 정원 34명으로 출발하였으며, 국세심판원 개명 당시 94명, 2008년 조세심판원이 설립되면서 행정사무관, 조사관 증원에 따라 108명 정원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증가

- 2011년 114명까지 정원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조세심판원 직제개정에 의거하여 정원이 112명으로 소폭 감소함

[표 3-1] 조세심판원 정원 변동 연혁(1975-2015)

일자	변동사유	정원(명)	직위·직급	근거
1975.4.1.	국세심판소 개소	34	소장 1, 심판관 4, 행정실장 1, 조사관 4, 행정사무관 10, 세무주사 4, 세무주사보 2, 고용직 8	대통령령 제7576호, 1975.3.18., 제정
2000.1.1.	국세심판원 개명	94	원장 1, 심판관 5, 행정실장 1, 조사관 10, 서기관 5, 행정사무관 38, 세무주사 9, 세무주사보 1, 사무운영 등 24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2.28., 일괄개정
2008.2.29.	조세심판원 설립	108	원장 1, 심판관 6, 행정실장 1, 조사관 12, 서기관 5, 행정사무관 50, 세무주사 12, 세무주사보 1, 사무운영 등 20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2.29., 제정
2011.3.7.	조세심판원 직제개정	114	원장 1, 심판관 6, 행정실장 1, 조사관 13, 서기관 7, 행정사무관 53, 세무주사 12, 전산주사 1, 사무운영 등 20	대통령령 제22693호, 2011.3.7., 일부개정
2015.1.6.	조세심판원 직제개정	112	원장 1, 심판관 6, 행정실장 1, 조사관 13, 서기관 7, 행정사무관 52, 세무주사 1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사무운영 등 18	대통령령 제26012호, 2015.1.6., 일부개정

*출처: 조세심판원(www.tt.go.kr)

○ 2015년 기준 조세심판원 운영 인력 중 서기관·사무관 정원은 59명이며 현원은 57명으로 정원 대비 2명 미충원 상태이며, 주무관 정원 31명 중 현원 29명으로 2명 미충원 상태임

-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인 심판관(주심 1인, 배석2인)은 2009년 이후 6명 정·현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조사관 정원은 2011년 14명 정원에 대한 현원을 충원 중임

[표 3-2] 조세심판원 정·현원 변동 현황(2009-2015)

단위(명)

연도	구분	계	원장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2015	정원	111	1	6	14	59	31
	현원	107	1	6	14	57	29
2014	정원	113	1	6	14	60	32
	현원	109	1	6	14	58	30
2013	정원	114	1	6	14	60	33
	현원	110	1	6	14	58	31
2012	정원	114	1	6	14	60	33
	현원	110	1	6	13	58	32
2011	정원	114	1	6	14	60	33
	현원	112	1	6	14	59	32
2010	정원	108	1	6	13	55	33
	현원	100	1	6	10	54	29
2009	정원	108	1	6	13	55	33
	현원	108	1	6	13	55	33

*출처: 조세심판통계연보(2015)

- 현재 국세기본법 제67조의 ④에 의하면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고 규정
- 과견직원, 전산직원, 사무직원을 제외한 조세심판원 인력의 조세 경력은 평균 12년이며, 조세관련 공인자격보유자는 변호사 11명, 공인회계사 8명, 세무사 24명 등임
 - 상임심판관의 평균 조세경력은 14년 4개월이고 자격보유자는 변호사 1명 및 세무사 3명임
 - 심판조사관의 평균 조세경력은 15년 9개월로 5명이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표 3-3] 직위별 조세경력 및 자격보유 현황

구분	평균 조세경력	자격 보유
원장(1명)	25년	세무사
상임심판관(5명)	14년 4개월	· 변호사 1명 · 세무사 3명
행정실장(1명)	19년 4개월	· 세무사
심판조사관(11명)	15년 9개월	· 세무사 5명
서기관(6명)	8년 2개월	· 변호사 1명 · 공인회계사 1명
행정사무관(49명)	15년 6개월	· 변호사 5명 · 공인회계사 3명 · 세무사 10명
전문임기제 나급 (사무관, 7명)	1년 4개월	· 변호사 4명 · 공인회계사 3명
주무관(9명)	12년 7개월	· 공인회계사 1명 · 세무사 4명
총계(89명)	12년	· 변호사 11명 · 공인회계사 8명 · 세무사 24명

*주: 총 현원 중 파견직원 4명, 전산 및 사무운영직 21명 제외.

**출처: 조세심판원(www.tt.go.kr)

4) 조세심판원 운영

- 조세심판원 운영은 조세심판원 훈령 제4호(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 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조세심판원의 공정성 확보 근거를 확립하고 있음
- 조세심판원 1인당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09년 944건에서 2015년 1,363건으로 44.3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사관 1인당 처리건수 증가율 33.94%, 서기관 및 사무관 1인당 처리 건수 증가율 38.83%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표 3-4] 1인당 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사무관
2015	1,363	584	143
2014	1,458	625	151
2013	1,219	522	126
2012	1,074	496	111
2011	1,049	450	107
2010	896	537	100
2009	944	436	103

*출처: 조세심판통계연보(2015: 11)

- 1인당 처리 건수의 증가는 같은 기간 처리대상 건수가 2,750건 증가한 반면 조세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 및 사무관의 인력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데 따른 것임
- 조세심판원의 주요 임무는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 그러나 2009년도 이후 매년 심판처리율은 대부분 80% 미만이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청구건수도 2013년 이후 2,0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심판관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또한 조세심판 청구 건 중 기각 건수는 2012년 4,241건에서 2013년 이후 5,0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처리대상 건수 1만 400건 중 5,579건으로 기각률이 53.64%이었음. 이는 2012년 기각률 51.23%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것임. 반면 인용 건수는 2013년 1,803건에서 2015년 1,306건으로 500건 이상 감소하였음

[표 3-5] 조세심판 청구처리 추세

(단위: 건, %)

연도	처리대상건수①			처리건수②						처리율 (2/1)	인용율		이월 건수
	소계	이월	당년 접수	소계	취하 ③	각하 ④	가각 ⑤	재조사 ⑥	인용 ⑦		㉠	㉡	
2015	10,400	2,127	8,273	8,117	222	459	5,579	611	1,306	786	241	178	2,223
2014	10,877	2,408	8,474	8,750	163	482	6,200	465	1,440	804	222	177	2,127
2013	9,717	1,834	7,883	7,314	136	301	5,074	-	1,803	753	251	-	2,408
2012	8,278	1,854	6,424	6,444	90	346	4,241	-	1,767	778	278	-	1,834
2011	8,150	1,837	6,313	6,296	97	312	4,452	-	1,435	773	231	-	1,854
2010	7,210	1,986	5,224	5,373	205	273	3,646	-	1,249	745	242	-	1,837
2009	7,650	1,799	5,851	5,664	177	325	3,955	-	1,207	740	220	-	1,986

*출처: 조세심판통계연보(2015: 11)

**주1)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율: $(⑥+⑦)/(④+⑤+⑥+⑦)$

***주2)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율: $⑦/(④+⑤+⑦)$

****주3) 처리율 및 인용율은 청구세액이 없는 심판청구(예. 압류해제거부처분 등) 등의 이유로 인용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금액 기준이 아닌 건수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표 3-6]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도	내국세	관세	지방세
2015	179	232	157
2014	194	170	161
2013	182	141	77
2012	165	130	176
2011	175	219	203
2010	208	273	235
2009	164	253	154

*출처: 조세심판통계연보(2015: 70-72)에서 재구성

○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내국세, 관세, 지방세별로 차이가 있음

- 내국세와 지방세 처리 기간은 2015년 기준 각각 179일, 157일로 2014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관세 처리 기간은 2015년 232일로 2014년에 170일에 비해 62일 증가했음

○ 내국세, 관세, 지방세를 포함한 평균 처리 일수는 2012년 기준 157일로 2011년 199일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4년 175일, 2015년 189일로 증가하였음

-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 현황은 주심단독 처리 건수는 2012년 1,301건에서 2013년 91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1,000건 이내였음. 반면 같은 시기 조세심판관 회의를 통해 처리되는 건수는 2012년 4,934건에서 2013년 6,228건, 2014년 7,537건, 2015년 6,842건으로 6,000건 이상 증가했음

[표 3-7]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조세심판관 회의	주심단독	계
2015	120	6,842	993	7,955
2014	59	7,537	991	8,587
2013	40	6,228	910	7,178
2012	119	4,934	1,301	6,354
2011	85	5,130	1,011	6,119
2010	151	4,107	911	5,168
2009	29	4,509	949	5,487

*출처: 조세심판통계연보(2015: 10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의 ②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라는 규정에 따름
- 2010년 1월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행정심판법 제9조 제4항)
- 동법 제8조(중앙심판위원회 구성)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9조(불합리한 법령 개선), 제60조(조사·지도 등)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에 명령 등의 개정과 폐지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

정청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 재결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지도하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3항(“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년 10월 1일 설치되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원은 1951년 제정된 소원법(訴願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1964년 설치되면서부터 출발하였음

[표 3-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연혁

연혁	주요내용
1951년	소원법(訴願法) 제정
1964년	소원심의회규정 개정: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1981년	소원심의회규정 개정: 위원장을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주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종래 자문기관으로 국민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소원심의회위원회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상급기관에 필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함 -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1995년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
1997년	행정심판법 제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 급증에 따라 종전 상임위원 1인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조정
1998년	행정심판법 제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함 - 급증하는 행정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
2005년	행정심판법 제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무원단 구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의대상 축소,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조항 신설

2008년	행정심판법 제5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의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
2009년	행정심판법 제6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 -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운용 근거)

*출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m.go.kr)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함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요 기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중앙행정기관(예.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함
- 행정심판은 심판 대상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상기 행정심판 유형 중 취소심판이 가장 많은 청구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며, 심판청구기간 제한이 있음. 반면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음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직·인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중 1인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별정직인 3인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하며, 비상임위원(46인)은 교수·변호사·의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 결하기 위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됨.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행정심판법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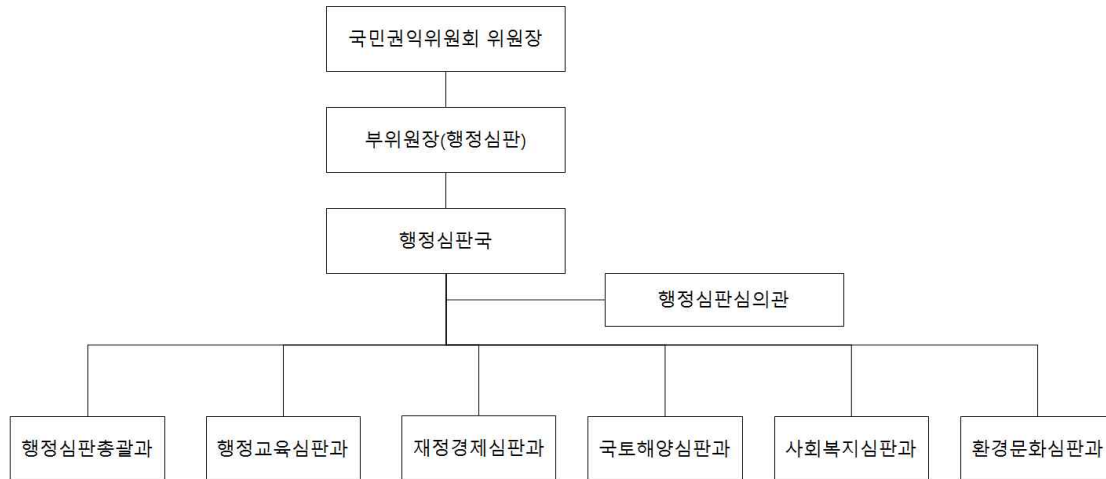
<p>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p> <p>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p> <p>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할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p> <p>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p> <p>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국 산하에 분야별로 행정심판과, 행

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의 6개 과로 구성됨

- 심판의 신속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행정심판법 제8조에 의거하여 70명(기존 5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직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표 3-9]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도별 사건처리 접수 건수는 25,000건 내외이며, 접수건수 대비 인용율은 15~16% 안팎의 비율을 나타냄

[표 3-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2006-2010)

연도	접수건수	심리·의결				인용율	취하, 이송
		합계	인용	기각	각하		
2006	19,541	18,744	2,968	15,160	616	15.8	448
2007	23,330	23,179	3,720	18,818	641	16	555
20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	1,211
20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57
20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1,001
20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1,063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2013	25,570	24,405	4,227	18,820	1,358	17.3	1,088
20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1,068
2015	24,617	24,947	3,933	18,627	2,387	15.8	806

*출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접수건수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각하율은 2011년 999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38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도 기피 및 제척 사유를 인지하였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신설 2016.3.29.>
-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⑧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1)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국립종자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행정위원회임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이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국립종자원, www.seed.go.kr)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①에 의거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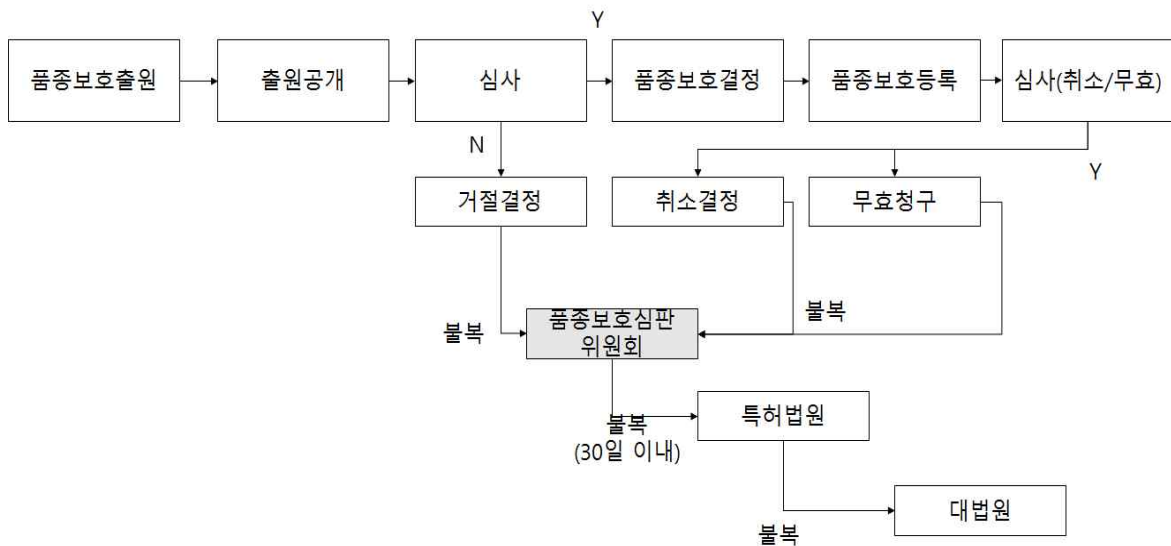
- 품종보호심판제도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1심)-특허법원(2심)-대법원(3심)의 절차로 진행됨(국립종자원, www.seed.go.kr)
 -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반쟁송절차를 준용하여 3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립종자원, www.seed.go.kr)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진행됨
 -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의 유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구분됨
- 품종보호권 무효심판 청구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국립종자원, www.seed.go.kr)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가 재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의 속 혹은 종에 속하지 않은 출원품종일 경우
 -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종일 경우
 - 육성자이거나 그 승계인(출원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경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재외자 중 외국인이 출원시
-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 두 사람 이상이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 품종보호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날 신고하거나 신고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 및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임에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출원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기타 조약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 절차는 [그림 3-3]과 같음

[그림 3-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 절차



*출처: 최근진(2004)에서 재구성

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직 및 인력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③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

〈표 3-10〉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직 및 제도

구분	세부내용
조직	- 8명 이내(농림축산식품부 내) - 상임위원 1명, 1명 위원장 포함
역할	- 거절·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당사자 -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청구: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심판	- 심판의 합의체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

*출처: 최근진(2004);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org.moi.go.kr) 에서 재구성

4)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국립종자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이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대표적인 심판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한국종자연구회,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무 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 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품종으로서 균일성 미비로 거절사정을 하였던 품종에 대한 불복 청구 사례(이후 청구인이 자진 취하)
 - 사과품종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으로 실시되어 신규성 상실로 등록무효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상소하여 특허법원에서 패소
 - 장미 신품종 아라리오의 품종보호 무효심판(청구기각 결정)

장미 신품종 아라리오의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는 농림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가들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자료를 검토하고, 수차례 합동회의를 거쳐 아라리오의 품종보호권을 인정, 종자산업법 제2조 및 제17조에 의해 “육성자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육성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봉계농산은 선발·특성검정·재선발 등을 통하여 아라리오를 육성한 육성자임이 인정됨으로 무권리자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다고원예의 품종보호 무효청구를 기각 심결하였음. 당해 심결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에 합치되는 신품종은 유래품종 여부에 관계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설치 근거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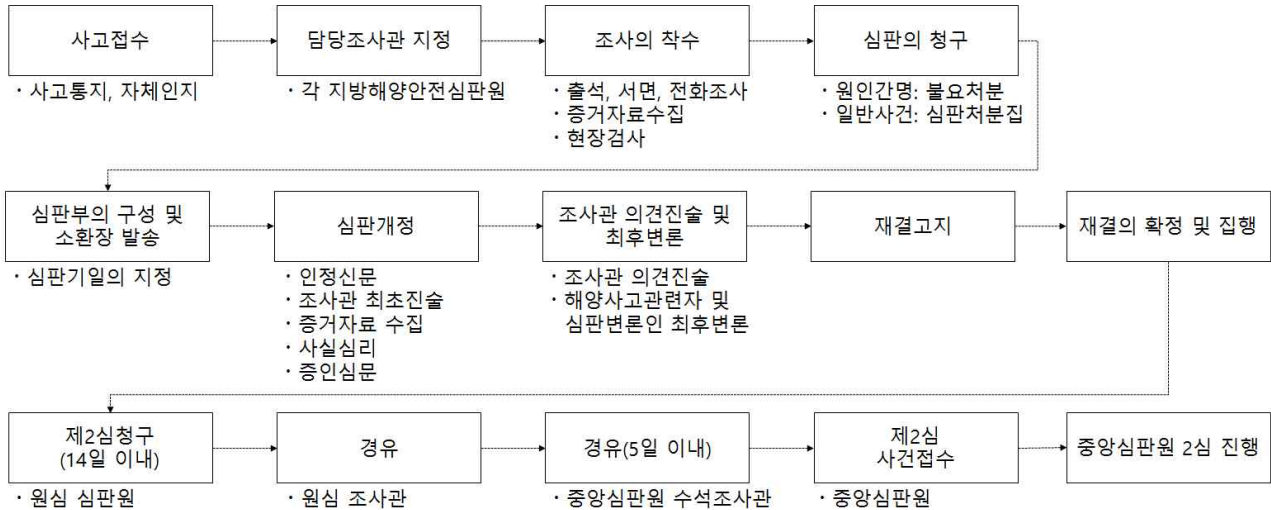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61년 제정된 해난심판법을 근거로 1963년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기원이며, 1996년 소관부서가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며, 1999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하였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 결과의 재발방지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는 해양사고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조사가 어려워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임(이종근, 2013)
 - 중앙해양안전심판제도의 1차 목적은 선원에 대한 징계보다는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임
 -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3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사고 증거 수집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특히, 해양사고 발생 즉시 조사가 어려우며, 사고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선박이 항구에 정박한 이후에야 조사 착수가 가능(이종근, 2013)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요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훈령 제75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연수교육 운영 지침(중앙해양안전심판원예규 제63호) 등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심판원의 설치)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고 규정하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에 의거하여 심판원의 직무를 규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하는 해양사고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 혹은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주요 기능

- 해양사고 발생 시 조사관이 해양수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를 통지 받거나, 신문 혹은 방송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 해양사고로 접수함
- 담당조사관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의 원인이 간단하여 심판에 불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심판불필요처분 이외의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함

[그림 3-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절차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www.kmst.go.kr)

- 중앙해양안전심판기관은 해양사고를 심판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따름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1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관 3인의 합의체 심판으로, 2심에 해당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심판관 5명의 합의체 심판임
- 선원법 제21조는 선박의 충돌, 침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 손상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심판법은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했을 때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 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이후 지방심판원 수석조사관은 사건을 배당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만 관계자 의사에 반한 증거물 압수, 강제조사, 해양사고 관계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 등의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음(해난심판법 제48조 제3항)
- 해양사고 심판은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서 시작되고, 심판장 3인이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기일을 지정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함
 - 제1회 심판은 심판장의 개정선언이 있는 후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인정신문, 조사관의 모두진술에 이어 사실심리로 이어짐
 - 심판관, 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양사고관련자 등으로부터 증인신청이 있을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절차를 진행
 - 사실심리와 증인신문 종료 후 조사관의 의견진술과 심판변론인의 최후변론, 해양사고 관련자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후 최종 심판기일에 심판장의 재결고지와 함께 심판 종료
 - 지방심판원에 의한 제1심 재결에 불복할 경우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심판원인 제1심 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림 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도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https://www.kmst.go.kr>)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 및 인력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 심판원장), 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조건은 해난심판법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자격 조건

해난심판법 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중앙심판원장의 추천과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 2급항해사이상 또는 2급기관사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사관 또는 선박행정사무에 5급이상의 선박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3. 2급항해사이상 또는 2급기관사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조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년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4. 해사보좌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5. 다음 각목의 경력연수를 통산하여 5년이상인 자
 -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난심판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운관계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 다. 해사보좌인으로 종사한 경력
6.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교통행정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7.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이후 2008년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관부서가 이관되었다가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현재에 이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조사관실과 심판관실 그리고 4개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구성,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각각 조사관실과 심판관실 운영
 - 조사관실의 주요 업무는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해양사건의 현장검증 등이며 14명의 인력으로 구성
 - 심판관실 담당 업무는 제2심 사건 심판 업무, 소송관련 업무, 이동심판 승인, 관할이전 및 각하 결정, 심판변론인 등록,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및 관리, 해양안전심판사례집 발간 등이며 7명의 인력으로 구성

-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은 ①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②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사고, ③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④ 그 밖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로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이종근, 2013)

- 특별조사부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사법절차, 심판 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행정처분 절차,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운영

-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현황은 2011년 1,109건에서 2015년 2,887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심판청구건수는 2014년 222건, 2015년 211건을 기록함

[표 3-11]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현황

연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처리				
				심판청구	비해당사 건 또는 이송	불필요 처분	익년이월	계
2011	133	976	1,109	181	30	614	284	1,109
2012	284	757	1,041	169	23	626	223	1,041
2013	223	639	862	144	2	490	226	862
2014	226	1,041	1,267	222	91	505	449	1,267
2015	449	2,438	2,887	211	428	1,701	548	2,888

*출처: 해양안전심판원(<https://www.kmst.go.kr>)

-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현황은 전년도이월건수와 당년접수건수를 포함하여 2014년 279건에서 2015년 307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 건수가 2014년 57건에서 2015년 96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담당하는 제2심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8건에서 2015년 2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심 재결건수 중 2심 청구건수 비율도 10.4%에서 12.8%로 소폭 증가하였음
- 또한 2015년의 경우 2심 청구자 전원이 해양사고 관련자로 조사관이 청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해양안전심판 건수

구분 연도	조사 접수 (건)	심판(1심)			심판(2심)			소제기 (건)
		청구 (건)	재결 (건)	2심청구율 (%)	청구 (건)	재결 (건)	소제기율 (%)	
2011	976	181	173	10.4	18	22	4.5	1
2012	757	169	163	10.4	17	12	16.7	2
2013	639	144	141	9.9	14	9	33.3	3
2014	1,041	222	183	10.4	19	19	15.8	3
2015	2,438	211	211	12.8	27	19	31.6	6
합계	5,851	927	871	10.6	95	81	18.5	15

*출처: 해양안전심판원(<https://www.kmst.go.kr>)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심 재결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74건으로 심판관 1인당 22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심 재결 건수는 연평균 16건으로 심판관 1인당 4건을 담당
 - 소송제기율은 1심 대비 평균 1.7%, 2심 대비 평균 18.5%로, 2009년 이후 재결 취소된 사건은 없음
-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취소소송 제기율이 낮은 이유는 분쟁 해결이 아닌 사고 원인 규명이 심판의 주 목적이고, 사고원인 규명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처분(징계, 시정권고)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 이내로, 소송비용에 비하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소송 제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임
 - 또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차례 심판을 통해 심판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도 소송 제기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 해양사고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자보다 선박 운항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종근, 2013)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및 조사관 중에는 상선관련 해기사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어선관련 해기사 소지자는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이종근, 2013)
 - 예를 들어, 상선과 어선이 충돌한 경우 상선관련 해기사로 구성된 심판원들에 의한 심판 결과를 어선 해양사고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히 이종근(2013)은 어선 관련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선관련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수시모집 방식으로 심판관 및 조사관을 임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해양사고의 유형을 반영하여 임용인사위원회 및 심판관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국내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결과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위상, 조직, 인력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조세심판원은 조세구제제도가 조세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음
- 조세심판원이 다부처 업무를 상대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기관으로 설치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타 특별행정심판기관과는 달리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심판을 위해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임
 -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 조세심판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세, 지방세, 관세별로 산재되어 있었음
 - 또한 당시 법령체계상 지방세에 대한 심판 재결청이 행정처분청 혹은 상급행정청이어서 특별행정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만 해도 국세 및 관세에 대한 심판의 최종심인 심판 청구의 재결청인 국세심판원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내국세와 관세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 기관을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중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관장하는 조세심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이유는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 단기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지방세 심판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 주체만이 다를 뿐이었고, 구제절차도 사실상 동일했기 때문임
 - 즉, 조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고려할 경우 다양한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임
- 특히,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설치된 이유는 조세심판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었음

-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중앙행정부처가 조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조세심판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판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함
 - 또한 조세심판 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판행정 기능의 일원화가 요구되었고, 거의 모든 국민이 심판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특별행정심판기관과는 달리 구조적 위상을 제고하여 포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 기관을 일선 행정부처 산하에 두기보다 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물론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부터 제3자 기관에 의한 엄격한 사법 절차화로 인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어렵게 하고, 집행 기관의 행정책임 회피 및 인사교류 차단으로 인한 전문적 심판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음(한성국·박훈, 2005)
 -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 산하에 조세심판원을 배치함으로써 부처간 조정 등 예상 가능한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조세심판 업무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국세청 부과처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조세심판관과 조사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정 기간 심판업무를 담당한 이후 국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전형준·이광수, 2014: 166)
- 이는 조세심판원과 같이 특별행정심판기관을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관할 행정청과 구조적으로 분리하더라도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함
 - 관할 특별행정심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전문 인력으로 행정심판 담당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는 것임
- 그러므로 조세심판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판처리절차 개선, 심판관 자격기준 강화, 제척 규정 구체화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조세심판원은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업무 근무

경력 기준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심판관의 자격조건 및 임명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8조에 의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법)의 ③에 의거하여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품중보호심판위원회 심판관 임명에 대한 규정은 식물신품중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조세심판원의 경우 심판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세청과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으며, 2014년도부터 국장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 교류도 이루어져오고 있음
 -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판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인사 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심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
 - 지난 2014년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고위급 인사교류일정의 일환으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각각 국장급 인사 1명에 대한 인사 교류를 단행해 왔음. 다만 최근 인사교류 조세심판관으로 내정된 국세청 출신 국장이 휴직함에 따라 현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명만이 국세청으로 전입한 사례가 나타났음(조세일보, 7.29).
- 이와 함께 공정한 행정심판 및 양질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판업무 수행을 담당할 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심판원의 경우 심사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심판관과 조사관 인력 규모는 2008년 심판원 설치 이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전형준·이광수, 20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별 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 운영 가능한 위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개정법령에 의하면 70명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에는 해난사고의 특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박운용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사고 유형(어선 혹은 상선)별로 인력 운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제 4 장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제 1 절 주요국 특허심판기관 사례비교의 목적 및 내용

- 이 장의 목적은 IP5 국가를 비롯한 주요국 특허심판제도 및 특허심판기관에 대한 비교 분석하여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사례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임. 비교는 제도적인 측면과 특허심판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IP5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관계의 독립성, 기능상 특성을 살펴봄. 둘째, 특허법의 특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정 등 특허심판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분석을 실시함. 이는 특히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는 심판관과 관련된 내용들(구성(원소속에 따른)과 이들의 지위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함. 이를 통하여 특허심판관들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특허심판은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심리하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허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박송규, 1996). 행정심판의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함(헌법 107조 3항). 그러나 특허심판은 다른 특별행정심판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며, 특허청장이 심판과정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일반 사법절차에 의할 경우 기술적 공방 및 판단을 위한 시간·노력·비용의 소비가 막대하고, 불복절차 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지식이 충분치 않은 법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통제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의 특수성을 고려, 행정심판으로서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임
 -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필수전치주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그 전제로 행정심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조직 구성은 독립성·전문성·특수성·신속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의 지위, 인원의 구성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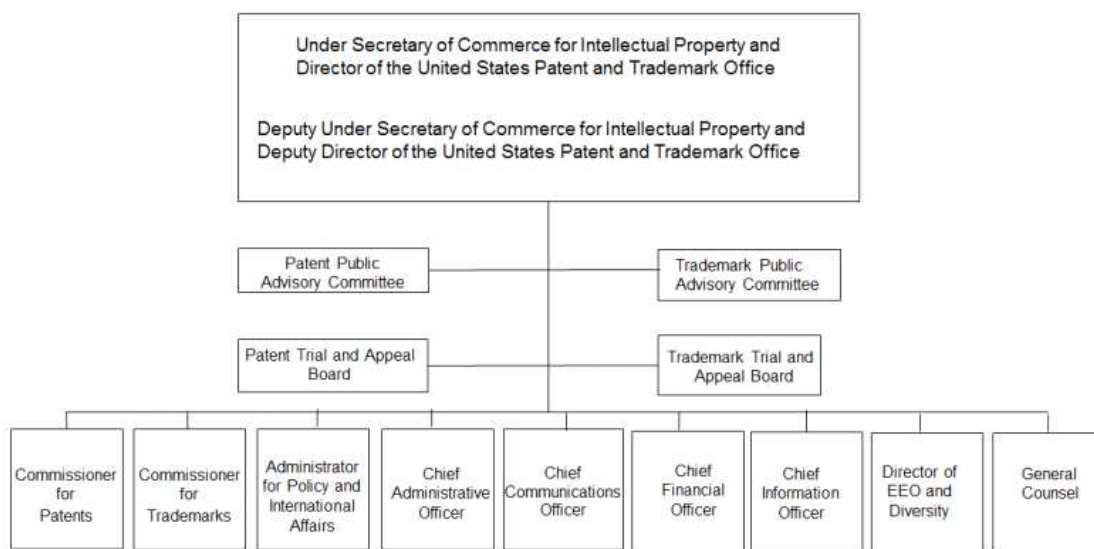
제 2 절 주요국 특허청 조직 및 운영 현황: 특허청—특허심판원 관계

- 주요국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법원(대법원 포함)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간의 관계 분석 결과는 이후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도출시 비교 분석의 준거 기준으로 활용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첫째,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이 특허심사 기관(특허청)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
 - 둘째,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의 기능은 무엇인가? “특허심사-특허심판-특허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특허심판 담당 조직과 특허심판원 그리고 특허법원(혹은 법원)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1. 미국

- 미국은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 2011년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산하에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과 상표심사를 위한 상표심판원(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을 설치하여 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PTAB)은 당사자 간 분쟁과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문제를 취급하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에 대한 심사, 재심사 불복에 대한 심사, 발명자 결정 수속 등의 업무를 다룸
- 상표심판원(TTAB)은 상표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과 불복 문제를 다루며,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상표등록 취소 청구, 상표등록의 동시 사용을 위한 출원 등에 관한 절차, 상표 등록 허가에 대한 상표심사관의 거절 결정 불복 업무를 다룸
- PTAB과 TTAB 모두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본안 합의체(Merits Panel)를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7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확대 합의체(Expanded Panel)를 구성하기도 함
 - 확대 합의체에는 심판원장(Chief Judge)과 부심판원장(Vice Chief Judge)이 포함됨

[그림 4-1]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출처: USPTO(2014). President's Budget Submission.

- PTAB과 TTAB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i)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대법원(Supreme Court) 또는 ii) 지방법원(District Court) → 연방순회항소법원 → 대법원을 거쳐 확정
 - 미국은 13개의 연방항소법원을 두고 있음. 전국을 11개소의 순회지구(Circuit)로 나누어 제1-11지구 항소법원이 있으며, 그 외에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항소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이 있음. CAFC는 특허(상표 제외), 관세 또는 정부 상대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을 전속 관할함¹¹⁾
- 특허심사(examination)에 관한 PTAB와 TTAB의 최종결정에 대한 불복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 때 신청자는 제145조(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제141조)¹²⁾
 - 다만, 재심사(reexamination)절차,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등에 대한 불복 신청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야 하며(제141조),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음
- 또 다른 방법으로 PTAB와 TTAB가 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이 직접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관한 권리구제를 선택할 수 있음(제145조)¹³⁾

11) http://www.leemock.co.kr/dataroom/data_paper_view.asp?rno_idx=57

12) <http://www.bitlaw.com/source/35usc/141.html>

13) <http://www.bitlaw.com/source/35usc/14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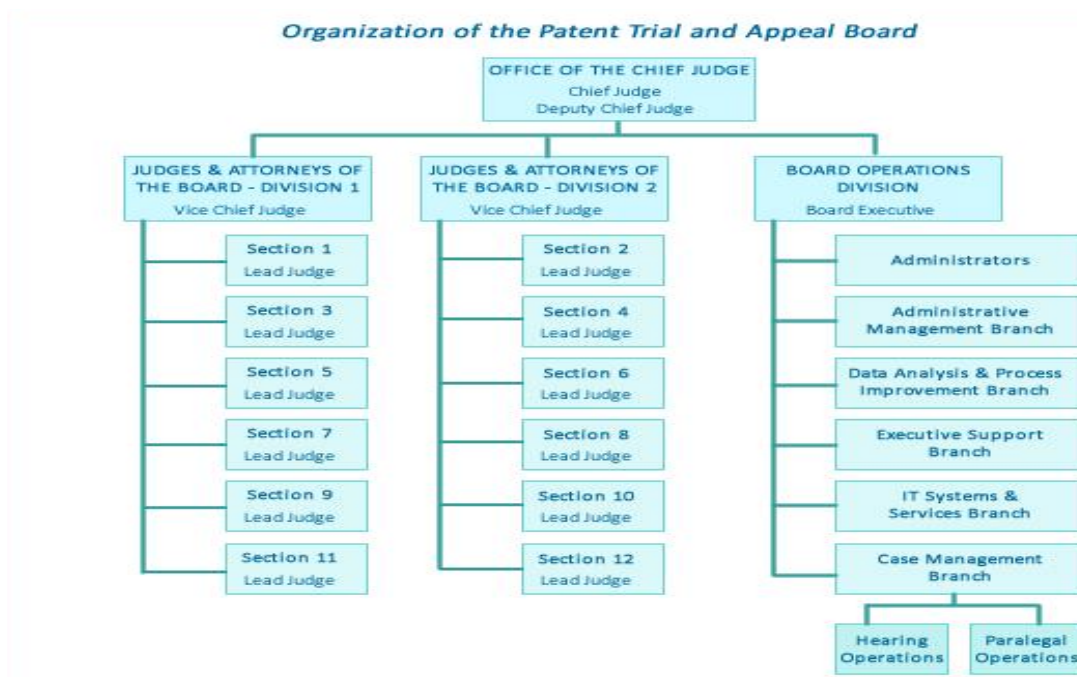
- 심결 후 특허청장이 정하는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버지니아의 동부지구 지방법원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원은 이전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관련된 청구항(신청인의 주장) 및 나타난 사실에 특정하여, 해당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따라 특허청장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교부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해당절차에 관한 비용은 모두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며, 불복시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¹⁴⁾

○ 특허행정판사 및 상표행정판사는 모두 행정법률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로서, AL1/AL2/AL3 3개의 보수(직급)체계로 구분

- PTAB/TTAB의 수장인 수석판사(Chief Judge)는 AL1 직급

○ 특허심판원(PTAB)의 경우 결정계 사건을 담당하는 항고심판부(Appeal Division)와 당사자계 사건을 담당하는 심리심판부(Trial Division)를 설치

[그림 4-2] PTAB 조직도



- 2개의 심판부(Division) 아래 12개의 기술부(Technology Section), 각 기술부는 다시 복수의 단위 체임버(Chamber)로 구성됨

14) 28 U.S.C. § 1295(https://en.wikipedia.org/wiki/Patent_Trial_and_Appeal_Board)

- * Chamber: 2명의 특허행정판사, 2명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및 1명의 보조원(Paralegal)으로 구성된 최하위 단위의 업무조직
- 약 224명의 특허행정판사(Administrative Patent Judge)가 특허변호사의 보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
 - * 판사 수: (' 13) 177명, (' 14) 211명, (' 15) 224명
- 심판 운영지원부서로서, 행정관, 행정관리실, 데이터 관리·처리실, 의전실, 정보화 시스템·서비스실, 사건 관리실 등으로 나누어 운영
- 상표심판원(TTAB)의 경우 상표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Appeal), 무효(Opposition), 취소(Cancellation) 심판 업무를 수행
 - 약 23명의 상표행정판사(Administrative Trademark Judge)가 3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건 담당
- 해당 당사자는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CAFC)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11년 특허심판원 설치 당시 일반 법원이 아닌 곳에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 최근에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가 있으며,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심판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고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음(*아래 <미국 연방대법원, Cuozzo v. Lee 판결에서 USPTO의 판단 지지> 참조)
-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문성 등 특허분야가 갖는 특수성과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무차별적인 소송을 줄이는 소송납발, 소송비용·기간 등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 특히, 최근 2012년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ion Act) 개정으로 분쟁기간 및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¹⁵⁾¹⁶⁾
- 첫째,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음. 이는 아래의 사유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특허출원일은 객관적이고 판단하기 용이한 반면 발명일은 대개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었을 때 확증이 요구됨
 - 선출원주의는 저축절차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없애고 발명자로 하여금 기록과 문서보

15) 디지털타임즈(2016.5.25.) “특허무효심판제도 분쟁기간 비용 줄인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2602100976731001

16) 특허청(2012).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조

존의 필요성을 제거함

- 많은 미국의 발명자와 회사가 (선출원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으로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에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두 종류의 출원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부담을 짐
- 둘째, 특허품질향상을 위해 특허심사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제3자 정보제공 제도, Post-Grant Review 및 Inter Partes Review 제도) 등을 통하여 특허의 하자를 치유하고자 함
 - 등록후 재심(PGR)과 당사자계 재심(IPR)로 구분된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신청 시기 및 무효사유를 달리 두고 신축적으로 운영
 - PGR은 특허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 전(원특허 등록일 또는 확장 재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모든 무효사유로 다룰 수 있음
 - 반면, IPR는 특허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 무효청구로서, 특허·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할 수 있음에 비하여 우리 무효심판은 모든 무효사유를 근거로 다룰 수 있음
 - 공통적으로 모든 증거를 특허심판원 심결시 제출케 하고, 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특허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해 판결을 내림
 - 연방항소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5%에 그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셋째,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를 위해 선사용 항변 인정, 소송당사자 병합요건 강화, 변호사 자문 규정 등이 법제화됨

미국 연방대법원, *Cuozzo v. Lee* 판결에서 USPTO의 판단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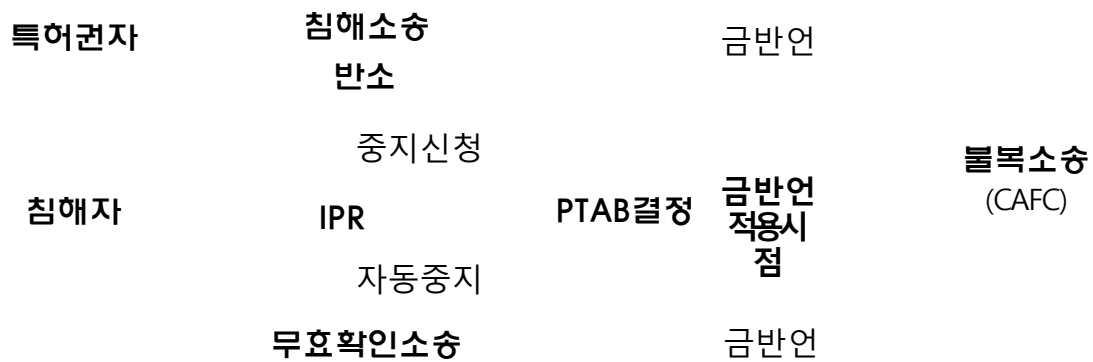
-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당사자제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으로서 IPR의 절차가 쟁점이 된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단을 지지함
 -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두 가지 쟁점, 즉 PTAB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적법성과 PTAB의 IPR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에 대하여 판단함
- (사건배경) 2012년 9월 16일, Garmin社는 Cuozzo社가 보유한 ‘속도 제한 표시기 및 방법’ 과 관련한 특허에 대하여 IPR을 청구함
 - PTAB은 동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으로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을 채택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Cuozzo社는 PTAB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월 4일, CAFC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PTAB의 결정을 지지함
 - Cuozzo社는 CAFC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였으나, 2015년 7월 8일, CAFC는 이를 기각하고 2015년 2월 4일 선고된 항소심을 확정함
 - 2015년 10월 6일, Cuozzo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2016년 1월 15일,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판결요지)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USPTO의 주장을 인용하고 항소심을 확정함
 -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 Cuozzo社는 PTAB의 무효심판 절차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PTAB은 연방법원과 같이 문언 및 통상적 의미(plain and ordinary meaning)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배척함
-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USPTO에게 IPR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USPTO는 IPR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USPTO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BRI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불복 가부) 미국 발명법(AIA)은 “IPR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불복할 수 없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입법 목적은 IPR 절차 개시의 권한을 USPTO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IPR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patentlyo.com, 2016.6.20. <http://patentlyo.com/patent/2016/06/supreme-affirms-office.html>

- 미국의 특허분쟁제도의 마지막 특징으로, 분쟁기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무효심판과 법원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심판원과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 즉 효율적이며 시민 친화적인 특허분쟁 해소를 위해 무효심판 또는 소송 중 하나만 진행하는 분쟁의 1회적 해결 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특허권 침해자가 무효심판을 먼저 신청한 경우 법원의 무효확인소송은 중지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즉 무효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는 무효심판의 신청이 불가함
-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식인 1회적 해결을 위해, 심판 초기에만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심판원 결정 후에는 새로운 증거로 다시 다툴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 [그림 4-3]에 나타나듯이 미국의 제도의 핵심은 금반언에 있음. 즉 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는 심판에 제출 가능했던 증거로 다시는 다룰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무효심판을 제기 시 무효확인소송은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분쟁의 반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즉 심판원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판원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파기율은 5%(12건 / 233건, 2014.9~2015.9 종결 건)에 불과함

[그림 4-3] 미국 특허분쟁제도 개요



- 이러한 경향에 바탕을 두고 최근 랜들 레이더 전 CAFC 법원장 역시 한국의 특허심판에 대하여 “무효증거는 무효심판 단계에서 전부 제출하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추가 증거 제출을 불허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랜들 레이더 전 CAFC 법원장 인터뷰, IP노믹스, 2016.8.1)

2. 유럽연합(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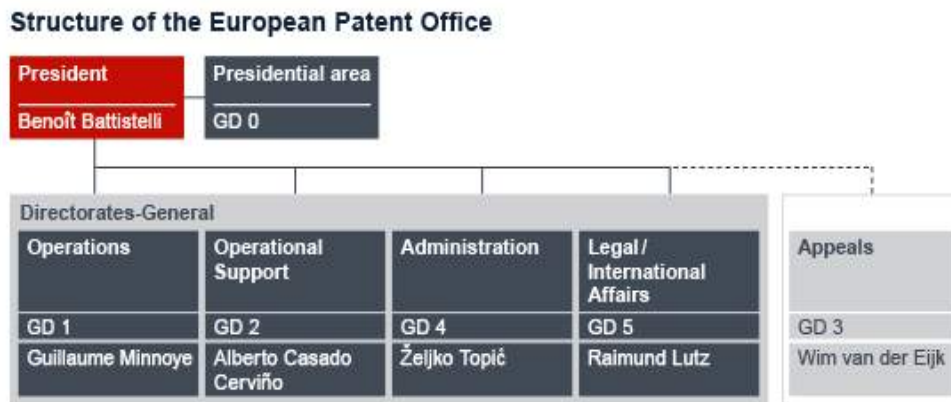
1) 특허심판원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1973년에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특허와 관련된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혁신, 경쟁력,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 내 지식재산권 규모와 해외 자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간 특허규범의 통합화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
- 유럽특허청(EPO)의 주된 역할은 유럽권 내 특허 부여로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특허 출원관련 조사 및 심사, 이의심사, 불복심판 진행, 정보제공 등임
 - 특허 출원관련 조사 및 심사
 - 꾸준히 증가하는 유럽의 특허 지원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지원분야 특허 관련 조사연구 및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함
 - 특히 유럽 내 특허출원을 할 경우, 빠른 조사와 심사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 이의심사
 - 유럽특허청은 부여된 유럽특허의 반대 입장에 대해 심사할 책임을 갖고 있음
 - 불복심판
 - 심판부는 수리부, 심사부 등 유럽특허청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
 - 정보제공
 - 출원 공시와 후속적인 간행물 발간은 유럽특허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 유럽발간서버(European Publication Server)는 일반 대중이 공식적인 복사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임
 - 유럽특허등록(European Patent Register)에서 특허 출원 등 지원한 건의 현재의 진행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
 - Espacenet이라는 인터넷 검색기능 제공으로 전 세계 9천만개 이상의 특허 관련 문건 등 DB를 대중들에게 공유함
- 유럽특허청(EPO) 조직은 [그림 4-4]와 같이 특허청장(President) 아래 운영부, 운영지원부, 행정부, 법/국제부 등 5개의 총국(DG : Directorate General)이 있으며, 이 중 DG3

에 별도의 기구인 심판원(Boards of Appeal)이 있음¹⁷⁾

- 유럽특허청 특허심판원(Board of Appeal)은 유럽특허청(EPO) 조직 내에 통합되어 있지만, 관련 의사결정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유럽특허협약은 유럽특허청(EPO)의 접수, 심사, 이의심사 등의 부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 등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원행정처분에 대한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심적인 성격으로 해당 심판부의 결정을 심사할 수 있음

[그림 4-4] 유럽특허청(EPO) 조직도



*출처: EPO 홈페이지(2016)

- 유럽특허청(EPO) 특허심판원 조직은 2016년 현재 심판원장(Vice-President & Head of GD3),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법률심판부(Legal Board of Appeal),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s of appeal), 규율심판부(Disciplinary Board of Appeal), 법률검토 및 행정지원부서(Legal Research & Administration)로 구성되어 있음
 - 기술심판부는 28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과 위원장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됨
 - 각 심판부는 1명의 심판장(Chairman) 및 5-8명의 법률심판관(Legal Member)과 기술심판관(Technical Member)으로 구성
 - 기술심판부와 법률심판부는 유럽 특허청의 접수 수리부(receiving section), 심사부 및 이의심사부(examining and opposition divisions)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항고심판을

17) 2013년 기준으로 유럽특허청 심판원 근무 인력은 229명이며, 심판장 및 심판관 166명, 기술자격심판관 110명, 법률자격심판관 27명으로 구성됨

제기한 경우) 조사를 담당함

2) 유럽특허청(EPO) 특허심판원의 업무배분체계(Business distribution scheme)

○ 유럽특허청(EPO) 특허심판원의 업무 배분체계는 다음과 같음(EPO, 2016)

① 최고회의(Presidium)

- 최고회의(Presidium)는 별도의 조직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며 심판원장을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최소 5명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함(위원장은 필참)
-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정 제 12조에 언급된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특허청 심판원 최고회의(Presidium)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위원장 1명(Wim van der Eijk)
 - 위원 : 12명(제 12조 1항), 16명(제 12조 4항에 따라 확장가능)
- 주된 기능은 심판원 운영에 관한 절차 규정 결정, 심판관 지정, 심판원 주요 이슈에 대한 위원장 자문역할을 함

② 확대심판부

- 확대심판부는 심판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리함
 - 기술심판부, 법률심판부, 규율심판부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해당 심결에 대한 재심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담당하고 있음
 - 이 때 확대심판부는 1심부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리하며, 새로운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 아님. 1심 절차의 연장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절차임
- 정형화된 신청방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특허심판원 또는 유럽 특허청장에 의해서 확대심판부에 부쳐질 수 있음
 - 심판부가 심리 중 확대심판부로 회부한 법률문제에 대한 심결
 - 특허청장이 확대심판부로 회부한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등

- 확대심판부의 운영체계(business distribution 2016)는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정 제13조 1항과 확대심판부 운영절차 규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음

제1장 일반규정

(1) 제 1조 : 확대심판부 구성

○ 인원구성

- 내부 위원 : 의장 1명(Wim van der Eijk), 법률전문가 11명, 기술전문가 18명
- 외부법률 전문가(유럽특허협약 시행규정 제11조 5항) : 국가별 22명

제2장 유럽특허협약 제112조에 따른 절차

(1) 제 2조 : 유럽특허협약 제112조에 따른 확대심판부 구성절차

○ 확대심판부의 결정은 2명 이상이 동일국적에 속하지 않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려짐

- 구성원(상임위원)은 위원장 1명, 법률전문가 4명, 기술전문가 2명이며, 필요시 대체 가능한 법률전문가(7명), 기술전문가(16명)이 있음

○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구성원인 4명의 법률전문가 구성원 중에 담당함

○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상임위원 간 회의를 통해 대체가능한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하거나, 외부 법률전문가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 상임위원이 확대심판부에 위탁된 다른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
- 유럽특허청장 위탁 사안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경우
- 기타 등의 사유로 참석이 용이치 않은 경우

○ 확대심판부에서 다루는 사안이 실질적인 특허성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갖는 법률적 문제와 관련 있을 경우, 위원장은 상임위원과의 회의를 거쳐 대체가능한 기술전문가 중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만약, 관련 사안의 범위가 유럽특허청 내부 행정체계를 벗어나 확장된 경우로서 확대심판부에 위탁이 되었다면, 위원장은 1-2명의 외부 법률전문가를 지정하여 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체할 수 있음(제1조 2항)

(2) 제 3조 : 법률 외부전문가의 지정

○ 법률 외부전문가들은 소송절차 관련 언어와 업무분야 언어가 일치될 경우를 가정하여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for the listing the Contracting States)에 의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명단화 함

○ 새롭게 지정된 법률 외부전문가 임명 이전에, 이미 명단 내 다른 전문가가 관여되어 있을 경우, 새로 지정된 전문가는 이전 단계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음(제1조 2항)

○ 외부법률전문가가 접촉이 되지 않을 경우, 명단 내 다음 차례의 법률전문자문가가 요청을 받음(제1조 2항)

○ 해당 사건의 소송 언어와 해당 외부법률전문가의 업무 언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 제2조 5항에 따라 이후에 제기된 사안 중 자신의 업무언어와 일치하는 대상 건의 심사요청을 받게 됨

(3) 제 4조 : 많은 위탁건들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확대심판부 구성

○ 확대심판부에 계류 중인 몇 개의 위탁 건들이 관련법들의 유사쟁점에 의해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판부를 동일한 구성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심판부는 가장 처음에 사건을 위탁받은 구성원이 심리함

제3장 유럽특허협약 제112조a에 따른 절차

(1) 제 5조 : 유럽특허협약 제112조a에 따른 절차진행시 확대심판부 구성

○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확대심판부에 의하여 결정이 진행됨. 상임위원은 위원장 1명, 법률전문가 11명, 기술전문가 18명 중에서 선정 가능함

(2) 제 6조 : 확대심판부의 구성이 3명일 경우

○ 출원 검토 청원을 받는 대로 위원장은 정회원 중 심판부 구성을 결정하고, 유럽특허협약 109(2)(a)에 의해 조사를 수행함

- 개별적인 사건들은 제 5조에 명단 리스트 순서에 따라 순차로 확대심판부 상임 전문가들에게 할당되어 짐. 위원장은 질병, 업무 부담량, 해당 사건의 언어영역, 기술 전문가 지정, 관련 기술전문지식 보유여부 등 이유에 의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 순서의 전문가는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구성 기준에 따라 지정됨
 - 만약 상임위원(정회원)들이 제 2조 5항에 의해 배제된 경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을 대체로 지정해야 함. 위원장 부재 시 5조에 따라 상임위원 법률전문 중에서 대행함
 - (3) 제 7조 : 확대심판부의 구성이 5명일 경우
 - 확대심판부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7조에 의거, 검토 청원이 유럽특허협약 109(2)(a)에 따른 확대심판부로 제출되면 위원장은 제6조 2항에 따라 정규 구성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6조 3항은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적용됨
 - 유럽특허청의 내부 행정체계를 벗어나는 절차법상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확대심판부에 위탁된 경우, 위원장은 3조에 따라 상임위원인 법률전문가를 대체하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누구에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제 1조 2항)
 - (4) 제 8조 : 많은 청원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의 확대심판부 구성
 - 확대심판부에 계류중인 몇 개의 청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심판부가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심판부의 구성은 가장 처음 접수한 청원을 담당할 심판부가 맡음
 - (5) 제 9조 : 심판부 구성의 변경
 - 위원장이 할당된 사건을 참여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 6조 및 제 7조에 따라 다른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음
 - 상임위원이 할당된 사건을 참여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원장은 제 6조 및 제 7조에 따라 다른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음
- 제4장 유럽특허협약 제23조 1항 전문(first sentence)에 따른 절차
- (1) 제 10조 : 유럽특허협약 제23조 1항 전문(first sentence)에 따른 절차진행시 확대심판부 구성
- 유럽특허협약 제 22조 2항 전문과 확대심판부 절차운영규정 제 2조 5항에 따라 구성된 확대심판부의 결정이 있을 때 구성원은 동일국적이면 안됨
 - 상임위원과 대체위원들은 제 2조 1항 (a)와 (b)호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들은 제 1조 2항에 따라 명단화 되어 있음
 - 위원장 대체 위원은 제 2조 1항 (a)에 따라 목록화 된 상임 법률전문가임
 - 제 1조 및 3조에 따라 상임 위원들은 제 2조 1항 (a)에 따른 위원명단 순서로 대체 위원장(the alternate for the Chairman)에 의해 임명될 수 있음. 상임 법률전문가들이 참여에 방해를 받는 경우, 대체위원장은 명단목록에 따라 다음의 법률전문가를 임명할 있음. 더 이상 상임위원들 임명이 어려운 경우, 제 2조 1항 (a)에 따라 대체 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대체위원 후보군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음(제 2조 1항 (b))
 - 외부 전문가들은 제 3조에 따라 임명됨
- 제5장 부칙
- (1) 제 11조 : 효력기간
- 업무 배분체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③ 법률심판부

- 법률심판부는 유럽특허청의 출원 등에 대한 방식을 심사하며 출원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혹은 심사부의 결정이라도 그 쟁점이 법률에 관한 문제일 경우 심리를 담당하는 심판부임

- 법률심판부의 운영체계(business distribution 2016)는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 제12조 4항과 특허심판원 운영절차 규정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음

제1조 법률 심판부 구성

- 인원구성 : 의장 1명(Claude Vallet), 법률전문가 26명(7명 공식)

제2조 특별항고를 위한 심판부 구성

- 항고가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은 구성원인 전문가들 중에서 심판부를 구성을 결정할 수 있음
- 심판부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특히 전문가들의 업무량이나, 필요한 언어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몇 개의 사안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특히, 유사법, 유사사례 연구 등), 위원장은 동일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심판부에서 모두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만약 구성원들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지정은 되었지만,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위원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동조 2항)

④ 기술심판부

- 기술심판부는 약 220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특허청의 심판사건을 대부분 처리함
- 기술심판부의 운영체계(business distribution 2016)는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 제12조 4항과 특허심판원 운영절차 규정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음
 - 28개 각 심판부는 1명의 심판장(Chairman) 및 5-8명의 법률심판관(Legal Member)과 기술심판관(Technical Member)으로 구성
 - 2명의 기술심판관과 1명의 법률심판관이 심판 합의체(3인)를 구성하고, 주요쟁점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기술심판관과 5명의 법률심판관이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7인)를 구성

제1조 기술심판부 사건 할당

- 불복사건은 국제특허분류체계(IPC)에 근거하여 기술심판부에 할당됨
 - 총 28개의 심판부 종류가 있음
 - 3.2.01~08(8개 심판부) : 기계분야
 - 3.3.01~10(10개 심판부) : 화학분야
 - 3.4.01~03(3개 심판부) : 물리분야
 - 3.5.01~07(7개 심판부) : 기계 심판부
 - 균등하지 않은 심판부 간의 부담량 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1항에 따른 배분 추가가 필요 경우, 특허심판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판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럽특허청 심판원 최고회의(Presidium)에서 결정할 수 있음
 - 불복사건의 전문분야로 인하여 심판부 할당을 조정해야 할 때 최고회의 결정이 용이치 않을 경우 심판원 위원장은 사건 할당을 위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함

제2조 기술 심판부 인원 할당

- 28개 심판부는 각각 위원장(경우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겸임),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8명으로 구성됨¹⁸⁾

제3조 특수한 불복사건을 다루기 위한 심판부 구성

- 항고가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은 구성원인 전문가들 중에서 심판부를 구성을 결정할 수 있음
- 심판부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특히 전문가들의 업무량이나, 필요한 언어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다른 심판부의 기술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음. 이 때 해당 심판부의 위원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다른 심판부의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음. 이 때 절차는 제5조 1항에 따름
- 특허심판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판원장에게 다른 심판부의 기술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경우 알려주어야 함

제4조 심판부 구성의 변경

- 제3조나 4조에 의해 지정된 구성원이 더 이상 사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업무량이나 필요한 언어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구성원을 대체할 다른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음
- 특정 기술전문가가 다른 심판부의 구성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은 유사 기술분야의 심판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음. 해당 심판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야 함
- 특정 법률전문가가 다른 심판부의 구성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은 제 5조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유럽특허청 심판원장에게 다른 심판부의 기술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경우 알려주어야 함

제5조 심판부 구성원이 아닌 법률전문가 지정

- 법률전문가의 지정은 제3조 4항, 제4조 3항에 따름
- 매 사안마다 법률전문가들은 최근의 지정이 가장 오래된 사람들부터 지정 요청을 함. 만약 외부 전문가 순위가 시기적으로 동일할 경우 알파벳 순으로 요청을 받게 됨
- 심판부의 적정한 기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법률전문가들을 지정할 수 있음

제6조 심판부 구성원 교체 지정

- 심판부 구성원이 제4조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심판원 책임을 맡고 있는 심판원장은 대체 가능한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음

제7조 많은 심판건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의 심판부 구성

- 기술심판부에 계류중인 몇 개의 청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심판부가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심판부의 구성은 가장 처음 접수한 청원을 담당할 심판부가 맡음

제8조 경과규정

- 2016년 1월 이전에 이루어진 통지 또는 확정된 구두변론은 해당 사업운영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제9조 효력기간

- 동 업무 배분체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18) 28개 심판부 구성명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6/etc/se1/p13.html> 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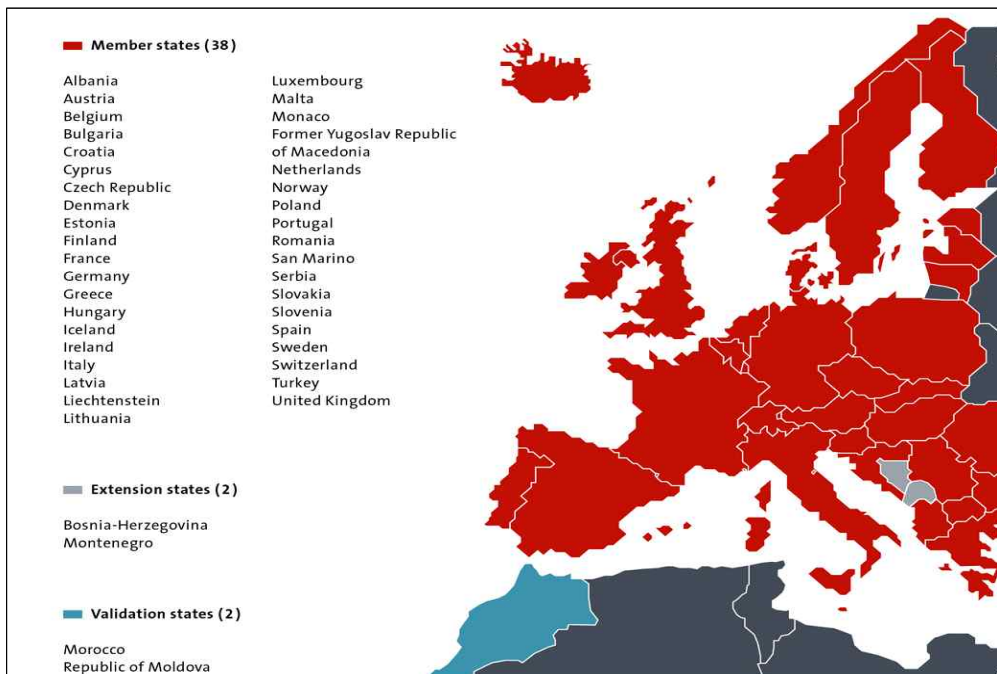
⑤ 규율심판부

- 규율심판부는 유럽특허청 직원 및 유럽특허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심판부임

- 가) 제 1조 : 규율심판부 구성원
- 위원장은 심판원장이 되며 전문가 대표 7명과 법률전문가 7명으로 구성됨
- 나) 제 2조 : 불복에 책임을 갖는 구성원과 조사위원 임명
- 불복사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심판부 구성원 중 해당 사건을 책임질 심판부를 구성함
 - 위원장은 전문가 대표 규율 규정 제10조 4항과 별개로 구성원들의 업무량이나 언어 등을 고려하여 심판부 구성을 결정함
 - 해당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심판부 구성시 고려했던 사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대체 구성원을 지정함
 - 조사위원은 확대심판부 절차에 관한 추가규정 제 5조 1항에 따라 지정됨
- 다) 제 3조 : 많은 심판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의 심판부 구성
- 심판부에 계류중인 수 개의 사건들이 법률이나 사실적 관점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동일한 구성 방식을 심판부 구성할 수 있음

- 현재 유럽특허청의 법률적 효력은 [그림 4-5]와 같이 총 42개국에 미치고 있으며, 세분하면, 정회원국(Member states) 38개국, 연장국(Extension states) 2개국, 유효국(Validation states) 2개국임

[그림 4-5] 유럽특허의 지역적 범위



*출처: EPO 홈페이지(2016)

- 연장국(2개국) : 1993년~2009년 간 유럽특허기구는 유럽 내 회원국들 간 협력과 EPC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의 유럽특허 제도 적용을 합의함. 8개 국가 중 6개 국가는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현재 BA(Bosnia and Herzegovina)와 ME (Montenegro) 등 2개국임
- 비준국(2개국) : 2010년부터 유럽특허기구는 유럽 특허 규범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일환으로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non-contracting states)에게 합의를 통해서 제도권 내 포섭 시킴. 현재 MA(Morocco), MD(Republic of Moldova) 등 2개국 실시 중임

○ 특허심판원(Board of Appeal)은 연간 약 2,500개의 신규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2,300여 개를 해결하고 있음(EPO, 2016)

3) 상표심판원(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 직속기관)¹⁹⁾

○ 2016년 3월 23일까지 유럽의 상표청으로 기능하던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은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EUIPO)으로 개명되어 활동하고 있음²⁰⁾

-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EUIPO)은 하나의 신청으로서 유럽 전역에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음

○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장(President) 직속기관으로 상표심판원(Boards of Appeal)이 [그림 4-6]과 같이 설치되어 있음

- 상표심판원은 4개의 상표심판부(CTM* Board of Appeal), 1개의 디자인심판부(RCD* Board of Appeal) 및 1개의 확장심판부(Grand Board of Appeal)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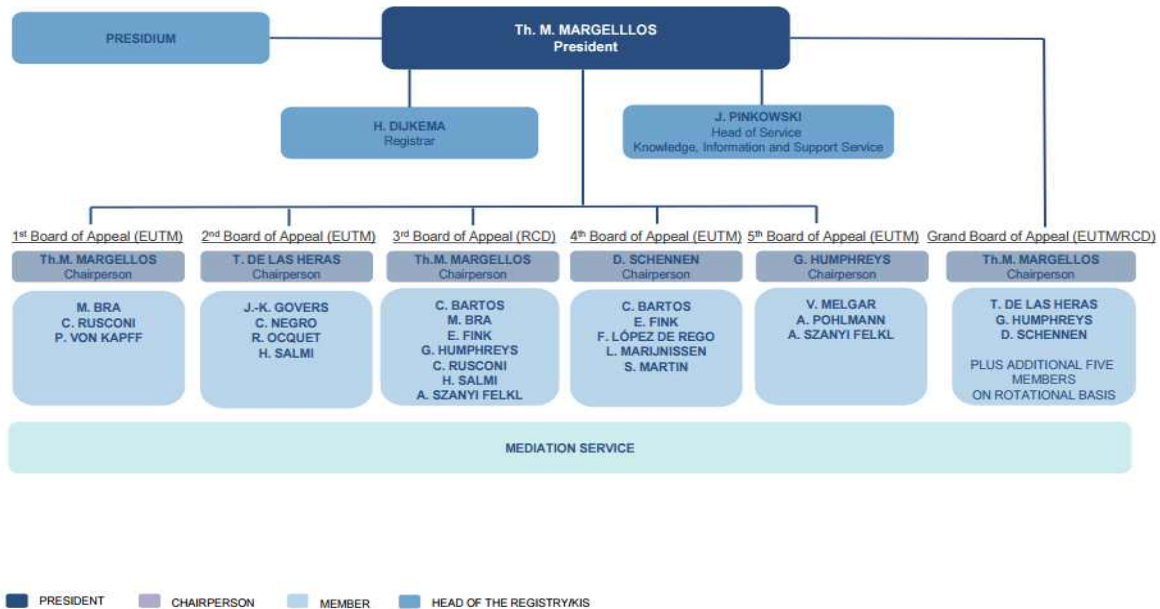
* CTM : Community Trade Mark, RCD :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1명의 심판장(Chairperson)과 2명의 심판관(Member)이 심판 합의체(3인)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원장(President)을 포함한 8명의 심판관이 확장심판부를 구성

19) 유럽상표심판원은 본 연구의 주된 범위인 IP5에는 벗어나지만 참고로 기술함. 유럽 상표청 직속기관인 상표심판원은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기관으로 특허분야 선진 5개국 회의인 IP5와 별개의 회의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간 미국특허청, 유럽상표청, 일본특허청을 정식멤버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던 선진 3개국 상표 회의 (Trilateral Trademark Meeting)에 2011년부터 한국도 정식멤버로 참여, G4 대열에 합류하였음(헤럴드pop, 2011.5.23.).

20)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boards-of-appeal> 참조

[그림 4-6]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EUIPO) 상표심판원 조직도(2016년 기준)



○ 심판관 신규 채용시, AD11 직급 또는 AD12 직급으로 채용함

- 유럽연합(EU) 관리직(Administrator)의 보수체계 : AD5-AD16

* OHIM 신규 심사관은 통상 AD5 직급 또는 AD6 직급으로 신규 채용되고, 심사관으로서 최고 직급은 AD11 직급

- 심판장 신규 채용 시, AD13 직급으로 채용함

4) 독일연방특허법원

○ 독일연방특허법원은 1961년 7월 1일부터 독일특허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독일특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바이에른주 뮌헨에 설치되어 있음

○ 독일연방특허법원은 IP5개국과 달리 특허청 내 심판원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독일법원조직법 제14조의 특수법원으로서 고등법원급의 사법기관임

○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독일특허청의 출원과와 특허심사과의 심결에 대한 항고 및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를 관장함

○ 판결주체로서 재판부의 구성은 독일특허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항고재판부, 무효재판부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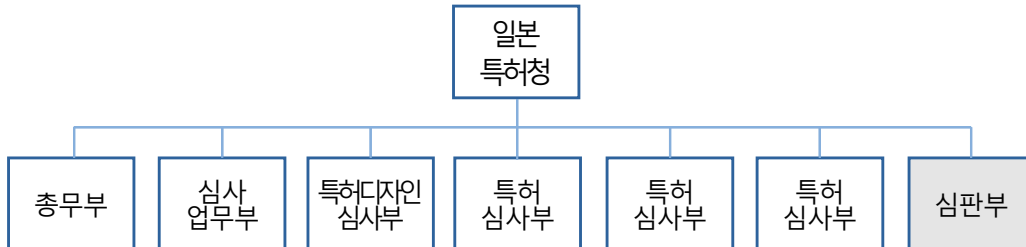
- 항고재판부는 특허사건, 실용신안사건(독일실용신안법 제18조), 품종보호사건(품종보호법 제34조), 상표사건(상표법 제13조), 의장사건(의장법 제10조a), 반도체설계회로보호사건(반도체보호법 제4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18조) 등을 관할함
 - 무효재판부는 무효선언사건, 특허취소, 강제실시에 관한 소에 대한 결정(제84조)과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담당함
- 특허법원은 법원장, 부장판사 및 법률판사와 기술판사로 구성됨. 법원장과 부법원장(제68조 제3호)도 재판부의 부장판사임
- 독일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독일특허법원은 독일특허청의 출원과(Pr fungstelle)의 결정 및 심사과(Patentabteilung)의 결정, 특허무효의 소(Erkl rung der Nichtigkeit), 특허취소의 소(Zr cknahme von Patenten) 그리고 강제실시수여(Erteilung von Zwangslizenzen)에 대한 사건처리를 함
- 항고소송
- 특허청의 출원과 또는 특허심사과의 결정에 대한 법률구제수단적 성격을 가짐
 - 행정부의 결정에 침해받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를 통한 사법통제 제도임
 - 특허법원에서의 항고절차는 특허청의 결정을 항고를 통하여 특허법원에서 사후심사를 받는 것임
 - 따라서 항고소송은 항고를 통하여 특허청의 결정의 변경을 사법적으로 거행하는 것으로써 1심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라기보다 2심으로 볼 수 있음
 -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항고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음
- 무효소송
- 무효소송은 특허의 무효선언, 강제실시허락, 특허의 취소 등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것임
 -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통하여 종결되는 형태로서 일심으로서의 성격임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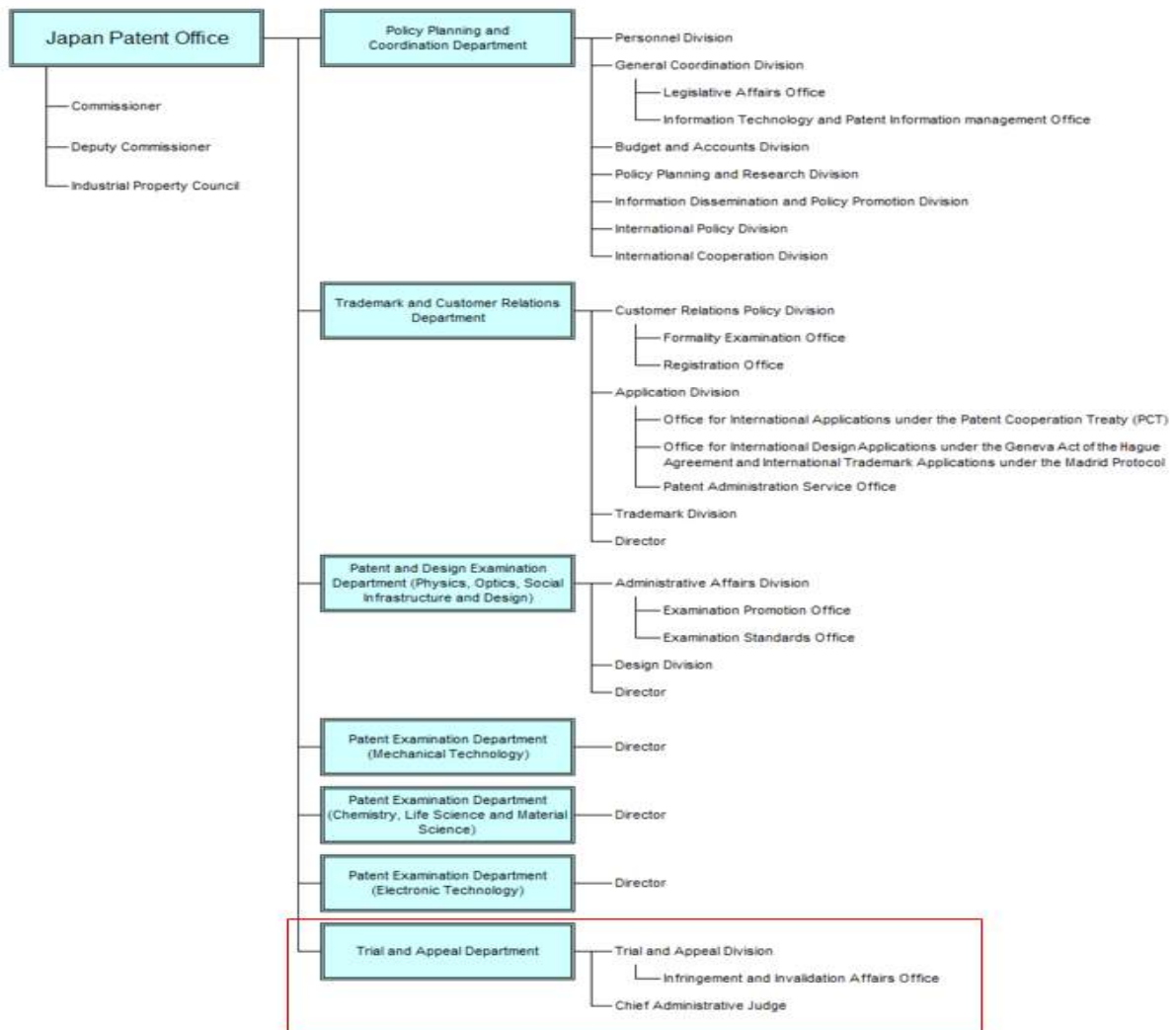
- 일본의 특허심판은 특허청장 소속 7개 부서 중 하나인 심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업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상표과와 디자인과 그리고 특허심사 제1부와 제4부를 포함하여 심사부로 총칭함
- 심판부는 3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으로 심판과와 송무실이 설치
 - 심판관 정원은 387명으로 약 80%가 특실분야 심판관임

- 일본 특허청 소속 7개 부서는 [그림 4-7]과 같이 총무부, 심사업무부, 특허심사제1부, 특허심사제2부, 특허심사제3부, 특허심사제4부, 그리고 심판부로 구성됨

[그림 4-7] 일본 특허청 조직도(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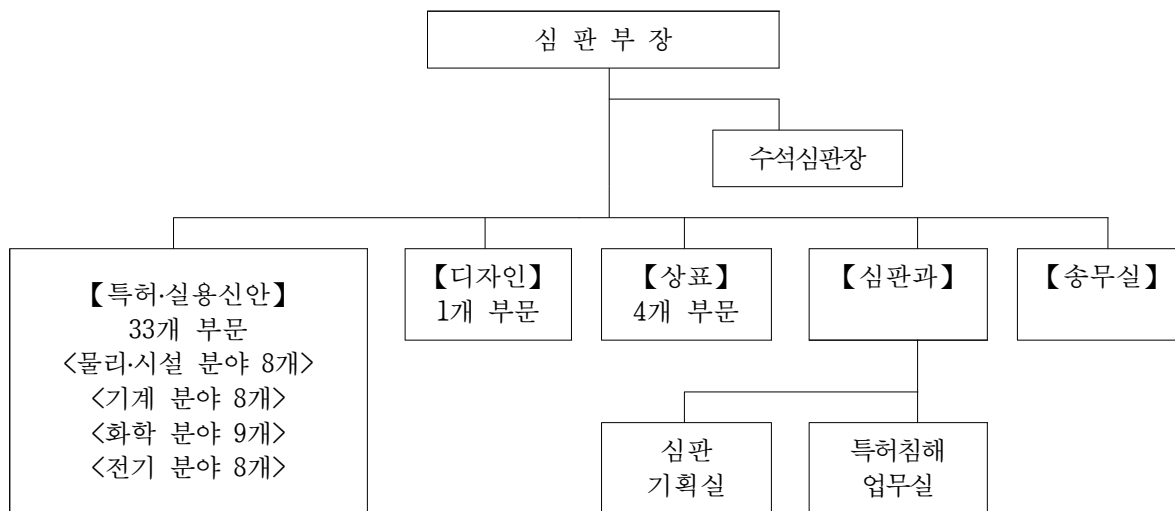


[그림 4-8] 일본 특허청 조직도(영문)



*출처: 일본특허청(www.jpo.go.jp)

[그림 4-9] 일본 특허청 심판부 조직



○ 일본의 경우, 심판원에 심판부를 지원하는 심판과 외에 심판기획실 및 특허침해업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인원: 심판과(38명), 특허침해업무실(14명), 심판기획실(10명)

[표 4-1] 일본 특허청 심판부 인원

부 서		인원(명)
심판부장		1
수석심판장		1
송무실		자료 없음
심판과	심판과	38 (심판과 내 겸직자 7명 포함)
	심판기획실	1
	특허침해업무실	11
	심판과 · 심판기획실 겸직	9
	심판과 · 특허침해업무실 겸직	2
	심판과 · 심판기획실 · 특허침해업무실 겸직	1
	총계	62
심판관	특허·실용신안 분야	336
	상표 분야	42
	의장 분야	9
	총계	387
총계		451

*출처: JPO Annual Report(2013: 165) 참고(심판관 전체 인원수만 제공)

○ 일본 특허청 심판부의 직위체계는 [표 4-2]와 같음

[표 4-2] 일본 특허청 심판부의 직위 및 한국 심판원의 대응직위

일본 직급 (한국의 상당 직급)	일본 심판부 직위	한국 심판원 대응 직위	한국 직급
지정직 (고위공무원단 상당)	심판부장 심판부의 수장	심판원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전문행정직 7~8급 (3.4급 상당)	심판부부장 해당 부문의 심판장 중에서 선임	수석심판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전문행정직 6급 (4급 상당)	심판장 주심으로서 심판 실체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장급(과장 또는 실장)	심판장	
전문행정직 3-5급 (5~4.5급 상당)	심판관 심판 실체업무를 수행	심판관	4.5~4급

-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직급체계 비교 : 일본 특허청은 경제산업성의 외국(外局)으로서 그 수장이 경제산업성의 국장(차관 아래)급에 해당하므로, 직급명칭에 있어 한국의 상당 직급보다 한 단계씩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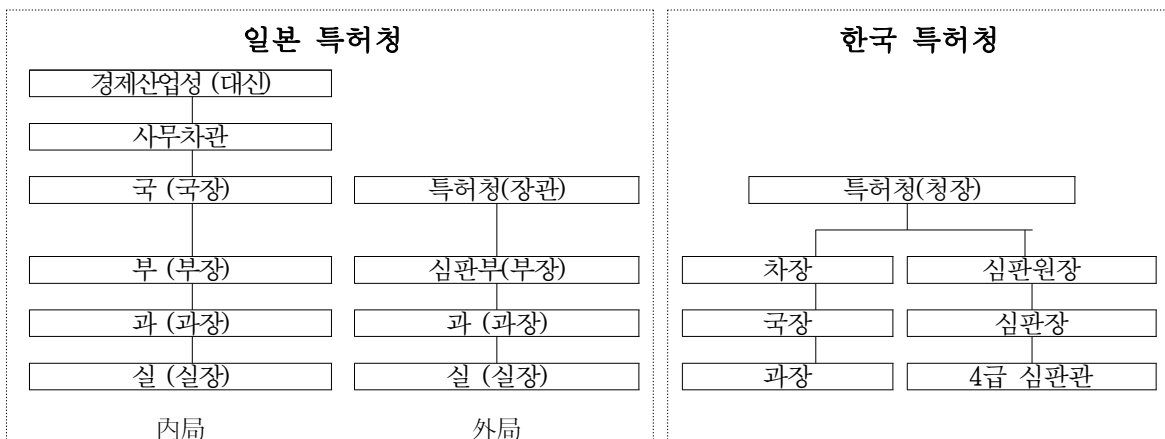
*(예시) 일본의 전문행정직 3-5급 ⇔ 한국의 실질적 4.5~4급 상당,

일본의 전문행정직 6급 ⇔ 한국의 실질적 고위공무원단(나급) 상당

- 기본적으로 심판관은 과장급이상으로 구성됨, 단 10~15년차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2년 이내의 심판부 근무를 통해 ‘심판관 연수’ 를 실시

* ‘심판관 연수’ : 일본 특허청의 『인재육성프로그램』에 따른 순환 보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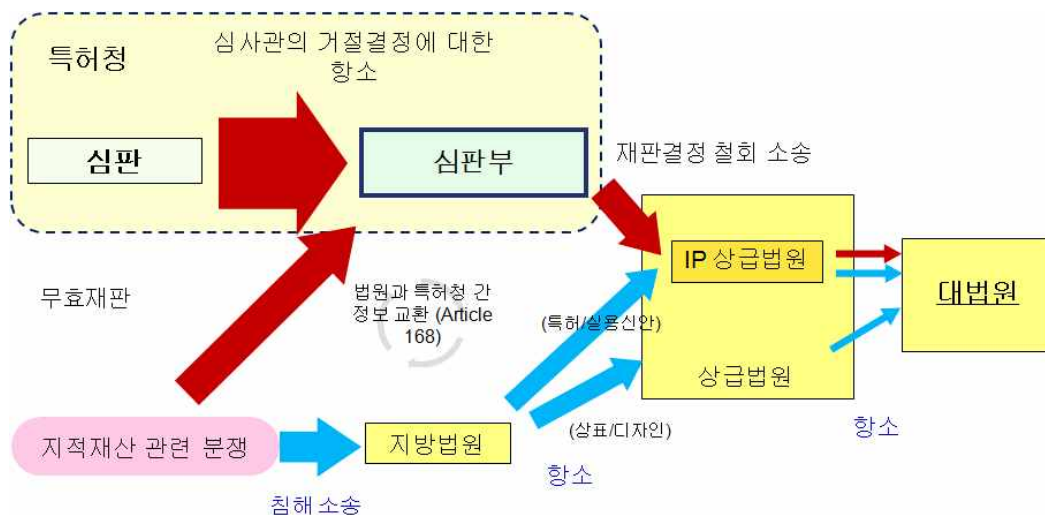
[그림 4-10]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직급체계 비교



○ 일본의 특허심판은 특허심사에 대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역할로 구분됨

- 심사의 상급심으로서 거절의 타당성 판단(거절결정불복심판)과 권리의 신뢰성 향상(이의신청)이 주된 기능이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역할에 특허의 유효성 판단(무효심판)과 권리범위에 대한 공적 검정(판정)이 있음
- 특허청 심판부는 특허청 심사부에 의한 심사의 상급심이며, 심판부에 의한 심결에 대해 지적재산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일본 특허법 제168조는 심판부로 하여금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침해소송이 제기된 법원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허출원 심사청구 및 결과에 따라 특허청 내 심판부는 상급심 역할을 함.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송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나 특허이의신청(특허게재공보발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의 권리자 및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무효심판 청구 등을 담당함
- 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특허법원(고등법원)에 해당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하거나 이후 최고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음
- 일본 역시 다른 해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원 이후 법원단계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출을 제한하고 있음(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
- 일반 소송은 새로운 증거제출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사건은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다만 심판에 제출된 자료의 입증, 주지기술 등 보완적 증거는 제출 가능함

[그림 4-11] 일본의 특허관련 소송/항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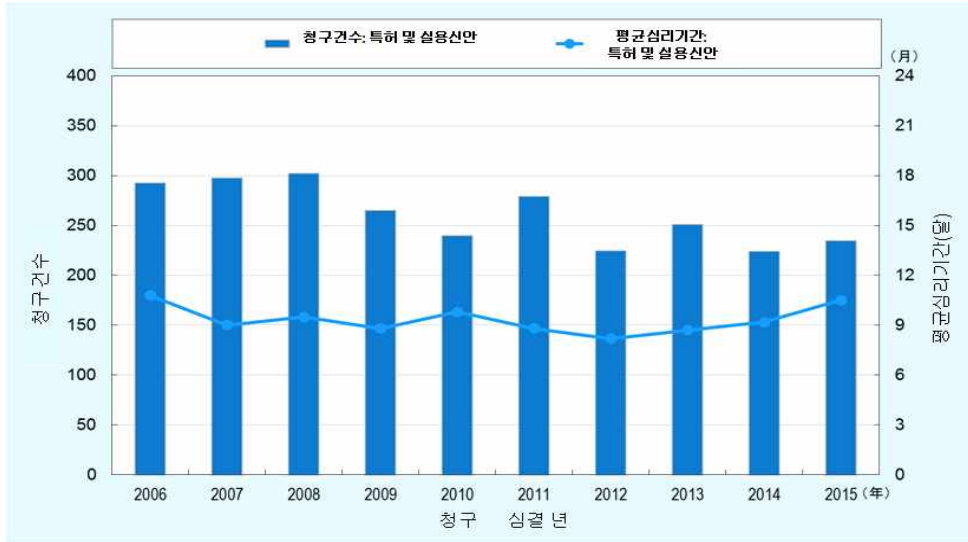


- 특허설정등록이후 무효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심판부는 청구서 부분을 특허권자(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답변을 요청함. 특허권자의 정정 청구 및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다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게 되고, 합의부에서는 구술심리를 통해 무효 또는 유지심결을 하게 됨. 그 결과에 따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됨
- 특허무효심판제도(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System)와 특허이의신청제도(Patent Opposition System)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제도 목적의 경우, 전자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의 조기 안정화를 조성하는데 있음
 - 둘째, 진행절차는 전자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공방(Inter Partes)으로 진행이 되나, 후자는 결정계(ex parte)의 방식임
 - 셋째, 청구인 자격으로는 전자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지만, 후자는 누구든지(익명청구는 불가) 가능함
 - 넷째, 신청(청구) 기간은 전자의 경우 설정등록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후자는 특허게재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권리 소멸이후에는 불가함
 - 다섯째, 청구사유는 양자 모두 신규성, 진보성, 신규사항 위반, 기재요건 위반 등(공의적 사유)은 공통적이거나, 전자는 권리귀속에 관한 경우, 특허부여 이후의 후발적 사유에 의해 청구가 가능함
 - 여섯째, 양자 모두 정정청구가 가능하며, 심리방법의 경우 전자는 구술심리, 후자는 서면심리에 의존함
 - 일곱째, 항소의 경우 전자는 상대방을 피고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항소가능하며, 후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가능함(취소결정의 경우 항소가능하고, 유지결정의 경우 항소 불가능함)
 - 여덟째, 법적효과의 경우 전자는 무효심결의 경우 특허권 등의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능하며, 유지심결의 경우 누구도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근거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됨. 후자는 취소결정의 경우 특허권 등의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됨
 - 아홉째, 소송단위는 전자의 경우 청구항별로 가능하며, 답변서 제출 후의 취하는 상대

방의 승인이 필요함

- 2006~2015년 간 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년 간 약 200~300건 정도이며, 2015년의 경우 평균 심리기간은 10.5개월이었음

[그림 4-12] 일본의 청구 및 심리기간



- 일본의 경우 2009년 이래 무효심결(심판철회)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음

[그림 4-13] 일본의 공판심리 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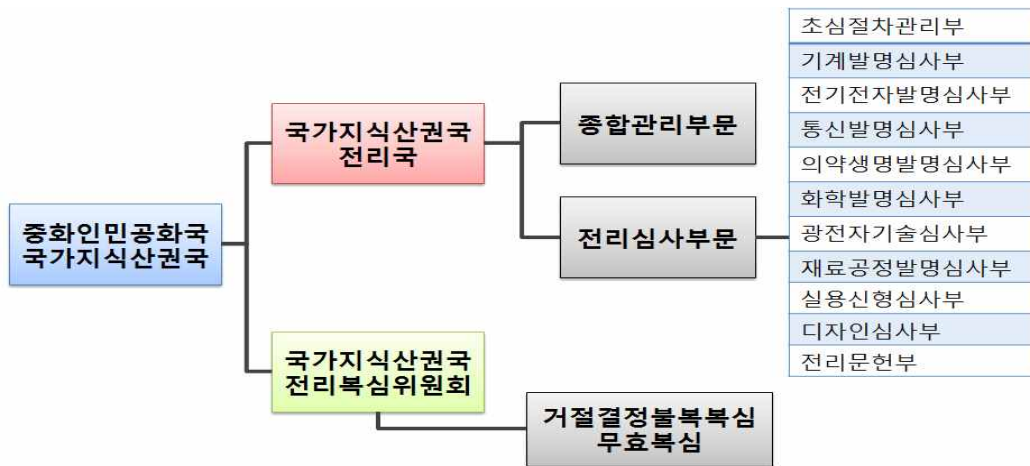


4. 중국

1) 전리복심위원회

-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중국 특허청) 소속 전리복심위원회(PRB)가 거절결정 불복복심 무효복심(결정계 심판)에 대한 심리를 담당함(김범태, 2014)
 -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중국 전리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복심위원회를 둔다. 전리출원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뒤 전리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전리출원인이 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함(해외출원온라인 포털, <http://www.nweip.biz>)
- 전리복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지식산권국장(특허청장)이 겸임함
- 발명전리권은 우리나라의 특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질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은 각각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에 해당하며 무심사주의를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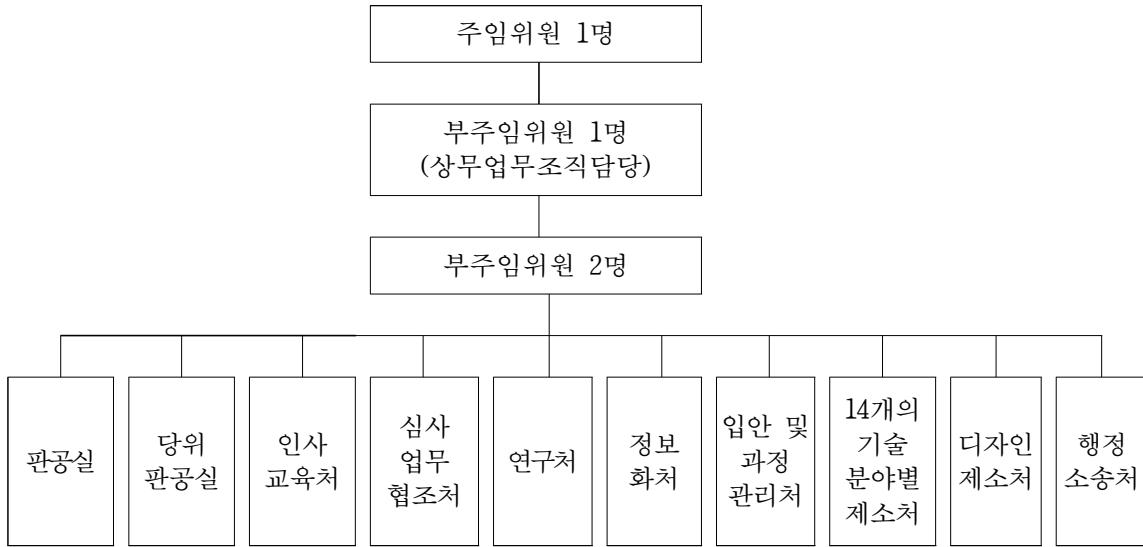
[그림 4-14] 국가지식산권국의 조직 구성



*출처: 중국 특허청(www.sipo.gov.cn)

- 전리복심위원회는 제1제소처(기계), 제2제소처(전학), 제3제소처(통신), 제4제소처(의학 및 생물), 제5제소처(화학), 제6제소처(광전), 제7제소처(재료), 제8제소처(디자인), 행정소송처, 연구처 등 13개 처실로 구분됨

[그림 4-15] 전리복심위원회 조직 구성



- 전리복심위원회의 심판관은 특허, 실용신안 217명, 디자인 21명, 총2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판을 보조하는 보조인력(44명)을 운영함
-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전리복심위원회가 되는 특성상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행정소송처의 별도 인력이 29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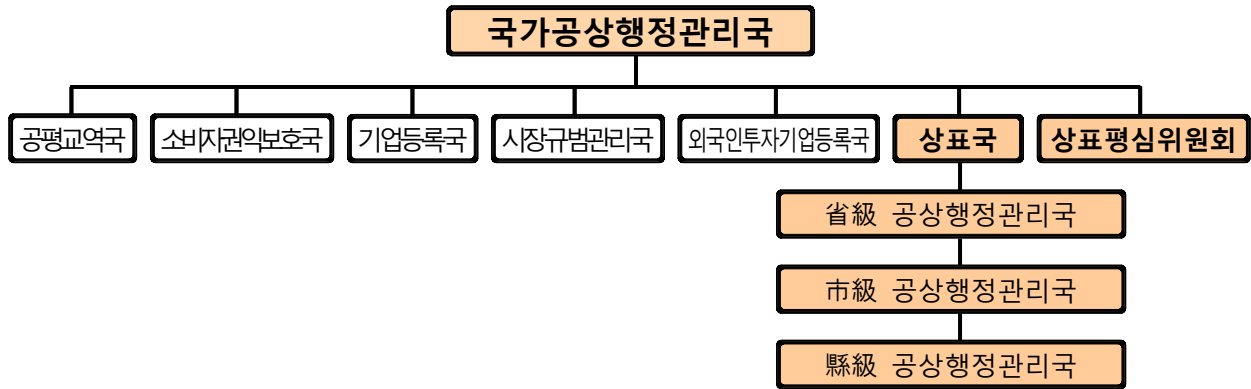
[표 4-3] 전리복심위원회 조직별 인원

전리복심위원회(2013년 기준)			
심판관(명)		보조인력(명)	
특허, 실용신안	217	심판보조	44
디자인	21	행정소송처 (심결취소소송 대응)	29
총 심판관	238		

2) 상표평심위원회

- 국가공상행정관리국내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표국의 결정에 대한 불복, 무효 청구 등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함
- (주임위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임명, 상표평심위원회의 일상업무 주관, 위원의 회피 등을 관리함
- (평심위원) 상표법률을 숙지한 자로서 상표심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타 법률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됨(처장급, 과장급 상당)

[그림 4-1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조직내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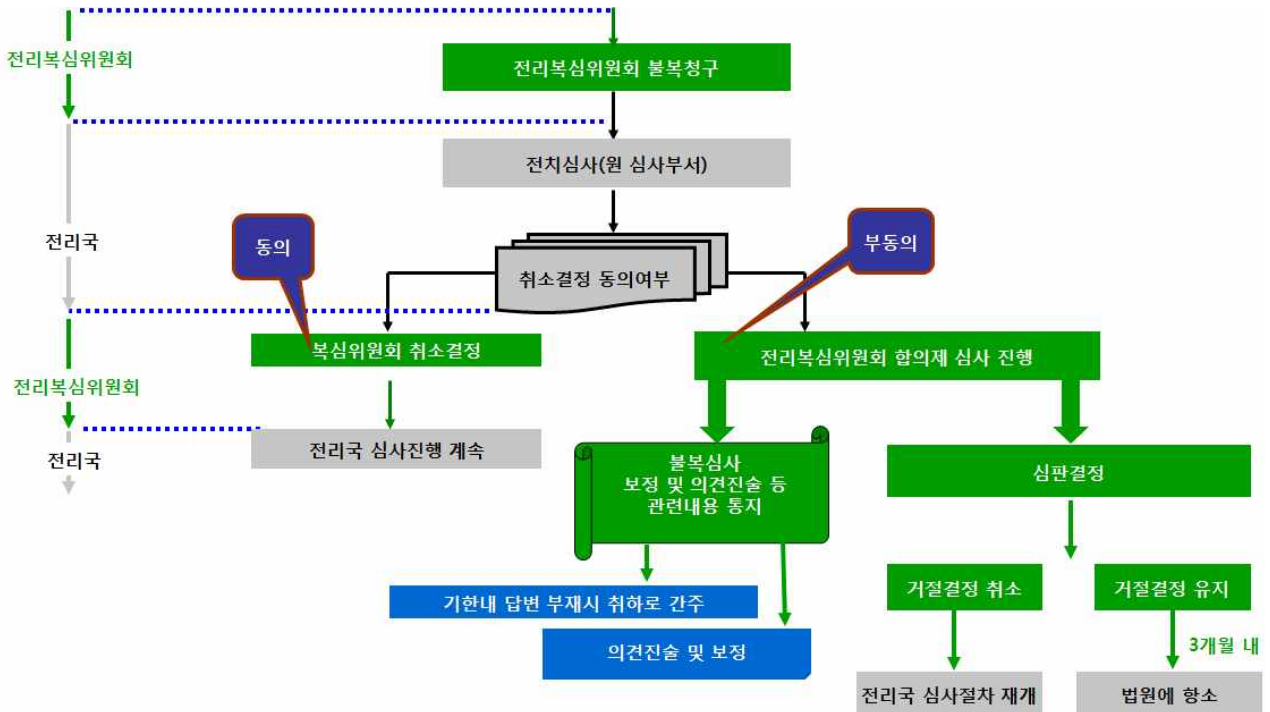
3) 중국 복심제도 운영 현황

① 거절결정 불복복심 현황

- 복심청구는 특허출원에 대한 전리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으로 거절된 출원의 출원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이 복심을 청구하면, 복심위원회는 우선 거절결정을 내린 원 심사부서에 사건을 이송하여 전치심사를 진행하게 됨. 원 심사부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개월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임
 - 복심청구가 성립하며 거절결정을 취소하는데 동의하는 의견
 - 복심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가 출원 중에 존재하는 흠결을 극복했고, 보정서류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취소하는데 동의하는 의견
 - 복심청구인이 진술한 의견과 보정서류가 거절결정을 취소하는데 충분치 않으므로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의견
- 원 심사부서가 거절결정을 취소하는데 동의할 경우 복심위원회는 합의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전치심사의견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내기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원심사부서에서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함
- 전치심사에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복심위원회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사를 개시하며 해당 불복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음
 - 복심청구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결정
 - 복심청구가 성립하므로 거절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
 - 복심청구인의 보정에 따라 거절결정의 흠결을 극복하여 보정서류의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 복심청구 심사결정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원 심사부서는 복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동일한 이유 및 증거로 복심결정과 상반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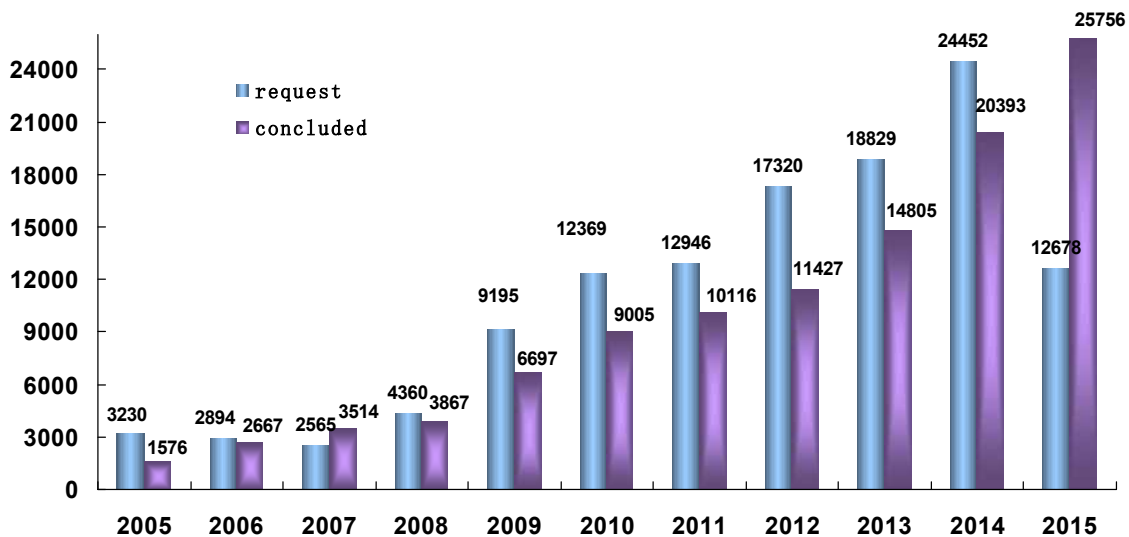
[그림 4-17] 중국 거절결정 불복복심 절차 흐름도



○ 불복복심은 지난 10년 간 청구건수가 상승하고 있었으나, 최근 2015년에 와서 줄어들고 있음. 불복복심 청구에 대한 결정 건수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8] 중국의 불복복심 청구/결정 건수(2005~2015)

Reexamination request and concluded (2005-2015)



- 불복복심 심리기간은 [표 4-4]와 같이 지난 5년 간 평균 1년이 약간 넘는 기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12.64개월), 위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증가추세에서 2015년부터 기간이 약간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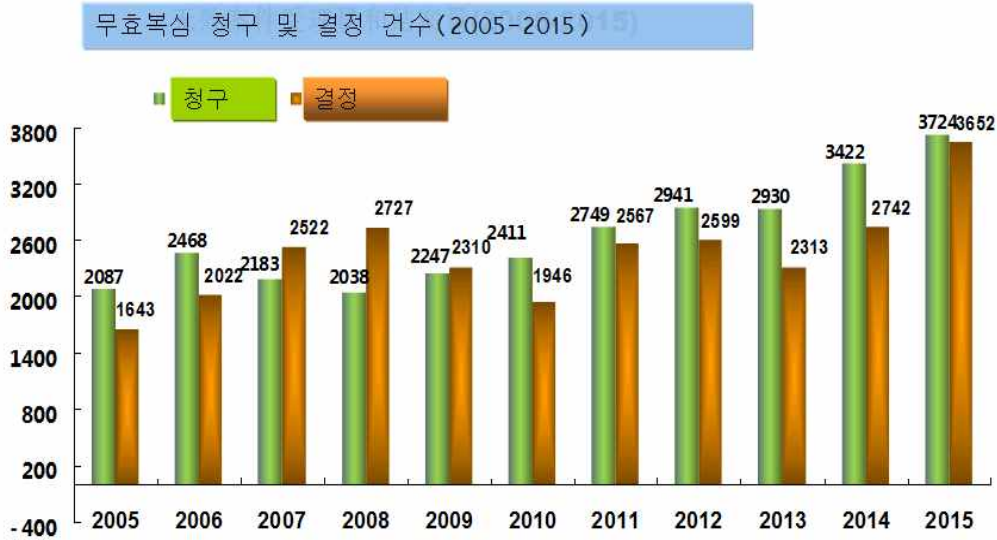
[표 4-4] 중국의 불복복심 심리기간 추이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심리기간(개월)	10.1	12.5	13.7	14.6	12.3

② 무효복심 현황

- 특허행정기관에서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당해 특허권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위원회에 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45조). 청구는 누구도 가능하며 기간의 제한이 없음
 -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이 없거나, 기존의 의장과 유사 또는 동일한 디자인이면 안 됨 (법 제22조)
- 위원회에서는 특허권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복심결정을 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에 대한 선고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 절차의 상대방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 무효 선고된 특허권인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무효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지 않지만(no retroactive effect),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함(제47조)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청구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복심위원회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있어 법원에 새로운 증거제출은 제한을 두고 있음 (행정소송증거 관련 규정 제59조)
- 그러나 특허권자가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거나 반증을 제시할 경우, 즉 증거의 합법성 또는 무효된 특허의 유효를 입증할 자료 등은 제출가능함. 결정유형은 무효, 일부무효, 유효임
- 지난 10년간의 무효복심 청구건수와 결정건수는 [그림 4-19]과 같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19] 무효복심 청구/결정 건수(2005~2015)



- 무효복심 심리기간은 [표 4-5]와 같이 지난 5년 간 평균 약 6.7개월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은 연도별로 보았을 때 최근(2015년)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중국의 무효복심 심리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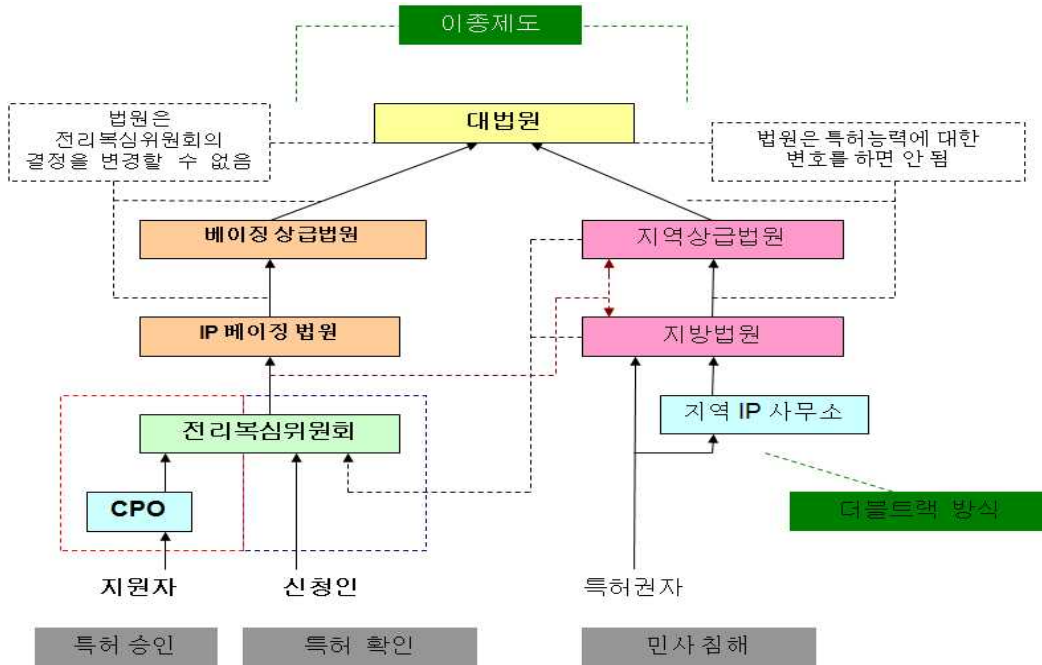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심리기간(개월)	7.5	6.6	6.9	7.2	5.4

③ 특허 소송

- 중국에서 특허소송이란 전리복심위원회의 거절결정불복복심이나 무효복심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중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1심은 베이징 특허법원에서, 2심은 베이징 상급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재심의 순서로 특허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허 승인을 지원하거나, 특허 확인 등이 필요한 신청인들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불복시 전리복심위원회의 불복절차를 거쳐 비로소 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전치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일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복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소송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복심위원회 결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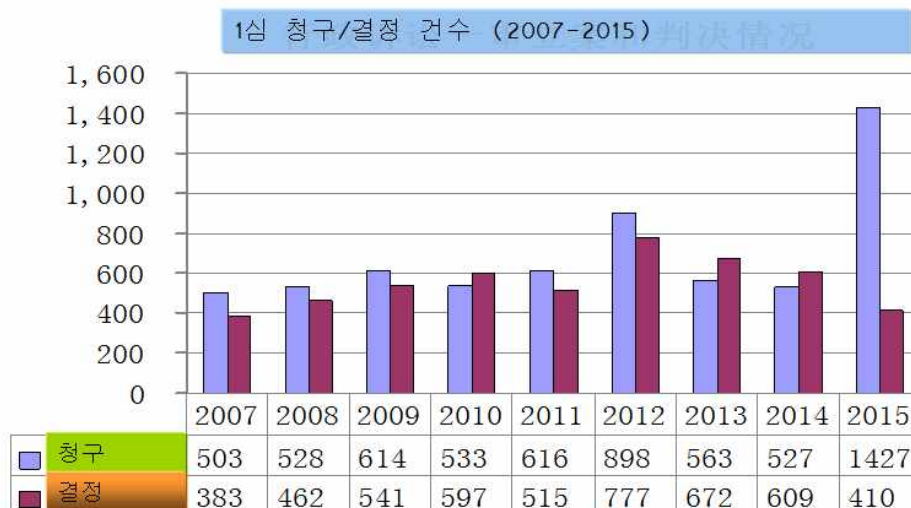
후 소송 중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이후에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짐

[그림 4-20] 중국 특허소송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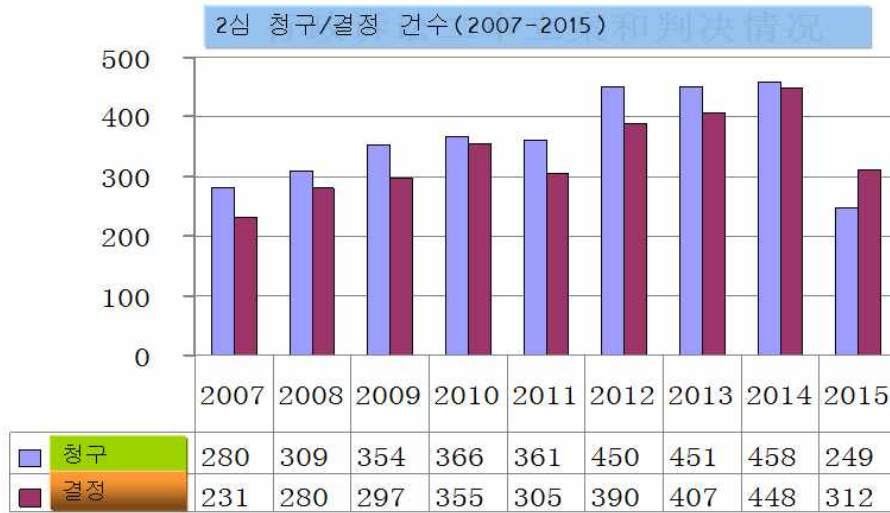
○ [그림 4-21]에 나타나듯이 2007~2015년 특허소송 1심의 청구 및 결정 건수를 보면 2015년에 들어와 청구건수가 예년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결정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21] 중국의 특허소송 1심 청구/결정 건수(2007~2015)



- 2007~2015년 특허소송 2심의 청구 및 결정 건수를 보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들어와 청구건수 및 결정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년도에 결정건수는 청구건수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22] 중국의 특허소송 2심 청구/결정 건수(2007~2015)



제 3 절 주요국 심판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분석

- 주요국 심판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법·제도적 맥락과 특성, 특허법 및 특허소송 절차, 심판관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규정 유무와 구체성을 검토함. 해외 사례의 법제도 현황 분석에서 초점을 두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 주요국의 특허심판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일반적인 법체계를 포함한 각국의 특허법 제도의 특성과 절차는 무엇인가?
 - 둘째, 특허 심판원의 공정한 심판과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심판관 충원 및 운영에 대한 법·규정이 구체화되어 있는가?
- 이 연구는 주요국 심판관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제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주요국의 일반적인 특허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 미국의 특허제도는 미국특허법, 미국특허법 시행규칙, 미국상표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선발명주의²¹⁾, 심사주의, 저촉심사(interference), 식물특허, 일부계속출원을 채택하고 있고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불완전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정보통신진흥연구원, 2008)
 - 특허출원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과 정규출원(regular appl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규출원에는 국제 PCT 출원이 포함됨
 - 심사는 청구항마다 거절되며 2회 거절 후 최종 거절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O Board of Appeal)→연방지방법원→항소법원(CAFC)→연방대법원 순으로 진행됨
- 당사자간 분쟁(IPR)은 청구→특허권자 사전답변→개시여부 결정→특허권자 답변 및 청구범위 보정→특허권자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및 보정에 대한 반대→보정에 대

21) AIA 개정법에 따라 2013. 3. 16.부터 선출원주의 적용

한 반대에 대한 특허권자의 반박→구술심리→심결 순으로 이루어지며 개시여부 결정 이후 1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미국은 당사자간 분쟁 및 불복심판에 대해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자간 화해의 확대 및 심판기간의 법 규정화, 계속심사 청구, 결정계 재심사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복심판은 심판청구서 제출→심판청구 이유서 제출→심사관 답변서→청구이유 제출료→심결→심판절차 완료의 순으로 이루어짐

○ 불복 심판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의해 심판되며 그 설립과 구성은 다음과 같음(35 U.S.C. 6)

-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장(Director), 부청장(Deputy Director), 특허국장(Commissioner for Patents), 상표국장(Commissioner for Trademarks), 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s) 등으로 구성됨

- 이 중에서 심판관은 법률 지식과 과학적 역량이 뛰어나야 하고, 이들은 청장의 조언에 따라 장관에 의해 임명됨

○ 특허심판원은 당사자 간 분쟁과 특허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며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음²²⁾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신청자의 서면불복에 대해 제 134조 (a)에 근거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특허 심사관의 결정(adverse decisions of examiners)을 검토함

-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제134조 (b)에 따라 재심사 불복(appeals of reexaminations)에 대한 검토

- 제135조에 따라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s) 수행

- 제31장 및 제32장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s)와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s)을 수행함

○ 파생절차, 등록 후 재심절차, 당사자 간 무효심판 등 각각의 불복절차는 최고 책임자(director)에 의해서 설계된 최소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심리되어야 하며,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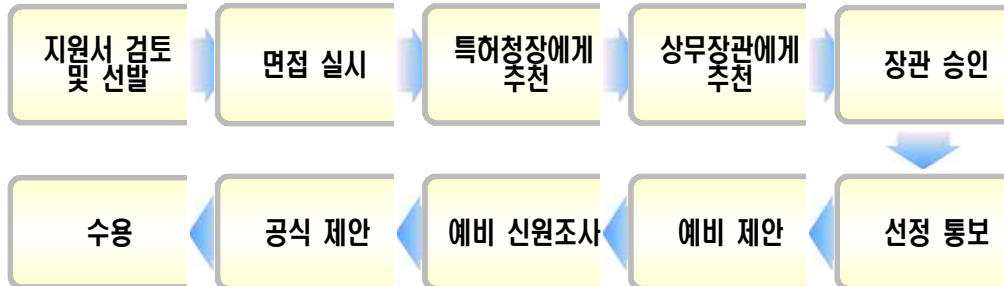
22) <http://www.bitlaw.com/source/35usc/6.html>

직 특허심판원만이 재심리를 승인할 수 있음

- 우선임명권의 조치(Treatment of Prior Appointments): PTAB의 PAJ 행정판사 임명은 상무장관(The Secretary of Commerce)이나 PTAB 이전에 특허청장에 의해 이미 임명된 심판관은 PAJ로 볼 수 있다는 경과 규정임
- 특허심판원의 구성원 및 심판관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2014년에 게재된 공개채용 공고 내용 요약)
 - 특허법계에서 오랜 기간(10~15년) 현장경험이 있어야 함(검찰, 소송 또는 양쪽 모두)
 -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쪽의 근무경험 및 정도
 - 전기공학,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세싱 등의 분야에서 특허 문제를 다뤘던 경험이 있는 자를 선호함. 다양한 엔지니어, 과학분야 등의 전공자(특허법 관련 전문가이면서)에 더하여 심판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전공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판능력으로서 유연성이 선호됨. 예를 들어 화학을 전공하였더라도 전자 및 컴퓨터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선발 요소임
 - 협동적으로 작업이 수행 가능해야만 함(특히 3명의 심판관)
 - 분석기술, 문장력, 언어 소통 기술, 법률적 사고기술이 뛰어나야 함
 - 워드, 아웃룩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브 아크로뱃 등에 대한 기본적 숙달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학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학사 또는 석사이상의 공학 또는 과학 학문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함
 - 심판관은 현직 주변조사 멤버신분이어야 하며,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함
- 특허심판원(PTAB) 심판관의 고용절차는 [그림 4-23]과 같음
 - 먼저, 지원서 검토 및 서류전형 과정을 거쳐 통과된 중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함. 이후 면접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청장(USPTO Director)에게 추천하고, 상무장관(The Secretary of Commerce)에게 추천 뒤 장관의 승인을 득함
 - 둘째, 해당 선출자에게 선정을 통보하고 예비적으로 제안내용을 정리한 뒤 신원조사에

들어감. 이후 보상이나 근무시작일자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가고 이를 선발자가 수용하면 고용절차는 종료됨

[그림 4-23] PTAB 고용 절차²³⁾



2. 유럽연합(EU)

- 현재 유럽의 특허제도는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 결정을 받은 뒤 EPC에 가입한 회원국의 국내특허로 등록됨
 - 유럽특허제도는 1973년 10월 5일 유럽특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유럽특허협약은 1949년 9월 프랑스 상원의원 앙리 롱샴봉(Henri Longchambon)이 범유럽협력기구인 유럽이사회에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의 창설을 주도한 것이 유럽특허제도의 기원임(안재현, 2013)
- 최근에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체제 달성을 위하여 2014년에 시행하고자 했던 단일 특허제도(Unitary Patent Package)를 '16년 중에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²⁴⁾
- 유럽특허청 특허심판관은 유럽특허조약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가 권한을 지니며, 기술심판관은 유럽특허청 심사과장 혹은 각국 특허법 판사 혹은 변리사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
 - 유럽특허청은 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적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 심판에 관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기도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함
 - 또한 심판관 경력에 따라 사건 배당을 차등화하고, 심리 이외의 행정업무는 심사관 임

23) http://www.uspto.gov/ip/boards/bpai/ptab_brochure_v2_4_10_14.pdf

24)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Europe_Legal_Update_201212_kor.pdf 참조

용 인터뷰를 제외하면 예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심판경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정차호, 2010)

- 심판관 선발은 선정위원회가 후보자 명단을 유럽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청장이 최종 후보자를 행정이사회에 제출하게 됨
- 행정이사회는 유럽특허협약(EPC)의 제반요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심판관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임명 절차 및 고려사항에 관해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홈페이지에서 이상적인 자격 요건과 최소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EPC 11조에서 23조에서 간접적으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최종결정은 행정이사회의 자격심사와 면접 두 가지 절차에 의해 진행됨(이하 내용 2016년 기준 EPO 홈페이지 정리, 2016)²⁵⁾
- 이상적인 인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수년간 특허법 분야의 전문가여야 함. 특히 응용화학, 화학공학 분야를 선호하며, 특허 심사관, 민간영역의 특허 배심원, 해당산업의 특허 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이 많아야 함
 - 지원자의 매우 높은 업무성과가 증명되어야 함
 - 당사자, 동료, 담당자를 다룰 때 심판관에 걸맞는 독립성, 진실성, 공명정대, 업무의 능숙함, 근면, 성실 등의 능력을 갖춘 자
 - 심판부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잘 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응용화학과 화학공학 분야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자
 -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유럽특허협약과 심판부의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있는 자
- 최소자격요건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음
 - 석사학위 수준 이상 또는 예외적으로 수년 간 그에 동등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자
 - 공식적인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는 유창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25) <https://career012.successfactors.eu/sfcareer/jobreqcareer?jobId=1904&company=EPO&username=>

○ 그 외 EPC 11조에서 23조까지 고려사항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이사회는 유럽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협약국 내 국내법원 또는 준사법기관 (Quasi-Judicial Authorities)의 법적 자격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재판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EPC 제 11조 제5항)
- 유럽특허청의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임(EPC 제 14조 제1항)
- 심판원 구성원은 특허청 내 접수, 심의, 이의신청, 법률 등 유관부서의 현 소속이 아니어야 함(EPC 제 23조 제2항)
- 내부 지원자는 지원동기서와 이력서, 지난 4년간 평가리포트, 지원자의 상급자와의 연락에 대한 동의 등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함

○ 심판관의 공석시 유럽 특허청의 내외부에 공지되어 후보자들의 지원을 접수하게 됨

- 기술심판부의 경우, 기술심판관의 자격요건은 EPO심사과장, 회원국의 특허법원 판사 또는 변리사임
- 법률심판관의 자격요건은 회원국의 판사 또는 변호사임
- 심판장의 경우는 심판관 및 외부 변리사 등 전문가임
- 심판관의 선발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오랜 경험을 갖는 심사관 중에서 선발되고 있으며, 심판관 임용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지명되는 경우도 있음. 내부 심사관들은 향후 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음
- 심판관의 직급은 A5로 기술분야 심사과의 심사과장(director)와 동일한 직급으로 운영됨
- 각 심판부의 심판장은 A6 직급
- DG3의 수장인 심판원장은 차장(Vice President)급 인사로서 A7 직급

3. 일본

- 일본의 특허심판제도는 일본 특허법, 일본 특허법 시행규칙, 일본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등에 의해 규정됨
- 일본의 심판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됨 (김범태, 2014)
- 일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 소정 직무를 수행한 경험과 연수과정 수료를 규정함
 - 직무의 급이 행정직봉급표(1)에 따른 4급 이상이나 전문행정직봉급표에 따른 3급 이상의 자 또는 지정직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
 - 산업행정 등의 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하고 그 중 3년 이상을 특허청에서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행정 등의 사무에 통산 12년 이상 종사하고 앞선 자들과 동급 이상의 학식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김범태, 2014)
- 또한 일본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심리지휘, 심판참여, 심판조사원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심리지휘: 심리 경험이 풍부한 심판장의 심리지휘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장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합의체에 참가하거나 특수사례 등의 곤란한 사건에 관한 심리의 진행 방법을 공유하는 제도
 - 심판참여: 지식재산분야 경험이 풍부한 판사 혹은 학자를 심판참여자로 초빙하여 심판참여회를 개최하여 심판관의 부족한 전문성과 소양을 보조함
 - 심판조사원: 법조자격을 보유한 심판결조사원을 활용하여 외부적 관점에서 구술심리 및 심리사항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심판장에게 환류함(김범태, 2014)

4. 중국

1) 전리복심위원회

- 중국의 특허심판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법에 근거하고 있음
- 전리복심위원회는 거절결정불복복심과 무효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리권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담당하고 있음
 - 다만 상표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주관 기관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가 담당
- 중국 전리법 제21조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 및 전리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적시의 요구에 맞게 법에 따라 전리에 관한 신청 및 청구를 처리하고, 국무원전리행정부 문은 완전·정확·적시에 전리정보를 공개하고, 전리공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해외출원온라인 포털, <http://www.nweip.biz>)
- 중국은 전리복심 처리 절차별로 기간을 정하고, 기간 안에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심리를 추구하고 있음
 - 거절결정불복복심 심사전치 기간제한(1개월 내), 무효복심 심리기간 제한(6개월), 무효복심에 대한 우선심리, 복심 청구의 온라인화, 지재권 전문 법원 설립(2014년), 상표 평심위원회의 심리 기간 규정 등임
- 전리복심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복심위원, 겸직복심위원, 복심원 및 겸직 복심원으로 구성됨
 - 주임위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이 겸임하고, 부주임위원, 복심위원 및 겸직복심위원은 국가지식재산권 국내 일정경력을 가진 기술 및 법률 전문가 중 선임(처장급, 과장급 상당)하며,
 - 복심원은 국가지식재산권 국내 일정경력을 가진 심사관 또는 법률분야의 종사자 중 선임
-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초심 결정에 대한 불복(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등록결정에 대한 무효 청구)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정
 - 3명 또는 5명의 복심위원 또는 복심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구성
 - *합의체 구성원의 역할: 합의체 회의를 주재 및 주임위원에 보고 승인 등 관리업무(조장-

부주임위원 또는 복심위원), 본안에 대한 검토 및 결정문 작성 등 실제업무(주심원-복심위원) 및 조장과 주심원을 보좌하는 보조업무(참심원-복심원)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북경지식재산법원(1심)* 및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2심)을 통해 확정

*2014년 11월 북경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어(광저우 특허법원이 설립, 2014.12) 종전 북경시 제1,2,3 중급법원에서 담당하는 지재권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모두 관장

○ 심판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주임위원은 국가지식재산권 국장이 겸임
- 복심위원의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 있는 심사관 또는 특허관련 기술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이며 국장이 임명함(처장급, 과장급 상당)
- 복심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 있는 심사관 또는 법률가를 임명함

2) 상표평심위원회의 운영

○ 상표평심위원 3명 합의체 또는 상표평심위원 단독으로 심리 결정

*통상, 약간 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자문가 그룹이 자문의견 제공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1중급법원 및 인민법원을 통해 확정

○ 주임위원 및 평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국가공상행정관리국내 상표평심위원회의 주임위원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임명하며 상표평심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위원의 회피 등을 관리
-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상표법률을 숙지한 자로서 상표심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또는 기타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됨(처장급, 과장급 상당)

제 4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주요국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특징

- 주요국 특허심판원의 위상 및 특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표 4-6]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4-6] 주요국의 특허심판원 위상 및 특징

구분	미국 (PTAB)	유럽연합(Boards of Appeal)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일본 (심판부)	한국 (특허심판원)
조직 위치 및 명칭	특허청 내 부서 2개 부서 : 특허심판원 (PTAB) 상표심판원 (TTAB)	특허청 내 부서 유럽특허청 심판원(Board of Appeal) : 유럽특허협약 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특허청 내 부서 전리복심위원회	특허청 내 부서 심판부	특허청 내 부서 특허심판원 (심판부)
기 관 장	행정특허판사 (Chief APJ) : AL1 직급 (GS 18 등급, 한국 고공단)	DG3 (Directorate General 3) 차장 (Vice President)	전리복심위원회 주임위원 : 국가지식산권국 장(한국 특허청장 상당) 겸임	심판부장 (한국 고위공무원단 상당)	심판원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심판 관리 업무	행정특허판사 (Vice APJ) 12명 : AL2 직급(GS 18 등급, 한국 고공단 상당)	기술심판부 의장 (Chairman) 28명	부주임위원 3명: 국가지식산권국 내 경험이 있는 기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부문장 34명(특실) : 심판장 중 선임됨 (한국 선임과장급)	심판장 11명 : 고위공무원단 나급
심판 업무	행정특허판사 약 200명 : AL3 직급 (GS 15-16 등급, 한국 과장급(부이사 관) 상당)	기술심판관 (Technical Member) 및 법률심판관 (Legal Member) 약 180명 : (A5 직급, 한국 공무원 과장급 상당)	복심위원 및 복심원 364명 (복심위원 : 국가지식산권국 내 경험이 있는 기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복심원 : 국가지식산권국 내 경험이 있는심사관 또는 법률가)	심판장 약 100명 : 심판관 중 선임됨(한국 공무원 과장급 상당) 심판관 336명 : (한국 공무원 4·5급-과장급 상당)	심판관 95명 : 3·4급/4급 40명, 4급/4·5급 55명

- 주요국의 특허심판원들을 살펴보았을 때, 심판원이 조직으로서 분리되어 있는(독립적인)

경우는 사실상 없음. 모두 각국의 특허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형태임. 다만, 업무기능으로 보았을 때 IP5 중 유럽연합만이 특허심판원만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음

○ 주요국의 특허심판원 지위 및 특징을 보면 복수의 국가 간 연합형태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특수성이 두드러짐

- 특허심판원 내에 부서로 있으면서도 유럽특허기구 소속국가들 간의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단일국 체제에서는 나타나기가 어려운 특수한 형태임. 유럽 특허심판원이 심판원 내 부서이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유럽연합의 정치·사회적 맥락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다양한 국가가 협약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상이한 소송절차 관련 언어와 관련분야 언어를 모두 포괄해야 하고, 심판관 선발 시 국가이익 간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회원국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수하게 고려된 것임. 아울러 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2인 이상의 동일국적을 제어해야 하는 등의 맥락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아직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심판부가 종국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연합의 특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부여되고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는 EU와 달리 단일 국가 체제 하에서 대동소이한 제도적 맥락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음. 공통적인 경향은 특허심판원의 지위를 공통적으로 특허청 내에 두고 있다는 점임

- 이는 법원으로부터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당사자들의 전략적 측면으로 인한 소송남발의 방지,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경제비용 축소 노력의 효과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으로부터 기능상 완전히 분리 독립시킬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과 유사한 구조가 되고, 처분청과 별개의 기관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의 전치주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현재의 구체절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소송절차가 모두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입장에서는 심결결과의 번복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강제할 수 있는데, 분리 독립이 되면 이러한 점이 약화될 것임

○ 주요국 심판관의 지위와 운영 특징 등을 종합정리하면 [표 4-7]과 같음

[표 4-7] 주요국 특허심판원 심판관 지위 및 특징

구분	미국 (PTAB)	유럽연합 (Boards of Appeal)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일본 (심판부)	한국 (특허심판원)
심판관 선출 방법	내외부 공개채용: 자격요건 필요 (특허법 제6조)	내외부 공개채용: 자격요건 필요	내외부 공개채용: 자격요건 필요 (특허법 실시세칙 제59조)	내외부 공개채용: 자격요건 필요 (특허법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3조)	내외부 공개채용: 자격요건 필요 (특허법시행령 제8조2항)
심판관 지위	AL1/AL2/AL3 3개의 복수 직급체계로 구분 (수석판사는 AL1 직급)	기술분야 심사과 과장(director)과 유사	-	행정직봉급표(1)에 따른 4급 이상이나 전문행정직봉급표에 따른 3급 이상의 자 또는 지정직봉급표의 적용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심판관 임명권자	특허청장 추천 상무장관 임명	유럽특허조약 회원국 대표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장
심판관 자격 요건	특허변호사; 특허 에이전트, 또는 관련 학사 및 석사 취득자	-기술심판관: EPO심사과장, 회원국의 특허법원 판사 또는 변리사 -법률심판관: 회원국의 판사 또는 변호사 - 심판장: 심판관 및 외부 변리사 등 전문가	-주임위원: 국가지식재산권 국장 겸임 -복심위원: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 있는 심사관 또는 특허관련 기술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국장이 임명) - 복심위원: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 있는 심사관 또는 법률가 - 상표평심위원회 평심위원: 상표법률을 숙지한 자로서 상표심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 또는 기타 법률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공무원	-5년이상 특허청에서 재직함 심사관 -총 10년이상 산업행정 등 사무 종사자(10년 중 3년 이상 특허청 심사업무 종사) -총 12년 이상 산업행정 등 사무 종사자	특허청 또는 소속기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 재직 -특허청 심사관 재직기간/일반공무원 중 특허심판원 심판업무종사기간/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재직 기간 통산 2년 이상
심판업무	행정특허판사 약 200명: AL3 직급 (GS15-GS16, 한국 공무원 과장급-부이사관 상당)	기술심판관 (Technical Member) 및 법률심판관 (Legal Member) 약 180명 : (A5 직급, 한국 공무원 과장급 상당)	복심위원 및 복심원 364명 (복심위원: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이 있는 기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복심원: 국가지식재산권국내 경험이 있는 심사관 또는 법률가)	심판장 약 100명 : 심판관 중 선임됨(한국 공무원 과장급 상당) 심판관 336명 : (한국 공무원 4·5급-과장급 상당)	심판관 95명 : 3·4급/4급 40명, 4급/4·5급 55명
심판합의체	3명(Merits Panel) 또는 7명(Expanded Panel)의 행정특허판사 합의체	3명 또는 7명의 기술심판관 및 법률심판관 합의체	3명 또는 5명의 복심위원 및 복심원 합의체 (조장-복심위원, 주심원 및 참심원-복심위원 또는 복심원)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 합의체 (심판장 1인 포함)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 합의체
심급체계	①CAFC→대법원 또는 ②지방법원→CAFC→대법원을 통해 심결 확정	법률(기술) 심판부 심결→ 확대심판부 심결확정	전리복심위원회 심결→복경지식재산법원→복경지급민법원 (상소)	심판부 심결→ 지적재산고등 재판소(항소)→ 최고재판소(상고)	심판원 심결→ 특허법원(항소)→ 대법원(상고) 심결 확정
특허무효제도	무효심판 /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무효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특징	2심	통합특허법원이 없어 확대심판부 결정(내부 재심절차)이 중국심	2심	2심	2심

- 각국의 심판관 선출방법은 공통적으로 내·외부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주로 일본, 한국), 검찰, 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미국, EU, 중국)을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특허변호사 등 특허업무 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유럽연합은 기술심판관의 경우 내부 심사관, 그리고 법률심판관의 경우는 회원국의 판사/변호사로 되어 있음
 - 이렇게 내·외부 전문가들이 골고루 임명될 수 있는 서구국가들에서는 이를 통하여 특허심판관의 독립성을 높이려 하고 있음. 즉, 특허심판원 조직이 아닌 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수한 외부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의 방식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내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높은 인력으로 심판관이 충원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임
 -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내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높은 인력의 장기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특허심판원에서 전문직위 운영 확대 계획을 추진 중임
- 심판관의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출신들의 기존 관련경력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고위급의 처우해주고 있음(한국의 경우 4급 이상)
 -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합의체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 및 경중에 따라 3명,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하여 심결의 신중성을 기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 업무에 있어 한국과 법제 및 실무 측면이 가장 유사한 일본 특허심판원의 경우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은 약 1:2(114:220, 2014년 기준) 수준임. 이는 한국의 1:10(7:71)비율보다 낮은 편임
 -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업무부담이 상당히 과다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심판장의 과소충원은 3인 합의체 사건 심리에 있어 심판장 1인당 연간 776건(2015년 기준)의 업무과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심판장을 일본과 비슷한 비율로만 높여준다면(즉, 심판장 약 28명 충원) 심판장 1인당 연간 155건으로 낮추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심판품질의 향상 및 심판의 공정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임
- IP5 모두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합의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 및 경중에 따라 3명 또는 7명으로 구성하여 심결의 신중성을 기하고 있음
 -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일한 합의제 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급체계의 경우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2심급제를 운영하고 있음
 - 특허와 관련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실판단(전문지식)이기 때문에, IP5 중 특수한 상황인 유럽연합만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 미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을 연방 항소법원(CAFC)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법률(또는 기술) 심판부의 심결에 대해 확대 심판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결이 확정됨. 즉, 확대심판부의 특허심판이 중국심의 성격을 가짐
 - 중국은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였음(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저작권보호센터, 2014)
 -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조사의 과학성, 전문성, 중립성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심판 중심인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부합하는 절차법과 심판규칙을 구축하고자 함
 -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하게 됨

- 일본은 2005년에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동경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불복 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음
- 주요국 특허심판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율성과 공정성의 동시적 추구에 있다고 요약될 수 있음
-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효율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고,
 - 이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에만 한정된 심판제도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전문성 중심의 판결로 사실에 근거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임
- 특허심판 운영의 방향은 특허소송이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재산권적 침해를 고려하여, 신속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필요적 또는 임의적 전치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특허제도의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성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1) 필요적 전치주의를 통하여 심판원의 전문성에 근거한 판결에 방점을 두는 방식, 또는 2)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중복과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무효심판과 무효확인소송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전자의 방식인 필요적 전치주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보다 공정한 심판의 기회 확보를 위하여 일본의 예와 같이 심판관의 숫자가 늘어나야 할 것이며, 2)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아래에서 IP5개국 국가 중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제출의 제한, 즉 법원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임
 - 후자의 방식인 임의적 전치주의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법원의 특허판사가 관련 특허 기술에 대한 독자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함. 이를 위하여 법원에 다양한 특허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만 함

제 5 장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및 제안

- 이 장에서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앞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다채롭게 살펴본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제도 현황, 대내외 환경 등 정책적 여건 분석, 특허심판원의 존재의의와 그 공정성·독립성 확보 수단, 조세심판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설치 목적, 조직·기능·인력, 업무규모, 인력 선발 및 운영 시 전문성·독립성 확보 수단, 그리고 미국, EU, 일본, 중국의 특허심판제도와 특허심판기관 운영 사례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차원의 강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제 1 절 국내의 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1. 국내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1) 총론

- 국내사례 검토 결과, 특허심판원이 유의 깊게 비교해볼만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행정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이라는 점 그 자체만 동일할 뿐, 구조와 기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허심판원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아 비교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특히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다른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굳이 비교하자면 행정청(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결정계 심판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조세심판원은 다부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위해 국무총리실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설치된 극히 이례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었음. 조세심판원은 그 업무와 기능의 고유한 특성상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에 걸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심판행정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킨 것으로, 특허심판원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함. 따라서 조세심판원 역시 특허심판원과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이어서 비교의 가치가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특히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의 분리 독립에 따른 공정성·독립성 제고가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조세심판원 설치 이전부터 제3자 기관에 의한 엄격한 사법 절차화로 인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어렵게 하고, 집행 기관의 행정책임 회피 및 인사교류 차단으로 인한 전문적 심판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한성국·박훈, 2005). 일선 행정기관 산하에 조세심판원을 배치함으로써 인해 부처 간 조정 등 예상 가능한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오히려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임
-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관할 행정청과 구조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이러한 조직 및 제도 차원의 노력만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심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국세청 부과처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조세심판관과 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없고, 이렇게 배속된 조세심판관들이 일정 기간 심판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다시 국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임(전형준·이광수, 2014: 166)
- 조세심판원의 경우 심판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세청과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으며, 2014년도부터 국장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 교류도 이루어져오고 있음.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판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인사 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심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관할 특별행정심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고, 행정청의 전문 인력으로 행정심판 담당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심판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난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행정청으로부터 특별행정심판기관을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별행정심판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켜 관할 특별행정심판 영역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설부른 조직·제도 차원의 하드웨어적 개혁보다는 심판처리절차 개선, 심판관 자격기준 강화, 제척 규정 구체화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 일각에서 이론적·일반적 논의 차원에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수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행정청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독립시키는 방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칫 행정의 자기 통제, 개인의 권리 구제, 법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행정심판의 근원적인 존재의의를 퇴색시켜 행정심판이 지닌 장점을 적지 않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별행정심판은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전문·기술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도로서 심판기관과 심판절차 등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그것과 다르며, 관련 사안의 전문성·기술성과 행정통제의 능률성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특허심판과 같이 기술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보다는 당해 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심판제도 및 절차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특허심판원을 조세심판원과 같이 조직·제도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특허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와 닿는」(bürgernah) 제도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간이·신속한 점뿐만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참조). 「권리이익구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존재의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간이·신속성」과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가 특허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에서는 중요한 존재의의로 강조되어야 함

○ 특허심판은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타 특별행정심판에 비해 이해관계에 얽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전문적 판단과 조직·제도상의 외형적 표상에 따른 오해 등으로 인해 사려 깊은 검토가 결여된 채 조세심판원 사례를 손쉽게 떠올려 분리 독립 방안만이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오인할 경우 국민권익의 저해는 물론 세계적인 특허전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어리석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즉, 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원인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유착 관계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여 단순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직 및 제도 외형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잘못 찾을 경우, 자칫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가치의 훼손을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과 판단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음. 특허심판제도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특수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고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요국이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특허심판제도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2) 조세심판원 분리 독립 사례의 교훈

①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 정지

- 조세심판원을 조세제도의 입안 및 조세행정의 집행기관과 동떨어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다 보니 조세심판의 양대 기능 중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세행정의 자율적인 통제 기능이 중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조세심판원을 조세행정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차단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에 따라 심판청구에 의한 조세행정의 자율적인 통제 기능의 작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음
- 조세제도를 입안하고(기획재정부), 그 입안된 조세제도를 운영·집행하고(국세청), 그 조세제도의 운영·집행에 따라 드러나는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조세심판원), 그 파악된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조세제도의 개선 또는 조세행정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는데(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이와 같은 조세행정의 피드백(feedback) 장치의 중요한 한 과정이 조세심판원에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의한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은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임

② 기술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문제

- 조세심판원을 조세제도의 입안 및 조세행정의 집행기관과 동떨어진 국무총리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과 조세제도의 입안 및 조세행정의 집행기관인 기획재정부·국세청과의 사이에 인사교류가 종래보다는 원활하지 못함. 이로 인하여 조세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세심판관(상임)과 조사관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조세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조세의 부과처분은 경제적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과세표준의 산정은 회계학 또는 회계이론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법률학뿐만 아니라 경제학·무역실무·상품학 또는 회계학 분야에 속하는 폭넓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 이와 같은 조세사건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조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심판관이나 조사관이 결원된 경우에도 국무총리실 안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조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국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 받아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워졌음

③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출소권 부여 요구

- 조세심판원을 조세제도의 입안 및 조세행정의 집행기관과 동떨어진 국무총리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에 출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조세제도의 입안 및 조세행정의 집행 기관과 차단된 조세심판원에서 기존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거나 특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로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 처분청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사건에 관한 인용재결은 국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분청에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추게 해주어야 하고, 기존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응수단을 갖추게 해주지 않으면 법률의 최종 해석권이 대법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성이 노정됨
- 조세심판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에 출소권을 부여하고, 처분청이 그 출소권을 남용하게 되면 모든 조세사건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 경우 간이·저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심판제도의 존재 의의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조세심판제도는 오히려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고 무용한 비용과 노력을 강요하는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만일 조세심판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출소권을 부여하도록 바꾼다면 차라리 심판청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음

④ 조세심판원과 같이 분리 독립했을 경우의 한계와 시사점

- 조세심판원은 내국세와 지방세 또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기관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음. 조세심판기관이 제3자기관이라고 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심판기관의 독립성이란 재결청을 구성하는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 독립성과 심판사무의 독립성을 의미함
- 인사상 독립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은 원장과 조세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됨. 이 경우 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추천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조사관 및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바뀌었을 뿐임.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인사상 독립성은 종전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불과한 것임. 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의 추천권과 조사관 및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이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실장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심판청구의 심리 및 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조세심판관인 원장과 조

세심판관이며, 그 밖에 조사관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장을 비롯한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심판사무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조세심판관이 심판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과 관계없이 심판사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2. 해외사례 검토 결과 및 함의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심판원들을 살펴보았을 때, 심판원이 조직으로서 분리되어 있는(독립적인) 경우는 사실상 없음. 모두 각국의 특허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형태임. 다만, 업무기능으로 보았을 때 IP5 중 유럽연합(EU)만이 특허심판원만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단일국가체제에서는 보기 힘든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유럽특허청 특허심판원(Board of Appeal)은 유럽특허청(EPO) 내 부서로 있으면서도 유럽특허기구 소속국가들 간에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다양한 국가가 협약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상이한 소송절차 관련 언어와 관련분야 언어를 모두 포괄해야 하고, 심판관 선발 시 국가이익 간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회원국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특수한 형태임. 아울러 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2인 이상의 동일국적을 제어해야 하는 등의 맥락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임. 특히, 아직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심판부가 중국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연합의 특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부여되고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는 EU와 달리 단일 국가 체제 하에서 대동소이한 제도적 맥락을 보이고 있음. 공통적인 경향은 특허심판원의 지위를 모두 특허청 내에 두고 있다는 점임. 이는 법원으로부터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당사자들의 전략적 측면으로 인한 소송남발의 방지,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경제비용 축소 노력의 효과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심판관 선출방법은 공통적으로 내·외부 공개채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주로 일본, 중국, EU), 검찰, 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미국)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특허변호사 등 특허업무 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유럽연합은 기술심판관의 경우 내부 심사관, 법률심판관의 경우 회원국의 판사/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높음. 이렇게 내·외부 전문가들이 골고루 임명될 수 있는 미국과 EU에서는 이들 심판관을 통해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 즉, 특허심판기관의 조직 및 제도 차원이 아니라 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심판관의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기술전문성 관련 고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위급 대우 및 처우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심판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 모두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 및 경중에 따라 3명, 5명 또는 7명으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결에 신중성을 기하고 있음. IP5 모두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으로 보임

○ 특허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주요국 모두 특허심판기관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급체계의 경우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국 모두 2심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실판단(전문지식)이기 때문에, IP5 중 특수한 상황인 유럽연합(EU)만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을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유럽연합(EU)은 법률(또는 기술) 심판부의 심결에 대해 확대심판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결이 확정되는데, 확대심판부의 심판이 중국심의 성격을 가짐. 중국은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1월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당사자가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2005년에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동경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지재고재)를 설치하였으며 불복 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국과 법제 및 실무운영 측면에서 유사성이 가장 강한 일본 특허심판원의 경우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약 1:2(114:220명, 2014년 기준)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1:10(7:71)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그 격차가 상당함. 문제는 이것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에 하나의 원인을 더하고 있음.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다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심판장의 과소충원은 3인 합의제 사건 심리에 있어 심판장 1인당 연간 776건(2015년 기준) 담당의 업무과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심판장을 일본과 비슷한 비율로만 높여준다고 해도(즉, 심판장 약 28명 충원) 심판장 1인당 연간 담당건수는 155건으로 낮추어지게 될 것임.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심판품질의 향상 및 심판의 공정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기하기 어려울 것임. 심판장과 심판관에게 가혹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 관련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그리고 그 결과는 특허심판관 생태계의 황폐화와 국민권의 손상, 그리고 국제 지식재산 경쟁에서의 도태와 국익의 저해 등 심각한 양상으로 귀착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 특허심판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율성(전문성)과 공정성(독립성)의 동시적 추구에 있다고 요약될 수 있음.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기간 단축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음. 심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고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에만 한정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 중심의 독립적 판결로 인해 사실에 근거한 공정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소결

- 특허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이념인 적정, 신속, 공평, 경제와 특허법의 목적인 권리보호와 이용 도모를 통한 산업발전 기여라는 가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함.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이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는 현행 조직체계가 타당함
- 사회 일각에서 이론적·일반적 논의 차원에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수한 특별행정기관을 행정청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칫 행정의 자기 통제, 개인의 권리 구제, 법

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행정심판의 근원적인 존재의의를 퇴색시켜 행정심판이 지닌 장점을 근원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특허심판원을 조세심판원과 같이 조직·제도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특허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와 닿는」(bürgernah) 제도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간이·신속한 점뿐만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참조). 「권리이익구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존재의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간이·신속성」과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가 특허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에서는 중요한 존재의의로 강조되어야 함

제 2 절 분리 독립 방안 및 현행 유지 방안 검토

1. 분리 독립 방안

1) 분리 독립 방안의 내용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심사품질 개선 및 무효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한 끝에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간의 특수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2013년, 2014년,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성·우윤근 위원 등 6명이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하였음. 언론보도 등에서도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다가 오히려 특허가 무효되는 사례가 많으면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났음(매일경제, 2012.12.09.; 문화일보, 2014.07.09.; 중앙일보, 2015.03.12. 등)
-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특허청)에 소속되어 있는 특허심판원을 행정청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특허심판원 분리 독립 방안은 특허심판 심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을 중앙행정기관(특허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임. 예를 들면, 특허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특허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특허심판원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임. 또는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학계 일부에서는 특별행정심판과 (일반) 행정심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음.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특허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함께 ‘행정심판원’으로 통합되면서 특허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앞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바와 같이 특허심판의 고도의 기술전문성, 그리고 국제적 특허전쟁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선불리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 통합 방안(김광수, 2015)

그간 특별행정심판과 일반 행정심판의 통합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방법과 모형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가) 통합의 세 가지 모형 제시: 신봉기 교수는 현재의 특별행정심판 가운데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통계적 관점, 조직법적 관점, 권리구제적인 관점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 체계를 ① (통합)행정심판원 분리(안), ② 권익위원장 겸임의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 ③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으로 구별하여 각각 그 장단점을 설명하였음. 이 제안의 특징은 행정심판원의 설치를 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데 있음. 그리고 행정심판원에 특별행정심판을 모두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특별행정심

판에는 기타의 행정불복절차가 모두 포함됨

(나) 행정심판원의 설치 안: 박정훈 교수는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때 종래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원내의부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 검토의견(김광수, 2015; 박정훈, 2011): 단기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심판원으로 하고, 여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형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조세심판원은 그 자체로 불복절차가 복잡하여 좀 더 정리가 필요하고, 조세 분야의 전문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행정심판소를 설치하여 모든 특별행정심판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차원임. 위의 신 교수와 박 교수의 안은 모두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공통성이 있음. 검토의견은 이 견해와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 하지만 통합의 방안에서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는 신중론을 제시한 점에서 다른 점이 있음. 특히 조세는 사건 수가 많고 일반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절차와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이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는 일반절차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음

2) 분리 독립 방안의 장단점

① 장점

- 이론적으로 분리 독립 방안은 특허심판 심리대상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심판사항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분리 독립 방안은 대규모 조직에서 심판대상을 분리하여 업무의 과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는 달리 양측 당사자 간의 심판이 아니라 심사관의 결정(특허청의 처분)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이므로, 특허청장과 출원인 사이의 대결구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가 되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청 소속인 현 상황에서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장점이 있음
- 분리 독립 시, 대외적으로 분리되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볼 수 있음. 다만, 특허심판원의 분리 그 자체보다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분리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임
- 현행 유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내부적인 온정주의 문제는 분리 독립 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내부조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성, 비밀주의, 폐쇄성, 관료적 병폐 등 각종 부정적 행태가 억제되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임

② 단점

- 일반적으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의 환류기능이 지닌 장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리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분리 독립 방안은 지금까지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의 이점을 상실시키고 소규모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저하 등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 관할 특별행정심판 영역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음
- 분리 독립 방안은 특허심판 심리대상의 특성을 분리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분리 독립 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프로세스 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의 사례와 같이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있음

2. 현행 유지 방안

1) 현행 유지 방안의 내용

- 현행 유지 방안은 현행 방식대로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두고 특허심판의 심리권을 특허심판원에 부여하는 방안임

2) 현행 유지 방안의 장단점

① 장점

- 현행 유지 방안은 특허심판권을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특허심판에서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음
- 현행 유지 방안은 특허심판원을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하여 외부

비전문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기술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허심사·심판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특허심판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행 유지 방안은 중앙행정기관(특허청)에 소속된 내부 구성원에 의해 특허심판이 사실상 운영되게 되므로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업무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허심판기관은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타 특별행정기관에 비해 이해관계에 얽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리 독립 방안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둘 경우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더 큰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 현행 체제의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전문성 뿐 아니라 특허법원의 존치에 따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성은 크게 긍정된다고 할 수 있음 (신봉기, 2010)

② 단점

- 현행 유지 방안은 특허심판원을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비대화가 이어져 국민을 위한 행정의 신속성과 경제적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유지 방안은 정부조직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특허심판이 곤란해질 소지도 있고,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조직 내부적인 온정주의, 관대화 경향, 비밀주의, 폐쇄성, 관료적 병폐 등 부정적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특허심판원을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특허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음

3) 현행 유지 시 관련 검토 사항

① 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심판관은 특별행정심판 운영주체인 준사법기관에 해당되므로 법관에 준하는 직무와 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요구됨(김원오, 2010). 이에 따라 한국의 현행 특허법은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명문화하고(특허법 제143조 3항) 심판관의 자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심판관의 인사상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장이 심판관을 임명하고,

심판관의 임기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조세심판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허심판 업무의 고도의 기술전문성으로 인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특허청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특허심판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없고, 이렇게 배치된 특허심판관들이 일정기간 심판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다시 특허청으로 복귀하고 있는 불가피한 현실을 도의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명백해 보임.
- 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관련하여, 주요국 특허심판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율성(전문성)과 공정성(독립성)의 동시적 추구에 있으며, 그 핵심은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방향이라기보다는 심판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방향에 방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심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고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에만 한정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 중심의 독립적 판결로 인해 주요국의 특허심판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로 높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심판관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판관 임명방법, 임기, 신분보장 등 인사운영 절차가 제대로 확립해 주어야 함. 이는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 심판관의 직무독립은 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판지원업무가 잘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은 주요국의 심판관 선출방법부터 지위와 근무여건까지 총체적으로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음. 심판관의 내·외부 공개채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주로 일본, 유럽, 중국), 검찰, 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미국)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심판관의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기술전문성 관련 고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위급 대우 및 처우를 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특허변호사 등 특허업무 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유럽연합은 기술심판관의 경우 내부, 법률심판관의 경우 회원국의 판사/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높음. 이렇게 내·외부 전문가들이 골고루 임명될 수 있는 미국과 EU에서는 이들 심판관을 통해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 즉, 특허심판기관의 조직 및 제도 차원이 아니라 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심판을 맡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관이 일정기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현재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에 머무는 기간이 짧게는 3개월도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근무 기한이 일정치 않아 심판관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므로, 장기간 한 분야에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전문직위제, 승진시 가점 적용 등의 인사제도를 적용하여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함

- 하지만, 이는 특허심사와 정책, 예산, 인사권을 담당하는 특허청과 협의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심판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외부인사의 심판관 임용과 순환보직에 의한 잦은 내부 인사이동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를 가급적 억제하고, 심판관의 자격기준 및 교육연수 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나아가 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술 분야별로 그 분야의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갖춘 심판인력을 확충하고, 심판 보좌 인력의 부족, 심판관의 신분보장의 미흡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절차를 살펴보면, 비록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심리·의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자격·임명절차·임기·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이하) 규율하고 있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5항 이하) 심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위원 중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때에도 판사·검사·변호사 위원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의 심리와 의결에 있어서도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이들 위원이 각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함(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노동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제10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이는 심판기관의 심리와 의결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

음. 헌법재판소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하다는 태도를 취한바 있음(헌재결[전] 2000. 6. 1, 98헌바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③ 조세심판원 사례

- 조세심판원의 경우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점차 상임 조세심판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사건을 축약하여 작성한 심판관 회의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의견진술제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판청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진술제도가 활용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시간적인 제약에 따른 짧은 의견진술만으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만일 인력의 부족 때문에 비상임 조세심판관제도를 존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감축하여 한 조세심판관회의에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수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자격을 현재 특허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개방형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일정 비율을 충원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특허심판원은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특허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는 물론 관련 분야 전문기술에 대한 현장감 있는 심도 높은 이해를 핵심 요소로 함. 현재의 관련 요소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특허청 심사관 혹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에 필적하는 실무적인 역량을 갖춘 대학교수 등 외부 우수인력을 찾기가 어려우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부 인력 수급 노력이 필요함

④ 판사가 참여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 특허법원 판사가 참여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제기 비율을 감소시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특허법원 판사의 참여를 통한 조정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비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 다만, 이 경우 그 구상은 훌륭하나 법원 판사 중에 이공계 출신이 드물며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관에 필적하는 기술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갖춘 판사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편적인 제도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⑤ 절차적 공정성 강화

- 2006년 특허심판절차에 구술심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술심리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구술심리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과 심판관 등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고객의 신뢰제고 및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므로 그 확대가 필요함. 다만 (앞에서 논했듯이) 현재와 같은 심판장 및 심판관의 수를 유지한 채 구술심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심판품질의 저해라는 악영향이 초래될 소지도 있음. 따라서 구술심리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관 및 심판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심판장 대 심판관의 비율을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맞추어주는 선결조치가 꼭 필요할 것임

⑥ 특허청 심사국과 특허심판원의 공간적 분리

- 특허심판원이 분리 독립되지 않더라도 특허청 심사국과 특허심판원을 한 곳에 두지 말고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여 서로 떨어져 있게 하면, 결정계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에 부담을 주는 행태적·문화적 요인이 구조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소결

- 특허심판원 분리 독립의 실익이 크지 않고, 행정청의 실무행정과 전문지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안목을 갖춘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할 때, 특허심판원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특허청 소속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다종다양한 장점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하겠음. 다만, 일부 단점과 부정적 요소들을 억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임

제 3 절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의 관계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특허심판

-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림 5-1] 특허심판원과 법원



* 참고: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 인정

- 2002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제도에서 ‘공정성’, ‘객관성’ 등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가 배제될 경우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7조 3항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심판절차의 보장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인 특허심판은 심판기관의 독립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사법적 절차의 준용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신봉기, 2010: 482-485)
- 한국의 특허심판제도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만 가능하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특허법 제186조는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서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 등을 들고 있음(헌재결 2002. 10. 31, 2001헌바40,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합헌]). 현행법상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대상은 조세심판(조세심판원), 특허심판(특허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해양안전심판원), 부당해고 불복(노동위원회),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국의 특허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998년 3월 1일 대전에 개원됨으로써 설립되었음.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법 제186조), △지방법원의 침해사건(예: 침해금지명령, 손해배상, 업무상 신용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을 전속 관할함(2016. 1. 1. 이후). 특허심판원과의 관계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던 주장 및 증거는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표되고 있음

- 재판부는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부장판사 1명 포함), 17명의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기술심리관은 특허/실용신안 재판사건에 대한 자문(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로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음. 특히 이 기술심리관의 조력이 없을 경우 특허법원 판사들은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기술심리관은 기계/전기/농림/화학/통신/약품 등의 기술전문성을 가지고 특허법에 대한 해박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재판의 사건 종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들의 자격은 △5년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또는 심판관 경력, △7년 이상(이중 5급 경력으로 5년 이상)의 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무원 경력, △석사학위 및 10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관련분야에서의 박사 학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특허재판은 준비절차·변론을 통해 진행됨. 양 당사자는 실물(불가피한 경우 모형)을 이용한 상세한 기술적 설명 및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함. 여기서는 변리사의 대리가 허용되는 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변리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비율은 2014년 14.5%에서 2015년 13.8%로 0.7%p 감소하였고,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2014년 25.4%에서 2015년 24.2%로 1.2%p 감소하였음. 이는 현행 방식대로 심판전치주의를 운영하는 것이 특허심판의 심판품질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임을 방증하는 증표라고도 할 수 있음

- 특허심판의 경우 여타 특별행정심판과는 달리 양 당사자(권리자 vs 무효심판청구인 등) 간의 분쟁사건이 전체 심판청구의 약 40%를 차지하여 특허청이 이해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큼. 국내 민사법원에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건수는 2013년 침해 1심 1,681건, 침해 2심 100건, 대법원 17건으로 2014년 침해 1심 966건, 침해 2심 91건, 대법원 17건으로 감소했음. 그러나 2010년 침해 1심 184건, 침해 2심 54건, 대법원 14건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음.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특허청, 2015)
- 특허심판원—법원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특허심판원의 특허유효 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건 중 특허 무효 취지로 심결취소된 건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급 간 심리범위 및 판단기준 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국가 지식재산위원회, 2015)
 - 특허법원은 심판단계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소송단계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다는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06.25. 선고 2000후1290 판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음). 정부는 특허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판관—판사 간 진보성 판단기준 조화 도모를 위해 공동 연구 및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허심판원—법원 공동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바람직한 판단기준을 연구한다는 계획임. 일본의 경우는 특허법원(지재고재)이 진보성 기준을 낮춰 무효율이 대폭 감소한 선례가 있음. 일본 특허법원(지재고재)은 한국과 특허심판제도가 유사하지만 한국특허법원의 무제한설과 달리 제한설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동일 특허권이지만 한국의 심·판결 결과와 주요국의 심·판결 결과가 다른 사례도 있어 판단기준 조화 추진하는 측면도 있음. 특허심판원—법원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합리적인 심리범위에 대한 연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주요국(IP5)은 [표 5-1]과 같이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특수한 제도적 맥락인 유럽연합(EU)만 다소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독일은 특허심판제도가 없으나, 연방특허법원에 기술판사가 존재하여 법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표 5-1] 주요국의 특허무효제도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독일
종류	무효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 /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불복절차	대법원 ↑ 특허법원 ↑ 심판원	최고재(대법원) ↑ 지재고재 ↑ 심판원	고급인민법원 ↑ 지식재산법원 ↑ 복심위(심판원)	연방대법원 ↑ CAFC ↑ 심판원, 지방법원	항고법원 ↑ 1심법원	연방대법원 ↑ 연방특허법원

*주: (유럽 통합특허법원) 2명의 기술판사가 포함된 재판부에서 심리(2017년 출범 예정)

- 미국은 무효소송의 시간과 비용 과다문제로 2012년 무효심판제도를 신설했음. 2012년 이전에는 무효소송만 가능했는데 이후 2012.9월부터 2016.5월까지 4,538건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표 5-1]과 같이 소요비용이 10분의 1로 감소되고 소요기간도 2분의 1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미국의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에서는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여 오히려 심판 권한을 강화했음

[표 5-2] 미국 무효심판제도의 효과

구분	무효심판(IPR)	소송(무효확인)	효과
소요비용	20만 \$ ~ 40만 \$	200만 \$ ~ 800만 \$	1/10로 감소
소요기간	최대 18개월	2 ~ 3년	1/2로 감소

- 주요국 모두 특허심판기관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급체계의 경우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국 모두 2심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실판단(전문지식)이기 때문에, IP5 중 특수한 상황인 유럽연합(EU)만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대한 불복을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유럽연합(EU)은 법률(또는 기술) 심판부의 심결에 대해 확대심판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결이 확정되는데, 확대심판부의 심판이 중국심의 성격을 가짐. 중국은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1월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당사자가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2005년에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동경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지재고재)를 설치하였으며

불복 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임의적 심판전치주의의 현실적 한계

- 특허심판제도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필요하여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만 가능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특허법 제186조는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구(舊)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외한 항고소송 전반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를 규정하였으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8.3.1.부터 항고소송의 제기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음. 이렇듯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각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음. 특허심판은 “처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인정되고 있음
- 국회 및 사회 일각에서 특허심판원을 분리 독립시키거나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자며 제기하고 있는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음.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압축됨. 첫째, 특허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가 특허심판원 또는 일반 법원 중 원하는 곳에 무효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것임. 둘째, 특허권을 부여한 행정청(특허청)과 별도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리구제(침해), 무효여부 등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임. 셋째, 사법부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민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처음부터 법관에 의해 판단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임
- 사실 이 모든 논지의 배경에는 현행 특허심판이 공정한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행정청(특허청)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 오도·변질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에서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처분(심판)이 아닌 사법적 판단(판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자는 취지임. 유사한 사례로 조세심판원의 분리 독립 사례도 있고 하여 특허심판원도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면 지금보다는 더욱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모든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법원이 특허심판 혹은 특허재판과 관련한 충분

한 내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둘째,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행정심판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며 품질도 우수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어 있을 것 등임.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불편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 점을 매우 주의 깊고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임

- 더구나 이 사안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간의 특수 관계 해소라는 좁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특허전쟁의 와중에 자칫 스스로 경쟁력을 제약하거나 도태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하는 우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논의라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함. 작고 좁은 특정집단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넓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임.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막전막후의 숨 가쁜 특허전쟁에서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우물 안 개구리’ 식 단견으로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

○ 만일 국회 및 사회 일각의 주장대로 임의적 심판전치주의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예상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첫째는 전문성 및 법원 부담 문제이고, 둘째는 절차 이원화 문제임

○ 첫째, 심판사건이 법원으로 집중되면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심리부담이 가중될 것임. 이공계 석·박사, 기술고시 출신들이 대부분인 특허심판관들과 달리 법원 판사들은 이공계 출신이 극히 적으며 기술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다수인데, 설령 이들이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분야별 고도의 기술전문성까지 확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이러한 상태에서 고도의 특허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할 것임

- 법원의 인력 부담도 만만치 않게 가중될 것으로 보임.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법원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2015년 한 해 동안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95명이 9,544건의 심결을 내린 데 비해, 특허법원은 배석판사 8명이 816건의 판결을 내렸음. 또 하나, 현행 특허심판 체제에서 특허심판이 행정심판을 통해 대량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소송 전에 미리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거 법원으로 직행한다면 법원의 부담이 심대하게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무효심판이 지방법원(1심)—특허법원(2심)—대법원(3심)을 거쳐 진행된다면 심판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되어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결국에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이 저해될 소지가 큼

- 현실적으로 임의 전치를 도입하더라도 법원에서 특허청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기는 구조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함. 임의적 심판전치주의가 도입되

어 심판사건 중 50%를 법원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 특허법원 판사의 약 4.6배, 기술심리관의 약 5.8배의 전문인력(판사 69명, 기술심리관 98명)이 필요함. 더구나 판사 중에서 지식재산권 전공자나 이공계 출신자가 소수이고, 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특허청 파견 기술심리관 15명: 특허청 심사심판경력 15년 이상자) 수준 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허재판의 품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현저함

- 현재 기술분류 7만여개를 특허심사관(843명), 특허심판관(7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심판 없이 소송으로 바로 제기되면 법원에서 전체 기술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현실적으로 기술심리관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은 특허청뿐이며, 심사경험을 통한 능력배양 기회가 없는 법원이 직접 양성하기는 곤란함. 심판관은 기술을 직접 파악하여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법관은 보조인력(기술심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됨. 법관이 기술적 쟁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특허소송(미국 특허소송은 무효심판(IPR)에 비해 약 10배의 비용(200만\$~800만\$) 발생)처럼 전문가증인, 감정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처리기간 지연, 비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것임

○ 둘째, 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정정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게 되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당사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음. 특히, 정정제도는 특허권 부여와 연관되어 특허청에서 반드시 담당할 필요가 있어 임의적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곤란해짐. 현재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 해소를 위한 수단(정정청구)이 가능하나, 무효소송 중 법원에서 직접 정정이 불가함

- 권리자가 무효소송 중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경우 정정판단에 따라 특허권 법률관계 선후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정정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출원/등록시로 소급효가 있어 정정 이전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발생하는 점도 있음

3.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의 현실적 필요성

○ 특허심판에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꼭 필요한 현실적 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권리 구제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간이·신속한 특허분쟁의 해결이 꼭 필요한 측면이 있고, 특허심판이 소송보다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전문적 판단의 도움으로 인해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거니와, 법원이 확

보하기 어려운 기술전문성 문제, 우수인력 확보 문제, 절차 이원화 문제 등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게 해주기 때문임. 그래서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임

- 첫째, 전문성 차원에서 특허사건은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및 기술전문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구를 통해 특허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
- 둘째,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제도 및 기술 전문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함. 특허청 심사관(843명) 중 심사경력 10년 이상의 우수인력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인력을 다른 곳에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법원 판사 중 기술전공자는 소수이고, 현재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청 출신의 기술심리관을 파견 받아 기술자문을 받고 있는데, 법원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허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술전문성까지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체계 및 법원의 인적 구성 등까지 대폭 수정해야 하는 국가적·사회적 부담 및 비용(논란) 문제로도 파급될 소지가 있음
- 셋째, 비용 측면에서 특허심판은 특허소송보다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재 특허심판은 약 30만원의 청구료와 대리인비용 500만원가량이 소요되나, 소송은 약 47만원의 인지대(송달료 포함)와 대리인비용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당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특히 이 경우 중소기업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심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해야 함.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초래될 소지가 있음
- 넷째, 신속·신뢰성 차원에서 특허심판에 의해 대부분의 분쟁이 사실상 해결된다는 장점이 큼. 특허심판원 심결(2015년, 6,347건) 중 약 13.8%만 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약 86.2%는 법원에 제소되지 않아 신속한 분쟁 해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장점을 굳이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별반 없음

-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율(2015년, 24.2%)은 민사합의부사건의 항소심 취소율(2014년, 30.8%)에 비해 낮으므로, 신뢰받는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새로운 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특허거절결정불복사건의 심결취소율은 15.7%(2015년)에 불과했으며, 새로운 증거제출이 가능한 특허무효사건의 심결취소율은 26.8%(2015년)였음

- 현행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의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허물어뜨릴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도 않음. 특허심판은 전문성 있는 심판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구술심리 채택하는 등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심결 중 약 86.2%(2015년)는 법원 소송 단계로 이르지 않아 행정심판의 취지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구현하고 있음. 만약 유사 특허에 대하여 임의전치인 법원의 소송과 특허심판이 별개로 진행된다면 특허성 판단의 통일성이 저해될 것임. 유사한 특허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면 거절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등록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적 전치 관련 대법원 의견 〉

대법원은 1994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폐지와 행정소송의 3심제 및 행정법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1994년 7월 27일 공포되었는데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던 행정소송법 제18조가 개정되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하되,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절차를 어떤 경우에 둘 것이냐에 대하여 ① 조세부과처분처럼 대량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에 의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허 등 전문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③ 행정심판의 재결이 제3자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의결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등에는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30년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06)(전 법제처 처장 김기표, “행정심판이 통합적인 상설 권익구제체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4. 법원 관련 최근 이슈 검토

1)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면 무효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심판의 임의전치를 주장하는 일부 법원 관계자 및 변호사업계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면 무효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른바 ‘강제적 전치주의,’²⁶⁾ 즉 필요적 전치주의 인용률이 임의적 전치주의 인용률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특허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면 특허무효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음.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

26) 학계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법원은 부정적 의미가 강조되는 ‘강제적 전치주의’라는 용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하였음

라 사건 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기관 존립의 위험이 없고 그래서 특허심판원이 안일한 심판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그 근거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이 380건(61%)인데 비해, 특허법원 실질 무효율은 16건(10.8%)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 심판원 대신 법원이 판단하면 특허무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근거가 박약한 주장임. 특허심판원이든 법원이든 무효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특허심판 100건 중 실제로 심결이 취소된 사건은 3.1건 수준(전체 심판 취소율(14.1%)×심결취소율(22.2%)=3.1%)이며, 특허심판의 취소율, 심결취소율은 민사소송에 비해 낮기²⁷⁾ 때문에 특허심판의 신뢰성이 특별히 낮다고 하기 어려움.

2) 미국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무효심판(IPR)을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미국 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미국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무효심판(IPR)을 제기할 수 없어, 법원 제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 2012년 도입된 특허심판(IPR)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논쟁이 있었던 바, 미국 제도와 유사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무효심판 대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무효심판 또는 소송 중 하나만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무효심판(IPR)을 먼저 신청하면 무효확인소송은 중지될 수 있으며, 무효확인소송 제기 시 무효심판은 신청이 불가함. 또한 IPR 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주장을 법원에서 반복할 수 없는 금반언의 효력이 부여됨. 미국은 2012년 뒤늦게 특허심판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앞의 [그림 4-3]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이 모든 증거에 대해 기술적 판단을 하도록 운영하고, 법원(CAFC)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 판단을 존중함. 심판원 결정에 대한 CAFC 파기율은 5%(12건 / 233건, 2014.9~2015.9 종결 건)임. 기업들도 비용·시간 절감(무효심판은 소송(무효확인소송)에 비해 비용은 1/10, 기간은 1/2로 감소)을 위해 소송보다 무효심판을 선호한 결과, 무효심판 도입 이후 무효확인소송은 약 36% 감소했음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무효심판(IPR)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Cuozzo v. Lee)에서 만장일치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2016.6.). 그에 앞서 CAFC는 무효심판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했다는 위헌 주장에 대해 의회가 특허심판원에 위임한 준사법적 절차로서 합헌이라고 판결했음(MCM Portfolio LLC v. Hewlett-Packard Company, Fed. Cir.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허무효제도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

27) 특허심판 취소율 14.1%(’15) vs 민사합의부 1심 항소율 42.1%(’14)
특허심판 심결취소율 22.2%(’15) vs 민사합의부 1심 취소율 30.8%(’14)

로 굳이 전환하고자 한다면, 중복과 모순을 피하기 위해 미국식 제도를 변형 없이 도입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3) 특허분쟁 발생 시 다수의 심판과 소송에 휘말리는지 여부

-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허분쟁 발생 시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 다수의 심판·소송이 함께 진행되어 기업과 국민들이 다수의 심판과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 다수의 심판·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무효심판 중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함께 청구되는 건 약 56건 / 연평균 무효심판 600여 건)이며, 거기에 더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추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특히 특허분쟁 대부분은 침해소송 없이 무효심판만 진행되며, 그 중 61.2%(2014)는 심판결과를 토대로 소송 없이 바로 분쟁이 종결됨

4) 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원스톱 분쟁해결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여부

-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원스톱 분쟁해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음. 첫째, 임의적 전치주의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선택권 확대를 가능케 하고, 둘째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에 불리한 통계(무효율)를 개선할 수 있으며, 셋째 원스톱 분쟁해결 시스템이 보편적인 제도이며 특허심판이 없는 나라도 상당수이거나, 넷째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임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허무효는 기술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심판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법원 측 제안은 무효확인소송으로만 특허무효를 다룰 수 있었던 종래의 미국 제도와 유사하나, 미국은 오히려 최근(2012년) 무효심판을 도입하였음. 당사자 대립 구조(특허무효는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특허권자 vs 무효청구인 간의 다툼 구조)를 무시한 채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주요 특허권자인 중소기업·개인의 심판 선택권이 박탈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2014년 무효심판 사건 중 중소기업·개인의 특허비중은 약 62.3%에 달함. 통상 심판보다 소송의 비용·시간 소요가 더 큰 상황에서 상대방이 특허권자에게 심판 대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권자 중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심판 대신 소송에 끌려가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IP5 중 무효확인소송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뿐이며, 유럽을 제외한 국가는 특허심판기관을 통한 무효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도 과거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만 특허무효를 다룰 수 있도록 하다가 무효심판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2년 새로 도입하게 된 것임. 아울

러 한국과 유사한 특허심판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위헌 논란은 찾아볼 수 없음. 특허심판제도는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관의 직무독립성은 특허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심판절차 역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준사법적 절차라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음. 특히 독립성은 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판단의 독립성을 의미하며, IP5 특허청도 특허심판원은 모두 특허청 소속에 설치하여 두고 있음

5. 소결: 장기간의 제도 연구 필요

- 특허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허심판은 일방 당사자의 사건(심사관의 거절결정 불복)과 함께 양 당사자 간의 분쟁(무효, 권리범위 확인)이 존재하는 특수한 행정심판 구조임.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행정심판은 보통 일방 당사자와 행정청 간의 분쟁이 다수임. 따라서 임의적 전치주의는 특허 전문성(기술이해, 특허법 지식 및 수년간의 심사경험을 통한 청구항 해석능력)이 핵심인 특허심판의 본질상 적합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특허소송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이해관계자 사이의 극심한 사회갈등 야기, 국민권익의 손상, 국익의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음. 특히,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와 달리 특허권자의 피선택권을 박탈하여 특허심판제도를 오히려 퇴보시킬 수 있음
- 특허심판의 임의전치 전환은 특허심판소송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므로,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됨. 임의적 전치주의는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특허소송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이해관계자 사이의 극심한 사회갈등 야기 등이 예상됨.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1946년 특허법 제정 이래 학계, 산업계 등에서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특허청 행정처분을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의 무효판단기준의 견해 차이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촉발됨에 따라 특허심판원-법원 관계의 재정립 문제가 범정부적으로 검토되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이 뒤섞여 다양한 선부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신중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찾을 필요가 있음

제 4 절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안

- 특허심판원은 권리구제, 자율적 행정통제, 법원의 부담경감 등 행정심판제도가 지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신속·공정한 심판을 기하기 위해 위상과 조직을 제대로 확립해야 함. 이는 특허심판이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확고한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이 지닌 권한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됨
 - 특허심판은 행정청(특허청)의 행정행위를 심리하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정청(특허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편의적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박송규, 1996),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2015년 4월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의 세부 실천계획을 시행하였음. 심사인력의 지속적 증원 추진, 누구든지 특허성 부당 판단 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최종 무효심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하여 특허권 정정 기회 부여, 무효심판 심리방식 개선(심판단계에서 청구인 입증책임 강화 등 무효심판 심리방식 개선),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심·판결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조화 노력 경주 등이 추진되고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따라서 여기서는 가급적 이와 중복을 피하면서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독립된 심판관의 임기를 보장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기관 독립보다는 심판관 독립에 있다는 점임. 조세심판원 사례 검토 결과 분리 독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고, 해외 사례 검토 결과 기관 독립보다는 심판관 독립에 방점이 놓여 있다는 점이 규명되었기 때문임

1.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특허심판은 필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과 연계된 구제제도로써 사법절차의 준용 측면에서 엄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초로 살펴본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로 심판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되었음. 심판기관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신뢰기준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로 살펴볼 수 있음

- 심판기관의 독립성은 심판기관이 외부의 기관(특허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그 고려대상은 심판기관 구성원의 임명방법과 임기, 소속기관 또는 임명권자의 감독권한, 심판기관의 보고의무를 들 수 있음.
 - 심리의 주체인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감독권한 및 보고의무가 별도로 없으며, 특허심판의 독립성을 검토함에 있어, 심판기관의 독립성 규정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특허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심판관의 임명방법, 임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없이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 따른 전보로 심판관을 임명하고 있음
- 심판기관의 공정성은 심판기관 자체의 존재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고려대상은 판단기관 구성원의 구성 즉 외부위원의 비율 또는 참여정도를 들 수 있으며,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심판관을 임용할 때, 내·외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나, 외부인력 중 채용된 이력이 없어 심판관에 외부 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심판원장의 임명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승진발령하고 있음
-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과 준사법적인 절차인 심판절차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원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등 결과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기본적인 사항인 심판관의 임명방법, 자격요건, 임기, 신분보장, 외부전문가 참여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것이 범형식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필요시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국내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심판관 임명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8조에 의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법)의 ③에 의거하여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은 법률지식과 기술전문성을 갖춘 자로 특허청장 추천 후 상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EU도 심판관은 유럽특허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이사회가 임명하고, 특허청 내 접수, 심사 등 유관부서의 현원이 아니어야한다고 유럽

특허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유사 기관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심판관의 임명 방법과 자격요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심판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구성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 또는 외부위원의 참여정도를 확대하고, 외부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심판관 외부채용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자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관을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있고, 미국은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나, 실제로 특허청 심사관 출신이 20% 이상이고, 유럽 또한 공모하나, 기술심판관 대부분 심사관 출신이 채용될 정도로 우수한 외부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외부자문제도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첨단 기술의 이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해석의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외부의 심판 참여를 늘려가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고,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처럼 임기제 위촉심판관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특허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심판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심판실무의 주체인 심판관의 독립성으로 귀결될 수 있음. 심판관의 독립성은 직무상 독립과 인사상 독립으로 구분됨
 -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판지원업무가 잘 뒷받침되어야 실질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심판 보좌 인력을 보강하고 심판제도, 연구개선, 법제연구, 판례분석과 심판편람의 반영, 심판관 연수교재 작성 등에 소요되는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김원오, 2010). 아울러 학계 및 특허 실무업계 등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심판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심판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피드백 및 정책 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심판관의 인사상 독립을 위해서는 처분기관의 인사권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심판관들이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심리·재결기관 합의체의 구성원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재결기관이나 처분기관의 인사권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특허법과 기술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심판관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타 부처와 협의 등 특허심판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현 체제하에서도 심판관 인사에 대해 순환보직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임기나 신분보장을 담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는 심판의 전문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임

2. 특허심판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임. 특허심판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기술 전문성이 주된 요인이므로, 심판의 주체인 심판관은 특허법과 기술 지식을 겸비하고, 사안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심판관의 전문성은 심판관의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심판관의 자격요건은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나, 일본 사례와 같이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방형 직위 공모 활성화를 통해 심판관 또는 심판보좌인력으로 이공계 법률전문가 또는 로스쿨 변호사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심판관 개방형 직위공모의 경우 민간인은 3년의 임용기간이 부여되고 있음. 자격요건으로는 석·박사 학위자 또는 민간근무경력 변리사는 가점을 부여함)
- 주요국의 심판관 임명방법은 공통적으로 내·외부 공개채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주로 일본, 유럽, 중국, 한국), 검찰, 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미국)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미국만 외부가 다수(75%)이고, 나머지는 심사관 출신이 대부분임. 심판관의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기술전문성 관련 고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위급 대우 및 처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미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특허변호사 등 특허업무 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유럽연합은 기술심판관의 경우 내부, 법률심판관의 경우 회원국의 판사/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높음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특허심판관의 내·외부 공개채용,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겸비된 역량 요구, 특허청에서의 근무경력 혹은 검찰·변호사 등 특허법계 현장의 종사경험과 과학적 지식 등 전공분야의 전문성 등을 강조하여 임명하고, 심판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미국과 EU 수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수한 외부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 및 전문지식이 구비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특허심판원 포함)은 2014년 9월부터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요구되어 인센티

브 제공을 통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고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지침(특허청예규)을 제정·운영하고 있음(〈부록 3〉 참조)

- 특허심판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심판관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유인하기 위해 전문직위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위 재직자는 현재보다 보수를 인상하여(수당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요국의 심판관 처우 수준으로 처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경우 특허심사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공무원에게는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USPTO 5~23%↑, JPO 15.4%↑, SIPO 10%↑)

○ 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장과 심판관의 수를 현재보다 늘릴 필요가 있음

- 심판관의 수를 보면 한국이 95명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36명, 중국은 364명, 미국은 200명, EU는 180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심판관 1인당 심결건수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많고, 구술심리 역시 확대 시행(2007년 161건 →2015년 646건)함에 따라 심판관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관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인당 심판처리건수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심판품질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장(3인 합의체의 장) 정원은 2016년 현재 1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이며, 심판부의 심판 품질을 담보하는 심판관 정원은 95명(4급 또는 45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판장 7명(고위공무원단 나급), 심판관 71명(4급 또는 45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비율은 1998년 출범 당시 ‘1:2’ 였다가 2016년 현재 ‘1:10.1’ 로 낮아졌음. 이로 인해 심판장 1인이 담당하는 기술범위(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 기준)는 심판관의 10배, 심사관의 120배에 달하고 있어, 심판장의 기술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개별사건에 대한 심판장의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심판장 1인당 합의체 5개씩 담당하게 하는 운영방식으로는 심판품질의 향상 및 심판의 전문성 강화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임

○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판의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사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인 소송에 비해 독립성·공정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해 간이·저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하는 행정심판의 효율성 측면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기간 지연으로 행정심판의 이점(신속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심판처리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대심적 심리 구조의 본질적 요소인 구술심리를 확대 실시하고, 내실화해야함. 구술심리,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야 함
 - 구술심리, 기술설명회, 심판관 면담에 원격 영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원격지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술심리 기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심문할 사항을 명확히 통지하는 쟁점심문서 사전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구술심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구술심리 내실화 방안으로는 첫째, 심리절차와 내용을 구술심리 조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둘째, 신규 심판관의 구술심리 진행 역량을 함양하며, 셋째, 당사자의 권리 및 방어권 등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록의 충실화를 통한 구술심리의 내실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허심판원 심결의 효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의 존속 및 소멸이므로, 그 심리과정의 기록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적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구술심리에 있어서, 심판장의 적극적인 심리지휘의 증가, 구술심리건수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술심리가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체제 정비 요구도 있음(김원오, 2010)
 - 그러나 현행 법제상 심판의 구술심리 조서 작성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심판장의 명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음. 조서 작성 권한은 판단행위자인 심판장에 있어 법원과 같이 조서의 작성을 독립된 권한을 가진 공적기관(법원사무관; 서기)이 하는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장이 심리지휘를 하므로 결국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 되어, 심리 내용의 공공성 내지는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서의 작성을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사무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심판서기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조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서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구술심리를 내실화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집중심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간의 당사자 서면 공방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쟁점 정리를 위하여 모든 증거를 구술심리 전에 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여 심리 지연을 방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3. 기타 제도개선방안

1) 심결문의 난해성 문제 개선

-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난해성 문제는 법원 판결문의 난해성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이할 필요가 있음. 너무 어려운 한자어나 만연체를 구사하여 일반 국민들이 심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임
 - 난해한 용어와 읽기 어려운 만연체도 문제지만, 바른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바른 문장을 사용한 심결문 작성기법 개발·확산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2015.1.1. 이후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의 전면 공개’ 시행에 따라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낯설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특허청(심사국)과 특허심판원의 물리적 공간 분리

- 특허청(심사국)과 특허심판원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특허심판원 공간을 정부대전청사(특허청 소재) 밖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앞에서 누누이 살펴본 여러 가지 특수한 국가 목적상, 그리고 주요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원을 분리 독립하지 않고 현행대로 중앙행정기관(특허청) 소속으로 두더라도, 특허청(심사국)과 특허심판원을 현행대로 정부대전청사에 같이 두지 말고 물리적으로나마 다소 분리하여 특허법원 근처 혹은 정부대전청사 근처에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특허청(심사국)과 특허심판원 간의 특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임. 특히 결정계 사건에서 심판관의 공정한 심판에 부담을 주는 행태적·문화적 요인이 구조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켜 심판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3) 심판관 연수 규정 개선

-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 행정유보사항에서 의회유보주의를 적용하여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판관 자격요건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특허청훈령 혹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성이 떨어지므로 법률로 규정하여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은 <부록 4>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식재산교육과) 소관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 46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1987년부터 2001년까지 특허청훈령으로 운용되던 것이 2013년 3월 15일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이 더욱 낮아진 것임

4) 심결일관성 제고 방안 추진

- 동일한 권리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들 여러 건의 심판을 동일한 주심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모순된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심판관들 간의 심결의 일관성을 유지·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특허 권리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2015).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보도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행정심판 30년사.
- 기획재정부. (2016).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 김광수. (2015).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43): 117-137.
- 김남철. (2012).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 조화방안: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3(4): 105-134.
- 김범준. (2009).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조세법연구」, 15(1): 159-204.
- 김범태. (2014). 주요국(중·미·일) 심판제도 현황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m.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field=searchTC&query=%EA%B9%80%EB%B2%94%ED%83%9C,%202014&po_no=12198/검색일 2016. 7. 9.
- 김선조. (2014). 유럽특허통합에 대한 제도주의 국가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월, 163-166.
- 김용섭. 201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2: 79-105
- 김용진·이철남·김동준(2009). 지식재산권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 김원오. (2010). 특허심판제도와 그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13(2): 117-157.
- 김자영. (2007). 한중 특허심판제도 비교. 특허청 연구회. <http://www.kipo.go.kr/club/front/menu/bbs/list.do?clubId=issue&menuId=13&curPage=1>/검색일 2016. 7. 15
- 김준한. (2001). 유럽의 특허 및 상표제도의 동향. 지식재산21, 67 : 28-45.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R03.html>/검색일 2016. 7. 12
- 김중효·김국현·이덕재·한성훈. (2005). 심판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 김창현·강진호·김연아·한경화·김동균·남영신. (2008). 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 디지털타임즈. (2016). “특허무효심판제도 분쟁기간 비용 줄인다” . 5. 25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2602100976731001/검색일 2016. 7. 6.
- 랜들 레이더. (2016). “한국, 글로벌 트렌드 맞춰 ‘제도’ 와 ‘인식’ 함께 고민해야” ...랜들

- 레이더 전 CAFC 법원장. iPnomics, 2016.8.1. <http://www.ipnomics.co.kr/?p=53912>
- 박송규. (1996). 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 배병윤. (2012). 조세심판제도의 개요와 현황. 법제처.
- 신봉기. (2010).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2: 475-508.
- 안재현. (2013).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8(2) : 1-38.
- 윤선희. (2011).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 「중재연구」, 21(1) : 57-72.
- 이우성. (2011).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74호.
- 이종근. (2013). 해양안전심판원의 인적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5(3): 564-579.
- 이해영 · 노지준 · 권순익. (2012).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허청
- 전형준 · 이광수. (2014).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6: 150-173.
- 정차호 · 구대환 · 이해영 · 김동준. (2010). 지재권 분야 주요국(IP5)의 특허심판제도 비교연구. 특허청.
- 조세심판원.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 최근진. (2004). 식품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지식재산논단」, 1(1): 113-160.
- 최서희 · 인소진. (2015). 미국 특허상표청 「전략 IT 계획 2015-2018」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2015-16호,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 해외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할 라이선스 계약실무. IT지재권 순회방문교육 강의교재.
- 특허청. (2016). 2015 지식재산 백서.
- _____. (2015). 2014 지식재산 백서.
- _____. (2013). 유럽특허청 심판원 인력 · 조직 현황. 내부자료
- _____. (2013). 주요국의 특허심판원 조직. 내부자료.
- _____. (2013).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특허청.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5개국 특허법(한 · 미 · 일 · EPO · 중국) 조문 대조표.
- 하홍준. (2012). 심사품질 평가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표준모델 도출에 관한 연구. 특허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연구.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4). 中,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 베이징(北京)에 설립.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4.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367&key=title&keyword=중국 최초의 &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검색일. 2016. 7. 5.

- 한국종자연구회. (2004). 종자과학과 산업.
-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절차 제도의 조화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행정법학회. 2013. 행정심판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행정관례연구회. (2014).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및 행정심판 절차 특례 설치요건 등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상국·박훈. 2005.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홍봉규. (2004). 적법성 확보를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적절성 여부. 「공법연구」, 32(4) : 505-527.
- USPTO. (2014).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안내문. http://www.uspto.gov/ip/boards/bpai/ptab_brochure_v2_4_10_14.pdf/검색일 2016. 7. 9.

<기관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국립종자원. <https://www.seed.go.kr>
-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 조세심판원. www.tt.go.kr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www.kmst.go.kr
- 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https://www.uspto.gov/>
- 유럽특허청(EPO) 홈페이지. <https://www.epo.org/index.html>
- 일본특허청(JPO) 홈페이지. <https://www.jpo.go.jp/>
- 중국특허청(SIPO) 홈페이지. <http://www.sipo.gov.cn/>
- 해외출원온라인 포털 홈페이지. <http://www.newip.biz/>

부 록

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심판사무취급규정
3. 특허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4.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04. 8.31	특허심판원훈령	제10호
개	정	2005. 6.30	특허심판원훈령	제14호
개	정	2005.11.22	특허심판원훈령	제17호
개	정	2005.12.15	특허심판원훈령	제22호
개	정	2008. 6.25	특허심판원훈령	제40호
개	정	2009.10.27	특허심판원훈령	제48호
개	정	2009. 6.29	특허심판원훈령	제56호
개	정	2010.10.26	특허심판원훈령	제61호
개	정	2013. 4.22	특허심판원훈령	제71호
개	정	2015.11.19	특허심판원훈령	제79호
개	정	2016. 9. 1	특허심판원훈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44조 내지 제146조·「실용신안법」 제33조·「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1>

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

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3. "5인 합의체"라 함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심판부의 설치) ① 심판부는 심판사건의 수·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특허심판원에는 제1심판부 내지 제11심판부의 상설심판부를 두며, 그 외에 비상설심판부를 둘 수 있다.

③ 상설심판부는 상표, 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통신 등 각 분야별로 설치하되, 복합기술분야에 관해서는 전담부를 설치한다.

④ 제2항 후단에 의한 비상설심판부는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설치한다.

⑤ 5인 합의체는 제2항에 의한 3인 합의체와 별도로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설치한다.

제4조(심판부의 구성) ① 3인 합의체는 심판장 1인·심판관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설심판부의 심판장은 각 분야별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1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심판원장(이하"심판원장"이라 한다)도 비상설심판부의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관중에서 비상설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겸임할 심판관을 지정하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은 비상설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5인 합의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

제5조(심판부의 기능 등) ① 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2.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업무
3.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② 각 심판부별 심판사건의 배당은 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① 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보임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장은 심판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심판처리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퇴직원을 제출한 심판장·심판관에 대하여는 퇴직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①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제3항제2호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자

②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동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③ 제1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심판(심판연구관·소송수행자·특허수사자문관·법원조사관을 포함한다) 경력이 없는 자는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실무교육과정의 이수율 조건으로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판원장은 심판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심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6월 미만인 자를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이 이수된 후 심판장회의의 심판부 근무결정에 따라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심판원장은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제7조제4항에 의한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있는 경우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의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심판관련 교육과정(제2항의 교육기간 내에 개설·운영되는 과정에 한함)

3.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

④ 전항 제3호에 의한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은 연구지도관의 주관으로 소속될 심판부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관한 연구와 판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삭제

2. 삭제

제9조(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① 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등의 추천과 직무) ①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에서 심판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심판분야별로 수석심판장을 둘 수 있다.

②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관 중에서 심판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상설심판부별로 수석심판관을 둘 수 있다.

③ 상설심판부의 심판관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관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해당 심판부의 수석심판관 또는 선임심판관에게 심결문 작성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1>

④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의 심결문 작성에 관하여 심판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각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분야별 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①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심판관 지정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5인 합의체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① 5인 합의체의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심판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상표·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5인 합의체 심판사건의 선정) ①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심판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합의체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5인 합의체 사건은 매월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5인 합의체 심판사건의 합의) 5인 합의체 사건의 주심 심판관은 제14조에 의하여 선정된 심판사건의 개요를 해당 5인 합의체사건의 심판장에게 보고하고 익월 15일까지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

제16조(5인 합의체 심판사건의 심결문 초안 작성) 5인 합의체 사건의 주심 심판관은 익월 25일까지 제14조에 의하여 선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 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 정	1977. 8.26	특허청훈령 제 10호
전문개정	1998. 2.25	특허청훈령 제238호
전문개정	2001.12.19	특허청훈령 제341호
전문개정	2002. 8. 1	특허청훈령 제351호
전문개정	2004. 5. 1	특허청훈령 제385호
개 정	2005.12.14	특허청훈령 제436호
개 정	2006. 1.31	특허청훈령 제446호
개 정	2006. 4.12	특허청훈령 제457호
개 정	2006.10. 4	특허청훈령 제476호
개 정	2007. 1. 9	특허청훈령 제486호
개 정	2007. 6.11	특허청훈령 제502호
(포대 용어 변경을 위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 정	2007. 6.25	특허청훈령 제504호
개 정	2008. 1.30	특허청훈령 제532호
개 정	2008. 4.11	특허청훈령 제545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령)		
개 정	2008. 6. 4	특허청훈령 제553호
개 정	2008. 6.25	특허청훈령 제566호
개 정	2009. 1.30	특허청훈령 제599호
개 정	2009. 8.24	특허청훈령 제620호
개 정	2009.10. 1	특허청훈령 제628호
개 정	2009.10.27	특허청훈령 제636호
개 정	2010. 3.30	특허청훈령 제660호
개 정	2010. 6.29	특허청훈령 제669호
개 정	2010.11.19	특허청훈령 제673호
개 정	2011. 3.31	특허청훈령 제690호
개 정	2012. 3.21	특허청훈령 제712호
개 정	2013. 1.31	특허청훈령 제738호
개 정	2013. 9.10	특허청훈령 제743호
개 정	2013.12.27	특허청훈령 제755호
개 정	2015. 3.12	특허청훈령 제808호
개 정	2015. 5.20	특허청훈령 제815호
개 정	2015.10.16	특허청훈령 제828호
개 정	2016. 9. 1	특허청훈령 제8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판람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전산입력)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처리·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

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 관련된 접수부·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제4조(서류 등의 접수) ① 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모형·견본 및 증거물(이하 제2장에서는 "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제5조(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합철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 등의 접수절차) ①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심판청구서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출원인 코드"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2. 심판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출원인 코드, 서류명, 심판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④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담당자별로 관리한다.

제7조(심판서류 등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특허청 정보관리과(이하 "정보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②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에

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견본·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번호 부여방법)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를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완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

제10조(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①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
2. 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③ 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심판에 관한 서류 중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심결 등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1]

제11조(대리인 사이의 송달) ① 당사자에게 심판사건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송달될 심판서류 등의 부분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심판서류 등이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장은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서류의 부분을 교부 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①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정보변경 안내서"를 심판청구인(피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심판청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분이 반송된 경우, 심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 2. 관보 · 공보 또는 신문 게재
- 3. 심판원게시판 게시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보존 관리) ① 심판에 관한 서류 중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심판 진행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 ② 주심 심판관은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을 첨부하여 심결문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당해 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정책과장은 당해사건의 심결문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 ④ 삭제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제15조(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
-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 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제16조(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 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제17조(예납금의 납부)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 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예납금의 지급) ①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심판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예납금의 반환)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

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절차

제21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개정 2016. 9. 1>

제22조(지정기간 및 그 연장)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3조(심판청구서 등의 부분 송달) ①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분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부분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분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 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부분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사건에 대하여 최초 심판판 지정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유가 제출된 이후에 청구이유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제24조(답변서의 기재사항)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청구서 보정) ① 심판장은 피청구인의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여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계 심판에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결정계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25조의2(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26조(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루는 절차)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⑤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⑥ 심판정책과는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특허·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심판합의체의 운영)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1.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법률적·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3.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4.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5.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6. 삭제
7.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8.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9.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10.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

③ 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의2(심판사무관 등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인 심판보조인력(이하 "심판사무관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구술심리의 지원·참여 및 조서작성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정명령 등의 절차) ① 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진행) ①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

② 청구서 부분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계 심판사건은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집중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결각하 또는 결정각하를 하는 경우
2. 심판청구의 이유, 증거 및 답변이 명확하여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내에 심결할 수 있는 경우
3.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없는 경우
4. 심사·심판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경우
5. 기타 심판장이 집중심리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집중심리에 관한 절차는 심판원장이 예규로 정한다.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 4의2. 삭제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로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 ②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에 해당하여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우선심판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삭제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의 경우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의 경우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9. 1>

1.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1>
- 1의3. 삭제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

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 사실이 접수된 날 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개정 2016. 9. 1>

2. 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 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5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1. 신속심판결정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⑤ 심판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되는 사건과 함께 계류 중인 정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심판을 할 수 있다.

⑥ 심판장은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제32조(심리종결)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 신속·우선심판사건 또는 심문서에 미리 심리종결예정시기를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3. 구술심리 또는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4. 심결각하 또는 청구각하하는 사건

② 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심판절차의 중지)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심판속행통지)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제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거절결정불복심판 등)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이하 "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보정각하결정) ① 심판장은 상표·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거절이유통지·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④ 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특허청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심판정책과는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7.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심판정책과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삭제

제38조(출원의 변경 등)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출원의 변경을 한 때에는 당해 심판서류철의 우측상단에 "출원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보제공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개정 2016. 9. 1>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구술심리

제39조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1.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2. 쌍방당사자가 대리인이 없는 사건
3.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심판장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9조의3(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구분'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원격영상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상표·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9. 1>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1>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
<개정 2016. 9. 1>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제40조(구술심리기일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부는 기일지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송달하여 구술심리기일은 통지하고, 쟁점이 될 심문사항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쟁점심문서(별지12-4호 서식)를 통지할 수 있다.

제41조(구술심리기일의 변경)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구술심리기일의 취소)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제43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 ·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3-2호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② 증인 ·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증인출석요구취소

통지서(별지 제13-3호 서식)를 통지한다.

제44조(구술심리의 녹음 등)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제45조(녹음테이프, 속기록의 보관 등)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테이프(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3(구술심리 조서의 작성) 심판사무관 등은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 조서(필요시 증인·당사자신문 조서를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제1절 총칙

제46조(증빙자료의 신청)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증인신문의 신청) ①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감정서 등 사본 제출) 심판관이 감정을 명하거나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같은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심판관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 심판관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비용 등의 납부 및 관리 등에 대한 절차는 제3장의 절차에 의한다.

제2절 증인신문

제50조(증인신문서의 제출 등) ① 심판관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 서류의 부분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불출석의 신고) 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증인이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3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4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32조·동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감정

제55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신청의 대상, 감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감정신청 대상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 서류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판관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대방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서를 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은 제1항의 서류를 토대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관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판관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제56조(기피신청의 방식) 심판장은 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감정서의 설명)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58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서증

제59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서증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이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서증이 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서면원본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고자 할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이 초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 심판관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61조(서증부호)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② 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1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문서제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 의무자에게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해당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제출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제시 · 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장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절차에 의한다.

제5절 검증

제64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59조 제5항과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66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 · 대표하는 법정대리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조 제1항 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67조(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심판관은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8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심판관은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심판관은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증거보전

제70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1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 심판청구 전의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심판정책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주심 심판관에게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제72조(증거물 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증거물 등"이라 함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심판서류 또는 심판에서 인용한 것을 심판관의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것,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심판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등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문서와 기타 물건].

제73조(증거물 등의 관리) ① 증거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심판진행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이 처리한다. 그러나 심판이 종료된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 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4조(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①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한 접수담당자는 증거물 등이 제출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상의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증거물접수정보"를 출력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한 후 전자화작업을 의뢰하고 증거물 등에는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심판정책과의 방식심사자에게 이관한다.

② 제1항의 방식심사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및 증거물 등에 대한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첨부된 증거물 등을 해당사건의 주심 심판관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주심 심판관은 심판이 종료되면 심결문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한 증거물 등을 심판 정책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심판정책과의 방식심사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등을 심판부에 이관하거나 이 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물건관리대장에 입력한 후 증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증거물 등의 대출) 증거물 등의 관리자가 그 보관하는 증거물 등을 타심판부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증거물건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6조(증거물 등의 반환) ① 심결의 확정 등으로 증거물 등을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증거물 반환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물반환통지를 한다.

② 증거물 등은 이를 반환 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별지 제15호 서식)에 영수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물건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우편발송번호를 수령증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반환을 희망하지 않은 증거물과 증거물반환통지서에 지정한 기일(반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때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6주일이 경과된 때)까지 수령하지 않는 증거물 등은 심판정책과에서 이를 폐기한다.

제77조(보관상의 점검) 심판정책과장은 매월 말 증거물건 관리대상상의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관상황을 점검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제77조의2(심결일) 심결은 심리종결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하되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8조(등록사항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
2. 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
3.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③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게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2001. 6.30.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정보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2. 2001. 7.1.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정보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제80조(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송무팀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1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심판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2조(심판서류철의 관리) 심판정책과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심판서류철과 합철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83조(이송) 심판에 관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즉시 이를 특허심판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결문·조서의 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5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제87조(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① 특허·실용·디자인·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3.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있어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의 이유로 심결취소된 경

우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8조(부가기간의 지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심결 등에 대한 소제기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결과는 별도의 결정문으로 할 수 있다.

제89조(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 운영)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0조(재검토키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8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8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의 우선심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초고속심사 폐지에 따른 신속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초고속심사에 의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속심판의 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속심판으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55호,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안)

제정 2014. 9. 2 특허청예규 제78호
개정 2015. 7. 1 특허청예규 제83호

I. 목 적

- 이 지침은 특허행정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처 예규)

II. 직위유형의 구분

-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동일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1) '장기 근무형' 과 2)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
-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에 속하는 각 직위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세분화

< 직위유형별 구분 및 특징 >

구분		장기 근무 필요성	
		1) 장기 근무형	2) 순환 근무형
전문지식, 정보수준	높음(高)	유형① : 전문직위·전문직위群 지정 및 전보제한	유형③ : 임기제, 개방형
	낮음(低)	유형② : 전문경력관(평생 근무)	유형④ : 순환보직
유형	특 징		
①	■ 특정분야에 대한 장기근무로 노하우·경험이 축적된 전문가 육성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으로 지정(수당지급, 가점부여)하고 동일군(群)외에서 전보제한을 통한 장기 근무 유도 * (예시)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		
②	■ 실무차원의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 육성 * (예시) 감정·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정비·제작 등 기능 숙련이 필요한 분야		
③	■ 특정분야의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요구로 민·관간 교류 필요 * (예시) 대변인(홍보담당 포함) 및 문화·예술 분야 등		
④	■ 다양한 업무경험 등으로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순환 보직)		

1) 장기 근무형

- (유형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 (유형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낮음

2) 순환 근무형

- (유형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 (유형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Ⅲ.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1 전문직위군(群) 및 전문직위 지정·관리 (유형 ①)

1. 전문직위군(群) 및 전문직위 지정 등

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의의

- 전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보직하여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해당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함(직무수행요건서 :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 요건능력 설정)
-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群)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群)을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보직함

나) 전문직위군(群) 및 전문직위 정기 지정 및 변경 등

-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매연도 1월 15일까지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지정해제 및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국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전문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공석인 직위의 지정 해제 여부, 기존 전문직위의 변경 여부 등)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매연도 1월말까지 전문분야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별표 1, 2] 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서, 전문직위 신설·지정해제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정 등을 위하여 소관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국장(소속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소속 국(소속기관)의 과장이 수행함
 -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정 및 해제 등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결정함
 - * 심사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피분류, 기술난이도 등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별 전문직위 수를 결정함
 - * 심사국의 전문직위는 사실상 모든 기술 분류를 대상으로 하되, 심사난이도, 기피업무, 소수 전공자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기술분류 중심으로 직위를 지정함

-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향후 소관부서 전문직위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 등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 신설 및 지정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직위 또는 직위군(群)을 신설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부서별 지정수 등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함

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의 수시 재지정·변경 등

-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도 중 조직·인력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변경·지정해제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설·변경·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수시 신설·변경·지정해제에 대한 절차 등은 연초에 시행하는 정기 지정·변경 절차 등을 준용함

2. 전문관 선발 및 관리

가) 선발대상

- 해당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국장급 이하 직원

나) 선발방법

-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 전문관을 선발함
 - 전문관 선발시 [별표 1] 에 따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하고, 전문직위군(群)의 국·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할 경우 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필수요건에 포함하여 이에 부합하는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함
 - 근무경력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적격자 선발이 어려울 경우,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제외한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관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근무요건을 제외한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도 찾기 어려워 불가피 할 때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직자는 전문관은 아님
 - 심사과의 전문관은 일정기간 이상의 심사경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사무관을 우대할 수 있음
 - *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경력 2년(비심사부서 근무경력 제외)이상(단, 경력요건 미충족 등으로 책임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축)으로 하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도 포함함
 - 장기근무로 축적된 전문성을 공식 근무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해 5년 이내 퇴직예정자는 전문직위

지정을 제외함

- 심사품질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전문지식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전문관을 해제 할 수 있음
 - 심사평가결과 부적합(중전 흠결) 1이 2회 연속 발생한 심사관, 또는 심사과장이 적격요건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별 자체 위원회에서 등록률, 거절결정률, 취소환송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당자의 전문관 적격여부를 결정함
-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에 임용 신청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 공모를 통해 해당자를 선발할 수 있음. 전문직위 공모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직위 재직자는 전보제한 예외사유로서 전문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해제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필요성 및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전문관을 보직에서 해제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전문직위 보직해제에 따라 승계하는 전문관을 해당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신속하게 선발 보직하여야 함
- 심사과 전문직위에 재직하는 전문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사과장은 전문관에게 해당 기술분야 심사제도 연구, 기술자문, 최신기술세미나 개최 등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e-사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 전문직위의 업무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고, “○○○분야 전문관”으로 표기함

3. 전문관 인사관리

가) 전보의 제한

□ 전보제한 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4.5급 이하 4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고, 전문직위군(群)에 보직된 공무원을 국장급 4년, 과장급 6년, 4.5급 이하 8년 이내에 다른 직위군(群)으로 전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음
- 전보제한기간은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와 달리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문직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 동일 전문직위군(群)내의 전문직위에서 타 전문직위로 전보할수 있으나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과장 2년6월) 근무후 가능하며, 전문직위군(群)에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직위군(群)의 전보제한(과장 6년, 4.5급이하 8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과장 3년, 4.5급이하 4년)을 경과 하여야 군(群)외로 전보 가능함

3년	3년	2년
국제협력과	다자협력과	산업재산정보협력과
<국제협력분야 전문직위>		
<p>※ 전문직위군(群) 전보제한기간(과장6년, 4.5급이하 8년)동안 근무를 하여야 하나, 해당 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이후(과장은 2년 6월 이후) 동일 직위군내의 타 직위로 전보 가능</p> <p>※ 동일 전문직위군(群) 내의 타 직위간의 전보시에는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함.</p>		

- 전문직위 재직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휴직, 파견 등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14.7. 1)당시 기존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기존 전문직위 재직자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전문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 전문관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름 (과장급이상 2년, 4.5급이하 3년)
- 시행('14. 7. 1 및 '15. 7. 1) 당시 해당 전문직위 재직자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당시 전문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群)의 전보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심사과 전문관의 경우 심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제한을 적용함
 - 다만, 심사관련 부서중이라도 심사정책, 분류, 심사평가 등 심사과 전문관 이외의 시행('14. 7. 1 및 '15. 7. 1)당시 해당 전문직위의 재직자는 원칙대로 전보 가능
- 조직신설 등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최초 전보인사로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전문직위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업무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기관 직위에 전문성 확장 및 심화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따라서, 인사교류하거나 개방형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직전 전문직위군(群)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산정의 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음

□ 전보제한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타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그 이외 필요시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음

가. 기구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

나.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되거나, 공채 합격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교육 등 이수를 거쳐 부처배치 된 이후부터 2년으로 봄

다.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라. 전문직위에서 3년 이상(과장 2년6월)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群) 내의 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마.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바.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나) 전문직위 가점 부여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에 대한 가점부여 항목 및 기준은 특허청인사운영규정(훈령)에 따름.

○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 직무수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가점 부여가 없음.

○ '14. 7. 1이전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가점부여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다) 전문직위 수당 지급

○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 해당 전문직위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특수업무 수당(특허심사수당)과 병급 가능함

○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 직무수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이 없음

○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수당지급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함.

○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도 12월 15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의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공지함

- 전문직위군(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전문직위 근무자에 비해 장기근무 요건이 있어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 육성 (유형 ②)

-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차원의 전문성 또는 기능적 숙련성이 요구되며,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 업무로 정함
 - 전문경력관(비상안전 및 통번역 업무) 및 업무용 차량운전 분야
- 해당 업무의 재지정·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진행절차는 전문직위군 및 전문직위 지정(유형 1)과 동일한 절차에 의함

3 최신 민간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유형 ③)

-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교류가 필요한 분야로 다음 업무를 정함
 -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공모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업무 분야
-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함
-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해제·충원·임용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는 개방형 및 공무직위 관련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하고,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함.

4 다양한 업무경험 등의 순환보직 유지 (유형 ④)

-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통한 융·복합적 전문성 또는 관리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유형 ①, ②, ③을 제외한 분야에 적용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함.
 - 순환 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
 - * 특히 규제분야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 철저 필요

부 칙

이 지침은 2014. 9.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관·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제정	1987. 7. 2. 특허청훈령 제108호
개정	1988. 1.15. 특허청훈령 제119호
개정	1993. 7. 7. 특허청훈령 제187호
개정	1997. 1.17. 특허청훈령 제221호
개정	1997. 3.13. 특허청훈령 제225호
개정	1998. 1.12. 특허청훈령 제236호
개정	1999. 8.10. 특허청훈령 제293호
개정	2001. 7. 5. 특허청훈령 제334호
전문개정	2013. 3. 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 30호
개정	2015. 12. 9.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 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심판관의 산업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 심판관과정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제3조(연수대상) ①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특허청 6급 공무원중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기재된 자
3.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에서 지정된 예비심사관
4.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한다)
5. 특허청 6급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이하 '6급 심사관'이라한다)

②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③ 심판소송제도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
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
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

④ 심판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3.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4.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

제4조(신규심사관 교육과정) 신규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등에 관련된 법령 및 국제조약

2 심사실무 수습

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5조(중견심사관 교육과정) 중견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2. 심사,심판 사례연구
3. 심사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6조(심판소송제도 교육과정) 심판소송제도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2. 심결 및 판례연구
3. 소송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심판관 교육과정)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등 심판관련 법률
2. 심결 및 판례연구
3. 심판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8조(사이버교육실시)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보호법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9조(연수기간 및 운영) ①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②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한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둔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특허청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에게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수료통지) ①연수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실습을 마친 자의 명단, 성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13조(교육 훈련규정의 준용) 심사관·심판관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특허심판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